

거리가게
디자인 개선
가이드라인 연구
2015

일 러 두 기

이 책은 (재)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연구소에서 수행한
'거리가게 디자인개선 가이드라인 연구'의 내용을 엮어서 만든 연구보고서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의 연구수요를 반영하여 진행되었습니다.

거리가게 디자인개선 가이드라인 연구

연구기간 : 2015. 5 ~ 2015. 12

연구진

서울디자인재단

강병길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연구소 소장)

신윤재 (서울디자인재단 시민디자인연구센터 센터장)

박재은 (서울디자인재단 시민디자인연구센터 책임)

외부참여연구원

책임연구원 : 김혜련 (계원예술대학교 전시디자인과 교수), 이랑주(이랑주VMD연구소 대표)

연구원 : 권재돈, 양인성 (가보샵 대리)

연구보조원 : 김진래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연구소)

자문위원 (성명 가나다 순)

김광순 (디맨드 대표)

김기중 (건축사사무소 가로 대표)

김성곤 (서울시립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김승인 (IDAS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교수)

소재구 (디자인 위드 대표)

신순정 (디자인 통 대표)

협력기관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

박문희 보도환경개선과 과장)

권순구 (보도환경팀 팀장)

최재성 (보도환경팀 주무관)

신자경 (보도환경팀 주무관)

이성식 (보도환경팀 주무관)

동대문구 건설관리과

동작구 건설관리과

영등포구 건설관리과

차 례

요약 및 정책건의	6
제1장 서론	11
1.1 연구배경 및 목표	12
1.2 연구범위 및 방법	15
1.3 연구추진과정 및 내용	18
제2장 거리가게 개요	30
2.1 거리가게 정의	31
2.2 거리가게 정책변화	34
2.3 국내외 관련 사례조사	36
제3장 거리가게 현황	65
3.1 서울 거리가게 현황조사 개요	66
3.2 환경조건	70
3.3 규격 및 배치	76
3.4 운영 시스템	81
3.5 분석 종합	83
제4장 서울 거리가게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84
4.1 서울 거리가게 유형분류	85
4.2 서울거리가게 특성 및 법규분석	93
4.3 디자인 기본계획	104
4.4 가이드라인 목표	109
4.5 세부가이드라인	115
제5장 결론	140
5.1 가이드라인 적용 방안	141
5.2 결론	143
부 록	150
시범적용사례	151
조례 및 가이드라인	174
참고 문헌	187

요약 및 정책건의

서울 대한민국의 대표 메가시티로 성장을 거듭함과 동시에 2014년 민선 6기 시정이 출범하였다. 시민과 참여중심의 시정이 본격화됨에 따라 서울의 도시개발의 정책도 일관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비 중심에서 협의와 소통을 통한 다양한 방식의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에 따라 도시 곳곳 보도 상에서 수년간 불법영업을 지속하던 거리가게(노점)라는 뜨거운 감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논의를 시작하였다. 2014년 민. 관. 협.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이 발족되었고, 전국노점단체연합, 민주노점전국연합과 함께하여 2년간의 협의를 지속하였다. 거리가게에 대한 허가, 설치, 운영, 관리에 대한 핵심 쟁점들을 논의하고 2014년 거리가게에 대한 일부 법적 허용에 대응하여 서울시 차원의 거리가게 제도권 편입을 위한 과정이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와 상생정책자문단에서 논의로서 풀 수 없었던 핵심쟁점사항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서울의 현재 보도환경에 적합한 거리가게에 대한 설치와 규격, 운영과 관리에 대한 일반 기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1998년 외환위기를 시작으로 저소득층의 지원책으로 노점단속완화라는 서울시 방침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 거리가게는, 보행의 쾌적성과 시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는 보도 상에서 단속의 대상이 분명하였다. 또한 제도권 밖에서 음성적 거래에 의해 조직화, 대규모화, 전대의 대상으로 변모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소득원이라고 볼 수 없는 불법행위들이 만연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미관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자치구 주도의 노점개선사업 또한 제도권 편입이 불가한 상황에서 표면개선이라는 미봉책에 그쳐 지속적인 관리, 육성의 정책으로 연결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의 거리가게 제도권 편입 의지를 근거로, 2016년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조례 상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서울의 보도환경에 적합한 거리가게의 미래상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거리가게 개선사업에 적용 가능한 디자인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설계하여, 이후 진행되는 시 또는 자치구 관련 사업에 직접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거리가게가 집중된 10개의 대표 거리를 실제 조사하고 국내·외 법령 및 개선 사례들을 중심으로 적합성을 검토하여 서울의 보행환경에 적합한 거리가게 적용의 기준을 정립하였다. 특히 24시간 대로변에 365일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부스형의 거리가게에 대한 설치기준 및 이격거리에 대한 기본규칙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과정에서 서울의 거리가게에 대한 유형분류를 통하여 각 기준과 제시된 시행 규칙, 디자인의 다양성과 활용가능성을 전제로 직접적인 표준화 모델을 제시하지 않고, 각 거리의 기준에 맞는 변형 가능한 범위를 일부 열어두었다. 다양성에 대한 일부 규제 및 가이드라인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거리가게 디자인가이드라인이 적용된 평가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기준에 실행되었던 사업에 대한 평가와 실행하고자 하는 디자인의 적합성을 평가하는데 활용 가능하도록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였다.

제 1장에서는

연구의 범위와 구성에 대한 전체적인 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의 추진 과정 및 경과를 토대로 궁극적인 목표를 수립하였다.

제2장에서는

현재 거리가게 관련 상위법 및 규정을 분석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도출된 핵심적인 쟁점 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국내외 거리가게에 대한 정책적 부분과 조례 및 시행 규칙 중 디자인 부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현재 서울시 거리가게의 시범허가지역으로 선정된 3개구 5개 지역과 특화지역으로 조성된 3개 지역, 거리가게가 밀집된 2개 지역을 임의로 선정하여 실태와 환경, 시설, 운영 조건에 대한 현황 분석 및 문제점 도출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동대문구 왕산로 2개 지역, 동작구 노량진로, 동작구 동작대로, 영등포구 영중로,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용산구 이태원로, 강동구 로데오거리, 서대문구 홍제역,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10개 지역을 조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제4장에서는

서울 거리가게의 운영시스템, 환경 조건, 판매품목, 규격 및 배치에 대한 유형 분류와 관련 법규를 분석결과를 토대로 서울 거리가게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향과 세부사항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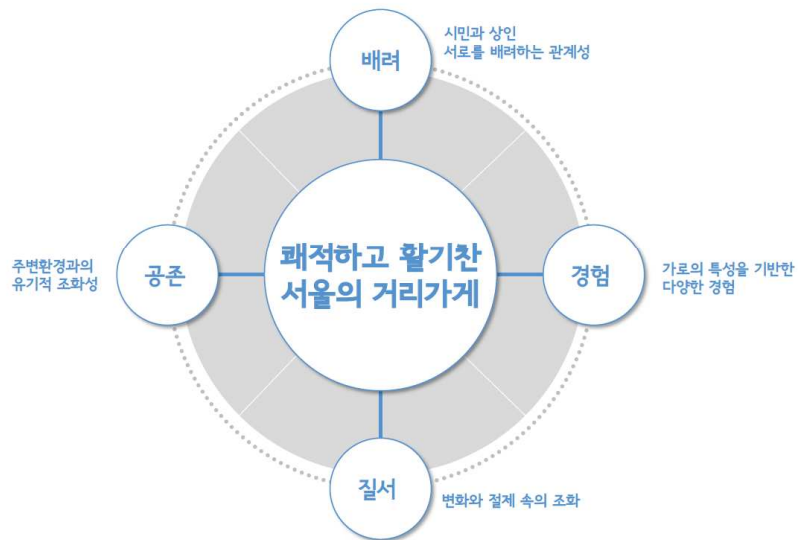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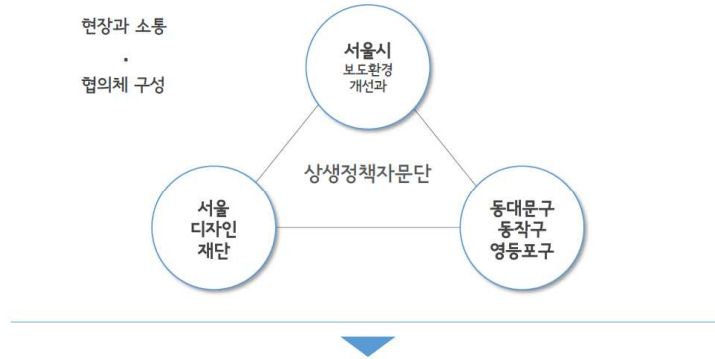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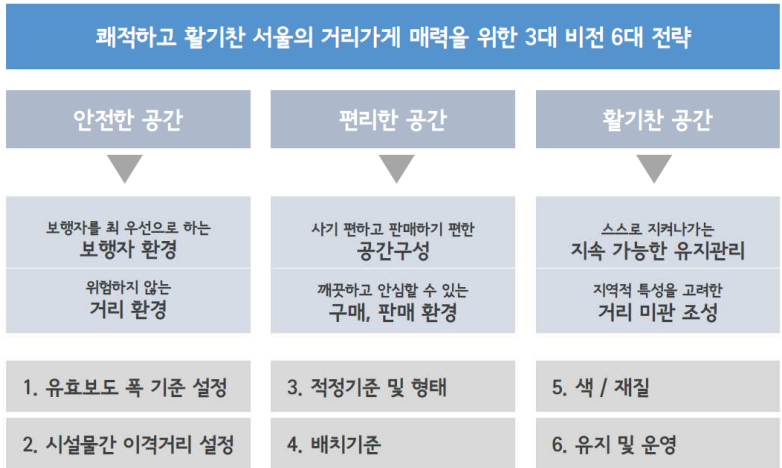
거리가게 합법화 및 등록, 허가제 시행에 앞서 도시미관과
거리 보행환경에 적합한 거리가게 적용기준 정립 및 확장 가능한
사례를 제시함과 동시에 거리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적 해법을 제시



1. 거리가게 관리 및 개선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축
2. 거리 시설물로서의 설치기준 및 규격기준 개발
3. 거리명소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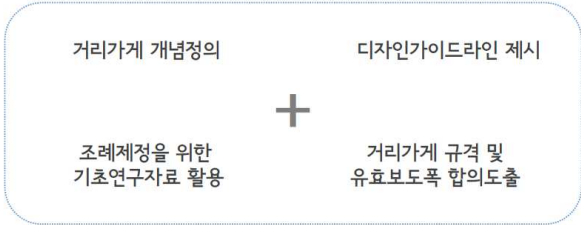




- 디자인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논의
- 각 이해관계자 그룹이 상호 소통하여 가이드라인 개발 진행
- 실행팀 - 정책개발팀 - 관(서울시 및 자치구)의 협의 속에서 진행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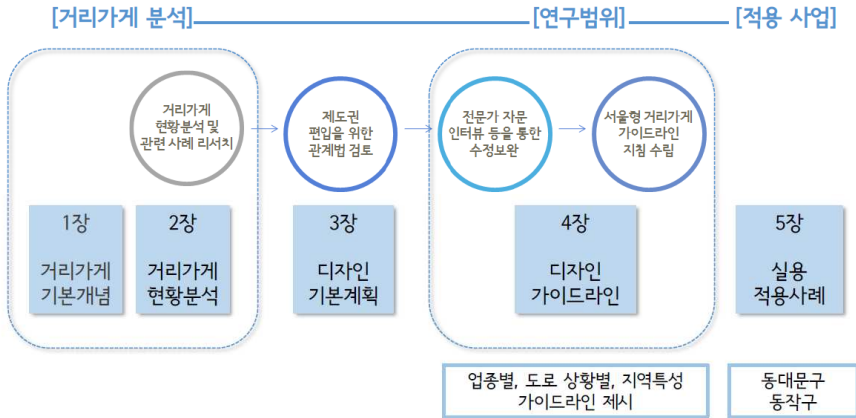
주요 성과 및 의의

서울형 거리가게 디자인 청사진 제시



상생정책자문단 · 서울시 · 자치구 · 노점연합
전문디자인업체 · 디자인전문연구기관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장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표

거리가게는 오랜 기간 불법이라는 낙인아래 도시 저소득층의 주요한 생계수단으로 일종의 자구적 실업대책의 하나로 도시 속에 존재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공업주도형 경제성장 정책으로 급격한 도시화가 발생하면서 증가한 거리가게는 1980년대 후반 올림픽을 계기로 잠시 감소하였다가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해 경기회복 때 까지 노점단속을 유보하겠다는 서울시 발표로 인해 거리가게 수는 2~30%이상 증가하여¹⁾ 2010년부터는 10,000개 이하에서 미세한 증감을 반복, 2014년 11월 현재 서울시에 입지하고 있는 거리가게 수는 8,662개로 집계 되고 있다²⁾.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거리가게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주요 간선도로에 보행자 도로를 불법점유하고 있어 시민들의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2013년 이후 서울시의 거리가게에 대한 실명제 추진 및 등록, 허가제 운영 및 각 자치구의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관한 조례제정 등을 통한 미관개선으로 진일보 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또한 거리가게를 도시 빈민의 자구수단으로 인정하고 생계 안정 등을 고려한 일부 수용방안을 검토함과 같이 상생의 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1) 노점상 관리방안 중 장기 대책모색,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2001

2) 2014년 거리가게 실태조사 결과 보고, 서울시 도시안전실, 2014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수 량(개)	9,395	9,117	9,292	8,826	8,662
증감률(%)	△ 9.2%	▽ 3.0%	△ 1.9%	▽ 5.0%	▽ 1.9%

〈표 1〉 연도별 거리가게 변화 추이

01 연구의 배경

거리가게는 유동인구가 많아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도심 주요 도로변, 지하철역 주변, 전통시장 주변 등 통행로에 거리가게가 위치하여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속적인 개선사업 실행에도 불구하고 거리가게가 계속적으로 통행로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불법 보도점유물 규제와 단속위주의 정책을 넘어 거리가게 운영주체와의 상생을 통한 관리 운영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2013년 12월 ‘거리가게 상생정책 자문단’을 출범하여 거리가게 자율관리 정책 도입 및 분쟁지역 조정, 거리가게 판매대 표준모델 개발 및 심의, 특화거리 지정 등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논의를 통하여 서울시 내 거리가게 밀집지역 중 3개구 5개 지역을 시범 허가지역³⁾으로 선정하였고, 시범 운영에 앞서 기본적인 법적 설치기준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다음과 같이 요구되고 있다.

- 1) 거리가게 합법화⁴⁾에 따른 지역 명소화 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한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상권 활성화와 그에 따른 관리 체계 구축
- 2) 거리가게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설치 기준 및 가이드라인
- 3) 거리가게 운영에 따른 실현 가능한 정책수립 및 구별 조건 완화

02 연구의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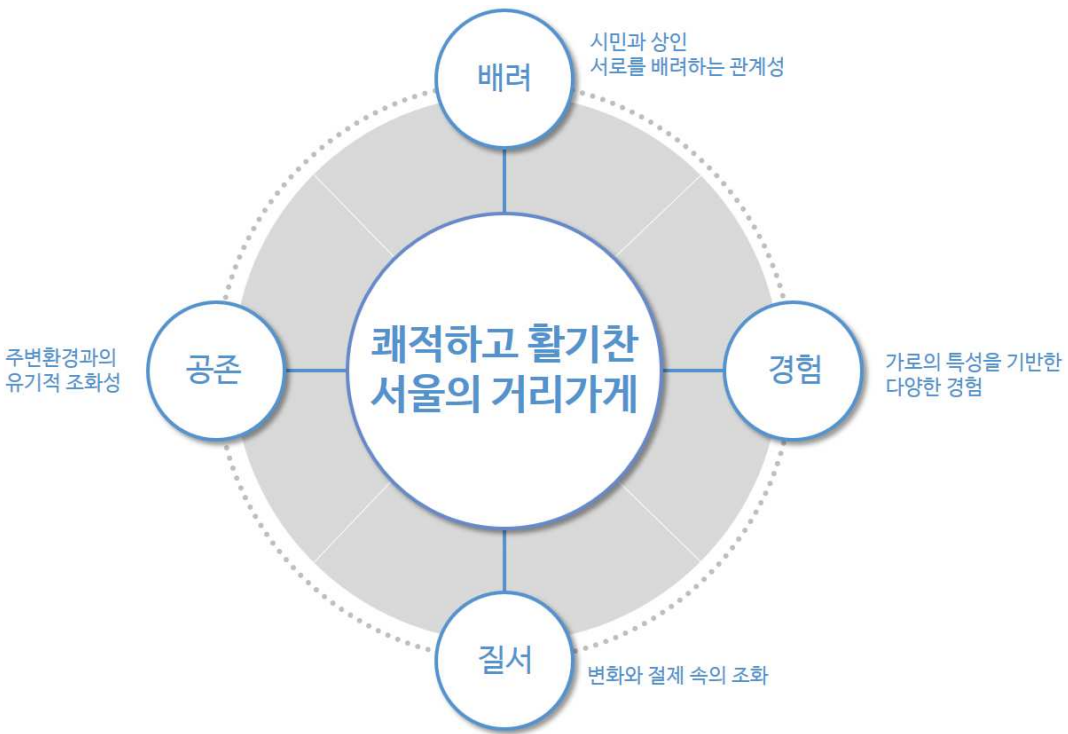
본 연구의 목표는 서울시 가로 특성을 기반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과 상인이 서로를 배려하는 관계, 주변 환경과의 유기적인 조화에 의한 공존, 변화와 질제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질서가 있는 ‘쾌적하고 활기찬 서울의 거리가게’를 위한 서울형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구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거리가게 합법화 및 등록, 허가제 시행에 앞서 도시미관과 거리 보행 환경에 적합한 거리가게 적용 기준 정립 및 확장 가능한 사례를 제시함과 동시에 거리가게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적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3) 거리가게 상생정책 자문단 회의결과 (2015.03)

4)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7호 (개정 2014.11.24)

이에 현장의 상황과 다양한 상위법 및 관련 기준을 근거로 향후 서울시 보도 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례 수립에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디자인 관점에서 거리가게의 적용기준에 대한 기본 기준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거리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적 해법 제시가 필요함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연구 목표를 둔다.

- 1) 거리가게 관리 및 개선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구축
- 2) 거리 시설물로서의 설치기준 및 규격 기준 개발
- 3) 거리 명소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그림 7〉 연구의 목표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서울시 대로변에 위치하면서 24시간 존치되고 있는 거리가게에 대한 고찰이다. 현장의 상황과 다양한 상위법 및 관련 기준을 근거로 거리가게가 서울시 가로환경 시설물로서의 근본적인 적용 기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환경 디자인 관점에서의 거리가게 적용기준에 대한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직접조사, 관찰조사, 노점과 관계된 민, 관, 노점상인 및 노점연합 관계자의 인터뷰와 현장계측 및 문헌조사를 통한 정성, 정량의 데이터를 수합하여 정리하였다.

특히 서울시 대로변 거리가게의 특징을 고찰하기 위해 거리가게 개선대상 및 주요 밀집지역 10개소(시범허가지역 3개 지구 5개 지역과 거리가게 개선사업 후 특화거리로 지정된 3개 지역, 거리가게 밀집지역 2개 지역)를 대상으로 보도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직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의 협조를 통하여 각 자치구 내 거리가게 관련 조례 및 상위법을 검토하였으며,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 및 선진사례를 검토하기 위하여 미국과 일본, 타 지자체 등의 관계법을 검토하여 가로환경과 거리가게의 상관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거리가게에 대한 판매 공간별, 취급 품목별, 존치 시간별 유형분류를 통하여 기본적인 서울의 보도환경과의 관계에 있어 적정규모 및 디자인의 방향을 논의함과 동시에 작성된 기준에 대한 평가 체크리스트를 구성하고 대표적인 현장에 대하여 재평가하여 거리별 핵심적 결여 요소를 파악하였다.

0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24시간 대로변에 존치되어 있는 거리가게의 첫째, 환경조건을 위한 보도 평탄도, 주요 가로시설물간 이격거리, 적정 유효 보도폭, 둘째, 적정 공간활용을 위한 규격 및 배치기준, 셋째, 거리공간의 운영계획을 위한 평가의 틀을 구성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진행한 공간적 범위와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에서 거리가게가 밀집되어 있는 다음 10개 지역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 서울시 상생협의체에서 시범허가지역으로 선정된 3개구 5개 지역

- 1) 동대문구 왕산로 수협은행 앞에서 제일학원까지의 20개 거리가게
- 2) 동대문구 왕산로 동의보감타워에서 용두한방천하포스필까지의 16개 거리가게

- 3) 동작구 노량진로 아모르이그잼학원앞에서 고려조리제빵 앞까지의 46개 거리가게
- 4) 동작구 동작대로 이수역 8번출구에서 교보생명 앞까지의 71개 거리가게
- 5) 영등포구 영중로 영등포역 앞에서 영등포사거리까지의 44개 거리가게

- 거리가게 개선사업 후 특화거리로 운영되고 있는 3개 지역

- 6) 서대문구 신촌로
- 7) 용산구 이태원로
- 8) 강동구 로테오거리.

- 거리가게가 밀집된 2개 지역

- 9) 서대문구 홍제역 주변
- 10)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역 주변 이다.

(2) 내용적 범위

주 간선도로 및 보조 간선도로의 대로변을 중심으로 24시간 존치되어 있는 거리가게를 대상으로 하여 다음의 범위 내에서 고찰하였다.

- 1) 환경조건을 위한 보도평탄도, 시설물간의 이격거리, 유효 보도폭
- 2) 적절한 거리가게 규격 및 형태, 배치기준, 색채 및 재질
- 3) 지속가능한 운영계획을 위한 정보 및 진열, 운영관리

0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서울 거리가게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1) 거리가게 정책 및 관련사례조사

거리가게 관련 자료 및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거리가게에 관한 기본 개념을 정의하고 거리가게의 정책변화 및 국내외 관련 사례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였다.

(2) 거리가게 현황분석

서울 거리가게 10개 지역의 현황 탐색으로 거리가게의 보도평탄도, 이격거리, 유효보도폭, 규격 및 형태, 보도 상 배치, 색채 및 재질, 정보 및 진열, 운영관리에 관해 현재의 문제점과 기본 방향을 도출하였다.

(3) 기본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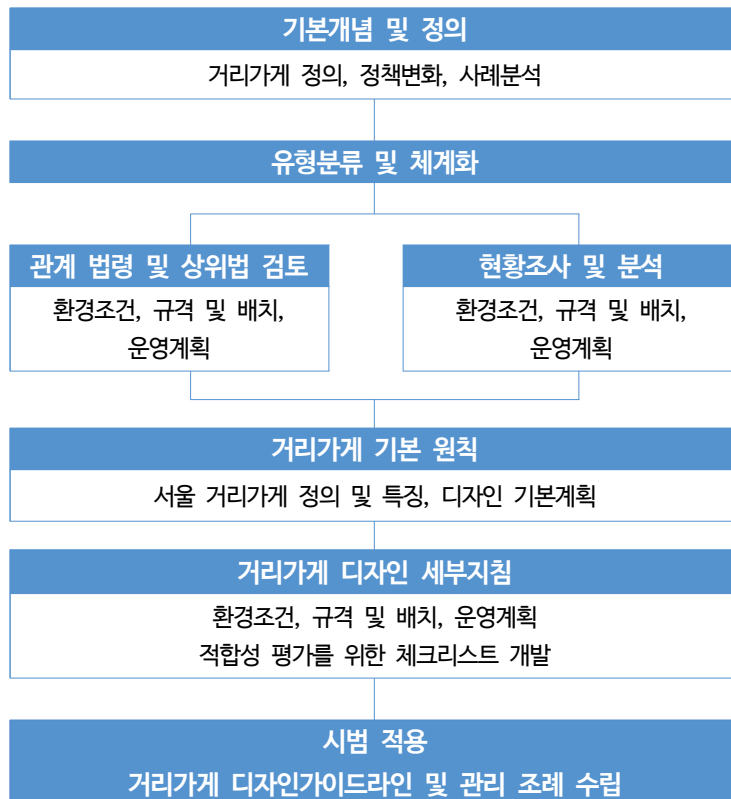
거리가게 현황 및 제도권 편입을 위한 관계법 분석을 통해 거리가게의 디자인 목표인 ‘쾌적하고 활기찬 서울의 거리가게 매력 만들기’를 위한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3대 비전 6대전략을 제시, 서울 거리가게 디자인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4) 세부 가이드라인 제시

안전한 환경조건 1) 보도 평탄도, 2) 시설물간 이격거리 설정, 3) 유효 보도폭
편리한 판매환경 4) 적정규격 및 형태, 5) 배치기준, 6) 색채 및 재질
쾌적한 운영계획 6) 정보 및 진열, 7) 운영관리
 지속 가능한 거리가게를 위한 평가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

(5) 적용사례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특화거리 조성의 사례를 소개한다.



〈표 2〉 연구 흐름도

1.3 연구추진과정 및 내용

01 연구추진결과 요약

본 연구의 추진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표 3〉 연구추진경과

02 연구추진경과 내용

(1) 대상지 실사 및 연구사전 협의

1) 일정 : 2015. 4. 2 (목)

2) 장소 : 동대문구 왕산로, 영등포구 영중로, 서초구 동작대로

3) 참석

- 서울시 : 최재성 주무관 (보도환경개선과)
- 동대문구 : 김희상 주무관 (건설관리과)
- 영등포구 : 강효식 주무관 (건설관리과)
- 연구자 : 김혜련 교수 (계원조형예술대학 전시디자인과)
이랑주 대표 (이랑주 VMD협동조합)
- 민주노점전국연합 관계자 2인
- 서울디자인재단 : 박재은 책임, 강지혜 선임

4) 추진 내용 : 현장 조사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실시
연구추진을 위한 협의



〈그림 2〉 현장조사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2) 대상지 실사 및 연구사전 협의

1) 일정 : 2015. 6. 8 (월)

2) 장소 : 서울시청 지하 3층 대회의실

3) 참석

- 상생정책자문단 (권기욱 도시안전기획관, 권정순 민생경제자문관, 김동울 시의원,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위원장), 조덕휘 전노련의장, 김현우 민주노련위원장, 양연수 민생복지시민행동대표, 지대식 (사)동대문패션타운관광 특구협의회 사무국장, 박건태 사회적기업가, 윤대영 서울디자인재단 DDP경영단 상생본부장,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박문희 보도환경개선과장)
- 서울디자인재단 : 박재은 책임

4) 추진 내용 : 거리가게 시범허가거리 개선사업 연구계획 보고

자치구 거리가게 시범허가거리 기본구상 및 추진계획 보고



〈그림 3〉 10차 상생정책자문단 회의

(3) 현장조사 및 이해관계자 회의

1) 일정 : 2015. 6. 15 (월)

2) 장소 : 동대문구 왕산로

3) 참석

- 서울시 : 최재성 주무관, 신자경 주무관 (보도환경개선과)
- 동대문구 : 김희상 주무관 (건설관리과)
- 전구노점총연합 : 최을상 동대문중랑지역 지역장, 이정우 부지역장
- 민주노점전국연합 : 최오수 사무국장 외 1인
- 연구자 : 김혜련 교수 (계원조형예술대학 전시디자인과)
- 서울디자인재단 : 박재은 책임, 김진래 연구원

4) 추진 내용 : 동대문구 왕산로 현장조사

사업진행 공조체계 마련 동의

거리가게 디자인개선사업 방향 및 서울시·자치구 협의사항 전달

상인연합 및 자치구 관계자 요구사항 의견조율



〈그림 4〉 현장조사 및 이해관계자 회의

(4) 현장조사 및 이해관계자 회의

1) 일정 : 2015. 7. 1 (수)

2) 장소 : 동대문구 왕산로

3) 참석

- 서울시 : 권순구 팀장, 최재성 주무관, 신자경 주무관 (보도환경개선과)
- 동대문구 : 김희상 주무관 (건설관리과)
- 전주노점총연합회 : 최을상 동대문중랑지역 지역장, 이정우 부지역장 외 2인
- 민주노점전국연합회 : 정병찬 지역장 외 3인
- 책임연구자 : 김혜련 교수 (계원조형예술대학 전시디자인과)
- 서울디자인재단 : 오승훈 연구원, 김진래 연구원

4) 추진 내용 : 거리가게 매장·매대 디자인시안에 대한 검토 및 논의
노점연합회의 결과 내용에 대한 관계자 의견 조율
디자인개선사업에 대한 시·자치구 지원내용 재검토



〈그림 5〉 현장조사 및 이해관계자 회의

(5) 착수보고회의

1) 일정 : 2015. 7. 9 (목)

2) 장소 : 서울디자인지원센터 5층 508호 회의실

3) 참석

- 서울시 : 권순구 팀장, 최재성 주무관, 신자경 주무관, 이성식 주무관 (보도환경개선과)
- 동작구: 이용건 주무관 (건설관리과)
- 외부자문위원 : 김기중 대표 (건축사사무소 가로, 동작구 컵밥거리 디자인)
김승인 교수(IDAS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소재구 대표 (디자인 WITH)
동작구 컵밥거리 디자인 컨설턴트
신순정 대표 (디자인 Tong, 영등포구 영중로 디자인)
박한누리 실장 (디자인 디멘드, 동대문구 왕산로 디자인)
- 연구자 : 김혜련 교수 (계원조형예술대학 전시디자인과)
이랑주 대표 (이랑주 VMD협동조합)
양인성 대리 (가보샵)
- 서울디자인재단 : 신윤재 센터장, 박재은 책임, 오승훈 연구원

4) 추진 내용 : 연구 진행 보고

실행사업 추진을 위한 디자인관련업체 및 컨설턴트 실무 토론



〈그림 6〉 착수보고회의

(6) 11차 상생정책자문단

1) 일정 : 2015. 7. 22 (수)

2) 장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9층 회의실

3) 참석

- 상생정책자문단 (권기욱 도시안전기획관, 권정순 민생경제자문관, 김동율 시의원,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위원장), 홍인옥 도시사회연구소 소장, 조덕휘 전노련의장,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 협의회장, 박건태 사회적기업가, 박문희 보도환경개선포럼회장)

- 자치구 :

- 디자인업체 : 김기중 대표 (건축사사무소 가로, 동작구 컵밥거리 디자인)
신순정 대표 (디자인 Tong, 영등포구 영중로 디자인)
박한누리 실장 (디자인 디멘드, 동대문구 왕산로 디자인)

- 연구자 : 김혜련 교수 (계원조형예술대학 전시디자인과)

- 서울디자인재단 : 박재은 책임

4) 추진 내용 : 거리가게 시범허가거리 개선 사업 추진사항 보고 (동작구 노량진로 컵밥거리, 영등포구 영중로 문화의거리, 동대문구 왕산로 거리가게)



〈그림 7〉 11차 상생정책자문단 회의

(7) 서울시 및 자치구 관계자 회의

1) 일정 : 2015. 7. 30 (목)

2) 장소 : 서울시청 10층 보도환경개선과

3) 참석

- 서울시 : 박문희 과장, 권순구 팀장, 최재성 주무관 (보도환경개선과)
- 동대문구 : 김희상 주무관 (건설관리과)
- 동작구 : 정학진 팀장 (건설관리과)
- 영등포구 : 조영철 팀장, 임영호 주무관 (건설관리과)
- 디자인업체 : 김기중 대표 (건축사사무소 가로, 동작구 킴밥거리 디자인)
신순정 대표 (디자인 Tong, 영등포구 영중로 디자인)
- 연구자 : 김혜련 교수 (계원조형예술대학 전시디자인과), 양인성 대리 (가보샵)
- 서울디자인재단 : 박재은 책임, 김진래 연구원

4) 추진 내용 : 자치구별 사업진행 현황 공유
향후 사업진행 일정 및 계획 조율



<그림 8> 서울시 및 자치구 관계자 회의

(8) 서울시 및 자치구 관계자 회의

1) 일정 : 2015. 8, 18 (화)

2) 장소 : 서울시청 10층 보도환경개선과

3) 참석

- 서울시 : 박문희 과장, 권순구 팀장, 최재성 주무관 (보도환경개선과)
- 동대문구 : 김희상 주무관 (건설관리과)
- 동작구 : 정학진 팀장 (건설관리과)
- 영등포구 : 조영철 팀장, 임영호 주무관 (건설관리과)
- 디자인업체 : 김기중 대표 (건축사사무소 가로, 동작구 킷밥거리 디자인)
신순정 대표 (디자인 Tong, 영등포구 영중로 디자인)
- 연구자 : 김혜련 교수 (계원조형예술대학 전시디자인과), 양인성 대리 (가보샵)
- 서울디자인재단 : 박재은 책임, 김진래 연구원

4) 추진 내용 : 현행 3개 자치구 사업진행상황 및 디자인시안 검토

조례제정을 위한 사례 비교분석 및 적용가능성에 대한 논의

(9) 중간보고회의 / 12차 상생정책자문단 회의

1) 일정 : 2015. 9. 3 (목)

2) 장소 : 서울디자인지원센터 706호 연구소장실 / 서울시청 지하3층 대회의실

3) 참석

- 상생정책자문단 (권기욱 도시안전기획관, 권정순 민생경제자문관, 김동율 시의원,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위원장), 홍인옥 도시사회연구소 소장, 박문희 보도환경개선과장 외 10인 조덕휘 전노련의장, 김현우 민주노련위원장, 양연수 민생복지시민행동대표, 민상현 위원, 지대식 (사)동대문패션타운관광 특구협의회 사무국장, 박건태 사회적기업가, 윤대영 서울디자인재단 DDP경영단 상생본부장, 이경아 동서울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박문희 보도환경개선과장)
- 서울시 : 권순구 팀장, 최재성 주무관, 신자경 주무관, 이성식 주무관 (보도환경개선과)
- 동대문구 : 김희상 주무관 (건설관리과)
- 동작구 : 정학진 팀장 (건설관리과)
- 영등포구 : 조영철 팀장, 임영호 주무관 (건설관리과)
- 디자인업체 : 김기중 대표 (건축사사무소 가로, 동작구 킷밥거리 디자인)
신순정 대표 (디자인 Tong, 영등포구 영중로 디자인)
박한누리 실장 (디자인 디멘드, 동대문구 왕산로 디자인)
- 연구자 : 김혜련 교수 (계원조형예술대학 전시디자인과), 양인성 대리(가보샵)
- 서울디자인재단 : 강병길 소장, 신윤재 센터장, 박재은 책임, 김진래 연구원

4) 추진 내용 : 거리가게 시범허가거리 개선사업 추진사항 보고

가이드라인 및 자치구 디자인 안에 대한 검토와 의견 수렴



〈그림 9〉 12차 상생정책자문단 회의

(10) 최종보고회의

1) 일정 : 2015. 9. 21 (월)

2) 장소 : 서울디자인지원센터 904호 중앙회의실

3) 참석

- 서울시 : 권순구 팀장, 최재성 주무관 (보도환경개선과)
- 외부자문위원 : 김기중 대표 (건축사사무소 가로, 동작구 컵밥거리 디자인)
김성곤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소재구 대표 (디자인 WITH, 동작구 컵밥거리 디자인 컨설턴트)
신순정 대표 (디자인 Tong, 영등포구 영중로 디자인)
- 연구자 : 김혜련 교수 (계원조형예술대학 전시디자인과)
이랑주 대표 (이랑주 VMD협동조합)
양인성 대리 (가보샵)
- 서울디자인재단 : 박재은 책임, 김진래 연구원

4) 추진 내용 : 연구결과 최종보고

연구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발전·실행방안에 대한 논의



<그림 10> 최종보고회의



〈그림 11〉 최종보고회의

제2장

거리가게 개요

제2장 거리가게 개요

2.1 거리가게 정의

01 사전적 정의

거리가게는 노점(露店)을 순화하여 일컫는 말로서⁵⁾ 2013년 8월, 국립 국어원을 통한 서울시 행정용어 순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된 용어이다. 길가 한테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이동 가능한 가게라는 의미로 포장마차, 건물1층 점두에서 물건을 파는 가게도 포함된다. 노점(露店)에 관한 사전적 의미로 국어사전에서는 ‘길가의 한테에서 물건을 벌여놓고 하는 장사 또는 장수’ 로 풀이되어 있다. 영어 어휘에서 노점에 관한 용어로는 ‘Peddler(이동식 노점상)’, ‘Vendor(일정지역 반유동형, 고정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노점상)’⁶⁾으로 쓰이고 있고, 일본은 일반적으로 야타이(屋台)라고 하여 ‘도로, 광장 등에서 가판이 있는 작은 가게로 바퀴를 달거나 자동차를 개조하여 이동 가능할 수 있는 점포, 축제 등에서 장식품이나 음식물, 완구 등을 판매하는 곳’⁷⁾으로 말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이동성을 갖춘 노상 임시형 점포로 정의할 수 있다.

맥기(T.G.McGee, 1977)의 정의⁸⁾에 따르면, 노점상은 공공장소 특히 도로에서 상품이나 서비스

5) <http://krdic.naver.com>

6) <http://endic.naver.com>

7) <http://dictionary.goo.ne.jp>

를 판매하는 경제활동을 총칭으로, 그 특징을 세 가지로 규정하였다. 첫 번째는 불법으로 상업활동을 하는 상인,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임대료 및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소규모 자본의 경영의 소상인 집단, 세 번째는 자유로운 이동성을 가진 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공간으로 설명하여 판매자와 판매행위 및 판매 공간을 통칭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2001년에 발표한 노점상 관리방안 중장기 대책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는 노점상의 정의를 다섯 가지 요소 - (1)공공장소, 특히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가로상의 상행위, (2)상품이나 서비스판매의 소규모 사업 (3)적법한 규제를 받지 않는 불법적 경제행위, (4)임시적이며 가변적인 형태, (5)도시의 경제활동 - 분석하였다.

02 법률적 정의

거리가게 법률적 정의는 국토교통부 도로법에 의거 ‘가변적으로 설치된 영업시설물’로 1차 정의할 수 있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12호7항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체운영 가능한 시설물 규정 대상에 노점이 언급됨에 따라 가로 상에 존재하는 시설물로서 일부 인정된 바가 있다. 그러나 노상에서 완전히 조리되지 않은 음식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상에서는 일체 금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목인된 채 생물판매 및 다양한 형태의 포장마차 등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듯 거리가게에 대한 불법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세계 어느 나라든 모든 불법 점유행위를 단속하거나 방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행정력이 그만큼 못 미치는 이유도 있지만, 거리가게 정책이 단순한 가로관리 정책에 그치는 것이 아닌 그 이면에 사회 정책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개발 도상국들은 거리가게를 목인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계보호 효과를 달성하기도 하고 반면 적극적인 거리가게 관리체계가 구축된 서구 선진국에서도 벼룩시장이나 오픈마켓과 같은 무허가 거리가게를 부분적으로 목인하기도 한다. 그리고 일본의 후쿠오카시 같은 경우는 포장마차를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여 법적 관리 하에 도시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일본 후쿠오카의 경우는 포장마차를 도로운송차량법에 의거 ‘경차량’, 식품위생법에 의거 ‘음식점영업’으로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설비를 비치한 경차량’으로 정의하였다. 뉴질랜드의 경우는 이동 가능한 조립식 점포, 가변적 마차, 이동점포, 차량, 트레일러 등을 위생법상 식품노점판매로 구분하고 ‘이동 식품판매점’으로 정의하고 있어 각 나라별 거리가게에 대한 접근이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김희석,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노점관리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5, 2012

거리가게의 법적 문제의 쟁점은 보도상 영업을 허가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현재 일부 지자체 및 울산, 부천, 광명시 등은 자체 운영관리에 대한 조례를 수립하고 제도권 편입의 시동을 걸고 있다. 관련 조례 등에서 언급하는 거리가게 정의를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지역	내용 및 특징	시사점	
국내	서울시 중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하여 도로에 가변적, 일시적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도로법 상 '가변적' 으로 설치된 영업 시설물로 일부 인정
	광명시	도로에 설치된 영업시설물	식품판매에 대한 위생법 관련 허가 및 정의 없음
	부천시	노점 잠정허용구역에 설치 허가된 판매 시설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판매시설물)	
국외	후쿠 오카	포장마차 - 도로운송차량법, 위생법에 의거한 '음식점 영업설비를 비치한 경차량'	도로법 상 허가 사항 없음
	도쿄	푸드트럭 - 무점포 판매업으로 이동점포 - 조리영업-식당영업자동차 - 판매업-식품이동자동차	도로운송차량법에 의거 이동점포로 허가
	뉴질 랜드	식품판매노점 - 이동 식품판매점 (Movable Food Premises) - 이동 가능한 조립식 점포, 가변 포장마차, 이동점포, 차량, 트레일러 등	식품판매에 대한 위생법에 관련 허가 및 정의 없음

〈표 4〉 조례에서 거리가게 정의

이렇듯 거리가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와 더불어 거리가게의 규모와 현황을 파악하는 문제와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거리가게 현황은 일부 도시에서 특화거리 조성으로 인한 실명제 등을 통해 행정적 차원에서 그 수를 파악하고는 있으나 이는 도로점유라는 개념 아래의 전수조사로 노점의 영업 현황의 전체적인 파악은 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포장마차의 단속으로 인해 차량을 이용한 노점의 활동영역이 넓어진 관계로 그 규모를 파악하기란 아주 어려운 상태이다. 이러한 이유에서라도 거리가게를 불법의 존재로 정의를 내려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아닌 '문화'로 받아들여 사회적 맥락에서의 관리대상으로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

2.2 거리가게 정책변화

서울시에는 현재 확인된 거리가게의 숫자만 8,600여개에 이르고 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증가추세를 이어감에 따라, 거리가게에 대한 실명제와 등록 및 허가제 추진을 본격화하여 불법적 임대 및 권리의 행사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울시 디자인 총괄본부의 노점개선 사업을 시작으로 각 자치구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많은 개선사업이 진행되었고, 일부 거리가게 관련 조례 제정⁹⁾을 통하여 기본 운영수칙을 수립함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관련 법제화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2013년 ‘상생정책자문단’¹⁰⁾의 구성과 2년간의 운영을 통하여 일방적인 정책 입안에서 벗어나 상생의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 관련정책의 변화는 다음 <표 5>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방향	년도	정책방향	주요내용
일체단속	1989-1996	노점대책 마련 및 정비 추진	도로구역을 절대금지, 상대금지, 관리구역으로 구분 관리
	1997-2006	경제위기(IMF) 기업형과 생계형 구분 특화거리, 중검거리	IMF이후 노점상증가, 기업형 노점단속, 생계형노점단속자제 노점특화거리 및 중점구간 지정관리
시범시행	2007-2011	단속과 관리 이중 정책	시간제·규격화 디자인노점 거리 조성사업 시범실시 노점상이 원하는 경우 일부지역에 시범적 노점 허가(특화거리 조성) 종로 대로변의 노점 이면도로 이전 후 특화거리 조성
상생방안	2012 이후	노점상 생계 안정 및 단계적 도입 검토	도시민민의 자구수단 인정 공공공간에 대한 상생 방안 도출을 위한 협의체 운영

<표 5> 노점관련 정책변화

9) 서울시 강동구, 중구 조례수립 완료. 동작구, 영등포구 조례수립 검토 중

10) 서울시, ‘노점상 전담 자문단’ 출범, 중소기업뉴스, 2013. 12. 18

(노점단체, 상인, 디자인전문가, 건축 도시계획전문가, 갈등관리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원,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

이러한 정책 안에서 2007년부터 서울의 거리가게는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거리가게 관련허가제 및 등록제를 실시하면서 거리가게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1) 기 추진사업 개요

구분	대 상	실시 연도	주요내용	문제점
시설물 정비	가판대 1,400여개 구두수선대 1,300여개	2007	가이드라인에 의한 표준디자인 적용	천막 설치, 음식 제조 금지 등 과도한 규제
	종로구 - 걷기 편한 거리	2010	거리가게 재정비 사업	
거리 정비	서대문구 - 연세로 명물거리	2014	명물거리 스마트 로드샵	체계적 관리 미흡 자치구 개별추진에 의한 문제
	동대문구 - 왕산로	2014	경동시장 일대 캐노피 설치	

〈표 6〉 거리가게 시행 개요

(2) 거리가게 허가제 및 등록제 실시

2007년부터 특정거리 거리가게 허가제 일부 시행되어 2014년 현재 특화노점 1,970개 중 973개 (49.4%)된 상태이다. 하지만 노점 단체의 반발 및 구(區) 별로 상이한 허가조건 등으로 인해 유지가 어려운 상태다. 그리고 거리가게 허가제를 포함한 여러 정책 시행에 있어 성과가 미흡한 점에서 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실행력 부족, 까다로운 허가 조건, 노점 단체 반대 등이 문제점으로 보여진다.

2.3 국내외 관련 사례조사

01 정책적 사례

(1) 국내 사례조사

도로법 시행령 55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따르면, 도로법 시행령 상에는 ‘노점’이 명시되어 있어 거리가게는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불법이 된다. 즉, 거리가게는 점용 허가대상이 아닌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합법이 되는 것이다. 이에 도로의 관리청인 지자체에서 별도의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거리가게와 관련하여 시행 중인 현존하는 조례를 살펴보면 도로법, 서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서 서울시 도시계획 시행규칙과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24시간 대로변에 존치되고 있는 거리가게는 공공 시설물과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현존하는 서울시 공공공간 가이드라인과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고찰하여 대로변 가로 시설물영역에 존치되는 시설물로서 통합되는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서울시 및 각 지자체의 거리가게에 관련된 현존하는 다음의 6개 조례를 살펴보면,

- 서울시 강동구 : 서울특별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2014. 12. 10)
- 서울시 중구 :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 (2015. 01. 28)
- 고양시 : 고양시 노점판매대 운영 규정 (2013. 06. 23)
- 광명시 :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2015. 04. 03)
- 부천시 :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2015. 01. 12)
- 울산중구 : 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2014. 12. 29)

각 조례의 목적은 도로법에 의거 도시미관 개선과 보행자 편의도모를 위한 필요사항에 두고 있다. 그리고 디자인에 관련된 항목에 있어서는 서울시 중구의 경우 ‘거리가게의 정의’를 ‘가변적, 일시적으로 설치한 시설물’로 정의하고 있어 고정형이 아닌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한 형태의 디자인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점용허가에 따른 조건 및 제한에 보행권을 침해하는 도로에 대해 금지구역을 정하고 있어 유효보도폭 및 보도시설물과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시설물관리 부분에서 부천시의 경우는 판매대의 규격, 색상, 모양을 시 기준에 두고 있으면서 노점판매대의 훼손 및 도시미관 저해요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자치구	조례의 목적
서울시 강동구	디자인 노점의 관리와 감축
서울시 중구	거리가게 관리 운영규정으로 도시미관 개선 및 보행자의 편의도모
경기도 고양시	노점상 효율관리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 및 보행자의 편의도모
경기도 광명시	시민보행 및 도시환경 개선
경기도 부천시	가로환경개선을 위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울산시 중구	가로환경개선 공유와 재산 및 물품관리법

〈표 7〉 지자체 조례의 목적

현존하는 거리가게 관련 조례내용을 구분하면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1)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도로법 상 점용허가가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는 거리가게 점용허가의 기준과 점용료 징수에 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있다. 도로법상 별표 기준 안에 ‘노점’이 삽입¹¹⁾되면서 가로판매대 등 이와 유사한 것, 혹은 노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조례가 늘어나고 있다.

2)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민보행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한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일반적인 도로점용허가와와는 다르게 대상선정의 재산기준 및 품목기준, 위치기준 등을 명시해 놓고 있다. 특히 광명시의 조례에서는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물의 점용허가, 허가기간, 적정수량, 규격, 설치장소 및 운영자의 자격기준, 시설물 운영 및 관리, 기타 심의 사항 등을 심의한다. 별도의 거리가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경우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조례에 포괄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3)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기준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영업시설물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

11) 도로법 시행령 4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법 41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별표2 : 7.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버스판매대, 구두수선대 (토지가격의 0.001을 곱한금액),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의 0.05를 곱한 금액)

4)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서울시 강동구의 디자인 노점 관리의 조례, 서울시 중구의 거리가게 운영규정, 고양시의 노점판매대 운영규정, 울산시 중구의 노점관리 조례이다. 도로상에 설치 운영하는 노점판매대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점상을 효율적으로 정비, 관리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별도의 거리가게의 조례를 제정한 경우로 실명제를 통한 관리운영규정과 노점개선자율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중구의 경우 보행권을 침해하는 도로에 대해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1)버스정류장 양끝 3m이내 지점, 2)지하철 출구로부터 5m이내 지점, 3)횡단보도로부터 3m이내 지점, 4)보도 잔여폭 2.5m미만 5)시민불편지역 및 민원발생지역, 6)그 밖의 구청장이 지정한 지역 이 있다.

5)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상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거리가게는 불법이다. 따라서 서울시의 가로판매대, 고양시, 광명시의 노점운영규정에 ‘음식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금하고 있지만,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보온을 요하는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 김밥류 등의 판매행위에 한정하여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식품위생법상 충돌되는 부분을 막기 위함일 것이다. 하지만 지역 활성화의 수단으로 거리가게가 활용이 된다면 거리가게에 적합한 식품위생 규정이 필요함과 동시에 거리가게 영업자 또한 건강검진 및 교육, 가격표 부착, 위생기준 마련 등에 대한 노력으로 ‘위생상 문제가 없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서울시 및 각 지자체의 거리가게와 관련된 조례들이 엄격한 규정 아래 현존하고 있지만 다음 세 가지의 경우와 같이 모호한 영역이 존재한다. 첫 번째, 지속적인 관리 정책이 미비하여 가로판매대의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합법적인 거리가게이지만 실제 운영방식은 불법적인 경우가 있다. 두 번째, 소위 생계형 노점으로 할머니가 좌판 하나를 들고 시장 초입에서 상품을 판매할 경우, 이를 불법적 노점과 같은 시각으로 볼 수 없다. 법적으로는 동일한 불법적인 도로점유 행위이지만 시민들의 인식에서 묵인 가능한 경우이다. 세 번째,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전통시장 내 노점상의 경우이다. 위의 세 가지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거리가게에 대한 조례들이 사회, 경제, 문화적 조건과 조응하여 행정적 관행이나 의지, 시민사회의 지지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변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인식상 관행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거리가게가 있으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거리가게 관련 조례가 마련되어야 한다.

(2) 국외

거리가게에 대한 가이드라인 도출을 위해 국외의 거리가게 관련법 및 가이드라인의 사례현황을 조사, 분석을 진행하였다. 현황대상은 다음과 같다.

- 일본의 포장마차 현황 및 후쿠오카시의 조례
- 일본의 푸드트럭 현황 및 동경의 조례
- 미국 뉴욕시 노점에 관한 법령
- 인도 2014 노점에 관한 법령
- 뉴질랜드 Christchurch시의 이동 식품판매점에 관한 법령

1) 일본 후쿠오카시 포장마차

일본의 노점은 1964년 동경올림픽을 계기로 비위생적인 노점에 있어서 식품위생법, 소방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등의 법률에 의해 전국적인 규제를 시작하였고, 21세기에 들어서는 폭력단체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폭력단체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 이익금을 제공하는 행위 및 폭력단체의 노점영업 또한 규제하였다. 이에, 현재는 행사 및 이벤트용의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포장마차만 일부 허용되고 있고 허가 받은 노점은 전국 300여개만 남아 있다.¹²⁾ 이렇듯 포장마차의 영업 불허가 지역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동판매의 단점인 ‘위생면에서의 업태 제한’ ‘도로 교통법 문제’ ‘전기, 급배수시설 부족’ ‘한정된 공간 안에서의 작업효율의 불편함’을 해결한 고정형 유닛형태의 주방과 판매시설을 갖춘 트럭 및 견인식 주방차량이 등장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관광의 포인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일본 도로법에는 점용허가 시설 가운데 ‘포장마차’가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포장마차는 ‘물품판매 등을 목적으로 도로상에 임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토지에 정착되지 않고 간단히 취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포장마차는 도로 운송차량법에 의거 ‘경차량’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푸드트럭의 실제 차량을 활용한 거리가게일 경우는 ‘이동점포’로 구분하여 통신, 방문, 차내, 기내판매와 동일한 규정으로 허가를 받고 있다.

일본에서 유일하게 포장마차(屋台야타이)의 명맥을 유지, 운영하고 있는 곳이 후쿠오카시이다. 2014년 현재 124개 점포로 이 수는 일본 전국 포장마차(이동점포 제외)의 약40%로 대부분이 후쿠오카시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다. 후쿠오카시의 포장마차는 이동판매가 아닌 정해진 장소에서 영업하고 있고 대부분 리어커 등을 개조한 형식의 거리가게이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의 이유로 영업시간 외에는 가까운 주차장에 이동하여 주차, 영업 허가 시간 내에서만 도로를 점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

후쿠오카시는 1996년 포장마차 허가제에 관한 요청에 의거하여 포장마차와 상생하기 위한 연구회를 발족하면서 2000년에 ‘포장마차 지도 요령’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이에 2011년 9월 포장마차 상생위원회를 결성, 1년에 가까운 논의 끝에 포장마차를 후쿠오카에 남기자는

12) <https://ja.wikipedia.org/wiki>

결론을 낸 후 2012년 4월 ‘포장마차 상생 추진본부’를 설치, 포장마차 기본 조례를 성립하고 2013년 9월1일 포장마차 허가 조례가 시행되었다. 시행부처는 도시관광 추진과로 후쿠오카시의 포장마차는 지역의 관광을 위한 문화라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¹³⁾. 후쿠오카시의 포장마차 기본조례의 목적은 ‘포장마차의 효용가치와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속가능한 존재’를 위함에 있다. 이에 기본이념을 포장마차의 효용활용과 각각의 책무와 역할의 실현에 두고 있다.

일본 후쿠오카시의 포장마차에 관련 행정부분은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사용 허가**

영업시간은 오후5시~익일 오전4시로 규정하고 있고 화재 등 긴급사태 및 교통정체가 발생할 시 언제든지 바로 이동 가능하도록 도로에 고정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 허가를 받은 범위 외에 의자나 테이블, 냉장고 등의 물품적재 금지, 점등식의 간판류 설치 금지 등 조건 등을 위반 시 허가취소 및 벌금 등을 징수한다.

•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

포장마차 설치 후 도로 유효폭이 2m이상 확보가 되는 곳으로 시각장애인용 블록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는 블록에서 0.6m이상 떨어진 장소에 점용이 허가된다. 또한 점용시간 외에는 도로에 방치할 수 없으며 점용허가에 관한 권리 승계는 불가능하다. 단, 영업자의 사망이나 장기요양 등의 이유로 생계 수입이 필요할 시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까지만 승계가 가능하다.

•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

익히지 않는 음식은 판매를 금지하고 시에서 허가 받지 않는 식품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도구 등을 씻기 위한 물용기와 음용이 가능한 물, 냉장설비 및 온도계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특히 고기 및 생선류는 위생처리가 가능한 장소에서 시행하고 포장마차 내에서의 시행은 금지한다.

• **기본조례 시행규칙**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각각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포장마차의 규격은 너비3m, 폭2.5m이내, 이동이 가능한 구조, 점용시간은 오후5시~새벽4시, 영업 중 물품비치는 너비5m, 폭3m이내, 규격 외 테이블 및 도구의 배치는 불가능, 영업시간 외 기자재 및 차량방치의 금지, 청소 및 오수 폐기물 처리 기준 등이 있다.

• **포장마차 영업 선정**

지속가능한 포장마차 운영을 위해 포장마차 선정위원회 (시장, 전문가, 시의회, 포장마차 단체 등)를 두어 포장마차 영업 후보자를 시민공모에 의해 선정한다. 선정된 포장마차는 3년 허가 (1회-2년 연장, 2회-5년 이내 연장 가능)로 운영한다.

13) 포장마차와의 공생을 위한 연구회 자료 <http://www.city.fukuoka.lg.jp/soki/kikaku/shisei/yatai/>

• 위반행위 내용 및 지도 방법

포장마차 지도요원 25명이 포장마차를 순회하면서 지도 관리, 포장마차 영업자가 경고서에 의한 지도를 1년에 3회 받았을 경우나 영업허가 또는 도로사용허가의 정지처분을 받았을 경우에 도로법에 의하여 해당 포장마차 영업자는 도로점용허가 효력이 정지된다. 그리고 포장마차 영업자가 점용허가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또다시 점용허가 효력의 정지사유의 행위를 했을 때, 영업허가 또는 도로사용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았을 때 후쿠오카시는 포장마차 영업자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시키고 있다.

2) 일본 푸드트럭

일본의 푸드트럭은 이동판매차, 식당 자동차로 구분되어 포장마차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동판매에 관한 법률적 정의는 “2륜을 제외한 자동차에 설비를 탑재하여 이동하면서 식품을 조리·가공 및 판매를 하는 영업”¹⁴⁾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각 세부내용에 관해서는 각 지자체의 ‘자동차에 의한 식품영업에 관한 영업허가 등에 관한 취급요강’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 따라 푸드트럭에 관한 허가내용 및 운영방식은 다양하다.

통신판매, 케이터링 등과 같이 무점포 판매업으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푸드트럭의 경우, 이동판매차로 이미 가공된 식품을 파는 경우가 아닌 차 내에서 식품가공이 필요한 식당 자동차의 경우는 음식점으로서 보건소에 허가를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다.

이는 차량 외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조리공간을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무점포 판매업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위생법상 점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운 것이 푸드트럭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안에서 현재 일본은 공동 취사장으로 허가를 받는다는가, 푸드트럭에 이미 조리된 상태의 식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성행하고 있다.



〈그림 12〉 프랜차이즈 식품을 이용한 푸드트럭 예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위생에 관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일본에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태로 도로에서의 영업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슈퍼마켓 주차장이나 빌딩 앞 등 개인적으로 장소점용에 관해 협의 후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안에서도 교통이 불편한 시골이나 빌딩 내 점심식사 차량, 재난, 이벤트 등에 푸드트럭은 큰 유용가치를 가지고 활약하고 있다.

14) <http://gyousei.ono-office.jp/mc/index.html#00>

푸드트럭에 관련 행정부분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¹⁵⁾

• 판매품목에 대한 조례

식품위생법 상 이동판매 영업차에서 판매할 수 있는 식품은 한정되어 있다. 허가조건에도 나와 있듯 판매형태, 급수탱크 용량으로도 판매할 수 있는 품목도 규정되어 있다. 이동차 영업차의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이 영업차 내에서 조리 후 그 장소에서 제공할 수 있는 조리영업차와 별도의 주방에서 조리한 상품을 영업차에서 판매하는 일반 판매업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영업차 1대에 1개의 업종만이 선택이 가능하다. 따라서 케익을 제공하면서 커피를 함께 제공하고 싶을 때에는 케익(과자제조업)+커피차영업(커피)의 두가지 허가가 필요하다.

분류	업종	내용 등
조리영업 (영업차 내에서 조리, 그 장소에 제공) - 살아있는 것은 취급하지 않는다 - 영업차 내 조리가공은 소구분, 담기, 가열, 조리 등의 간단한 것으로 한정. - 경자동차와 단일 품목만 가능	음식점 영업	카레, 오므라이스, 야끼소바, 샌드위치, 도시락, 알콜 등
	커피 및 차 영업	커피, 홍차 등의 음료, 빙수, 아이스크림, 알콜판매 불가
	과자 제조업	빵, 크레이프, 케익 등
판매업 (별도의 주방 등에서 조리한 상품을 영업차에서 제공) - 영업차 내에서 처리가 되는 식품은 처음부터 포장 된 것으로 한정. - 차 내에서 조리가공은 하지 않는다.	식료품 판매업	봉투에 담은 빵 팩 등에 들어있는 도시락 등
	유제품 판매업	포장된 우유, 치즈 등
	식육 판매업	포장된 조류의 생육 등
	어패류 판매업	생선류. 생식용의 경우 미리 포장된 것을 한정(단, 그대로는 안됨)

〈표 8〉 푸드트럭 판매 품목

15) 동경도복지보건국(<http://www.fukushihoken.metro.tokyo.jp/>)

• 허가조건

영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주관하는 각 지자체 보건소 등에서 ‘자동차에 의한 식품영업에 관한 영업허가 등의 취급요령’에 따라 지자체가 인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고 허가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허가기준 등에 있어서는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상이하나 가장 큰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이 급배수 탱크의 크기이다. 동경의 경우는 판매하는 식품종류에 따라 급배수 탱크의 용량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다량의 물이 필요한 조리가공판매가 아닌 단일품목판매일 경우 또는 1회용 식기를 사용할 경우는 40리터 이상의 탱크가 필요하다. 그리고 1회용 식기를 사용하면서 식품이 다품목일 경우는 80리터 이상, 그 외의 경우는 200리터 이상의 급수탱크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급수탱크의 조건 등 허가조건이 까다롭지 않는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고 있다.

분류	업종	식품 및 식기류 취급에 따른 급수탱크 용량	
조리영업	음식점 영업 커피 및 차 영업 과자 제조업	· 다량의 물이 필요한 조리가공 없음 · 제공하는 식품이 단일 품목임 · 식기류는 1회용을 사용함	40리터 이상
		· 다량의 물이 필요한 조리가공 없음 · 식기류는 1회용을 사용함	80리터 이상
		· 상기 이외의 경우	200리터 이상
판매업	식품품 판매업	18리터 이상	
	유제품 판매업		
	식육 판매업		
	어패류 판매업		

(표 9) 동경의 경우 허가 시 필요한 탱크용량

•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에 의거 신청자 본인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반처벌 집행 2년 경과 후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각 시설에 있어 식품위생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식품관련 업태에 있어 식품위생책임자는 영양사 및 조리사 등의 자격이 없는 경우 6시간 이상의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받은 후 책임자가 될 수 있다. 동경은 사단법인 동경식품위생협회에서 강습회를 주관하고 있다.



(그림 13) 식품위생 책임자 사례

3) 미국 뉴욕시 노점관리

뉴욕시에서도 우리나라의 노점상과 유사한 형태의 노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식품노점상, 일반노점상, 그래픽노점상(Graphic Vendor)¹⁶⁾, 신문판매대 등의 노점행위가 합법적·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노점상의 활동은 뉴욕시의 사회·문화적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뉴욕시의 소득세와 사업세 등 세수입원이 되고 있다. 뉴욕시는 노점상에 대한 허가증 면허증 발급을 통해 일정수의 노점상만 양성화하고 있으며, 나머지 노점상에 대해서는 공공의 안전을 이유로 단속하고 있다.

특히, 1997년 R. Giuliani 시장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1999년 노점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불법 노점상뿐만 아니라 합법 노점상도 크게 줄어들었다. 노점상 금지거리도 100곳 이상을 더 추가시켜, 수 백 개의 신문판매대도 정리하였다. 현재 뉴욕시는 사업서비스국(Department of Business Services)의 노점상대책과(Vendor Initiative Division)에서 노점상을 관리하고 있다. 노점상대책과는 합법적인 노점상이 뉴욕시의 거리노점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부시간 단속권한을 조정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노점상담당과는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고, 소규모 자영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촉진을 목표로 하여 노점상을 관리하고 있다. 한편 뉴욕시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거리노점상위원회(Street Vendor Committee)를 설치하여 노점관련 규칙 및 규제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¹⁷⁾ 뉴욕시의회는 1999년 2월에 노점조례를 개정,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동산 임대차계약

뉴욕시의 모든 노점상은 반드시 뉴욕시와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즉, 노점상이 보도의 특정위치에서 노점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려면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뉴욕시에서 노점행위를 할 수 없으며, 임대차계약서는 일정 시간대에 특정 장소에서만 물건을 팔 수 있는 권리증서이다. 도로상인 경우, 임대차계약은 미리 노점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고 나서 노점상 대기자명단을 기초로 하여 추첨에 의해 이루어지고, 공원인 경우에는 경매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허가제

뉴욕시는 재향군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식품을 파는 노점상에 대한 보건국의 허가증을 내주고 있다. 즉, 식품노점상은 임대차계약서와 식품노점허가증을 가지고서 허가된 노점판매대에서 영업을 해야 한다. 특이한 점은 법인의 경우 60개까지 식품노점허가증을 내주고 있는데, 다수의 식품허가증을 가진 법인은 개인에게 허가증을 임대할 수 있다. 식품노점상은 보건국의 미술위원회(Art Commission)와 노점상대표자회의(Representative of the Vending Industry)가 함께 디자인한 표준 노점판매대를 사용해야 하며, \$100의 비용이 드는 15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16) 책과 미술품을 취급한다.

1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노점상 관리방안 중장기 대책모색', 2001.06

뉴욕시는 표준 노점판매대를 사용하지 않을 때, 2년에 4회 이상 법규를 위반했을 때 식품노점상의 허가를 취소하고 있다. 그리고 횡단보도 및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영업을 하거나 허가증을 패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면허제

뉴욕시는 재향군인 및 군인의 미망인에게 우선적으로 일반노점면허를 내주고 있으며, 그 외 사람은 대기자명단의 순서에 따라 합법적으로 노점을 할 수 있다. 일반노점면허를 가지고 있는 노점상은 신문, 잡지, 책, 팜플렛, 그림 등과 함께 잡화류도 팔 수 있다. 면허기간은 1년간이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면허료는 재향군인 및 군인의 미망인은 없고, 그외 사람은 1년에 \$300를 지불해야 한다.

뉴욕과 달리 미국 LA의 경우는 2015년 자율적 참여로 시작된 노점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과일, 채소 등 Healthy Food판매에 대해서는 도로점용 수수료 인하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 판매허가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및 책임보험이 요구되고 있다. 노점의 위치는 주거지, 사업구역을 막지 말아야 하며 영업구역은 가로 2.4m, 세로 1.2m의 규격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영업 이후에는 주변구역 관리 및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합의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4) 인도 2014 노점에 관한 법령¹⁸⁾¹⁹⁾

공공장소에서의 노점 영업 관리 및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으로 2014년 5월1일부터 시행되어 자릿세 등의 지하 경계를 양성화하여 정규 경제로 이양시키는 것에 대한 목적을 두고 있다.

인도에는 1000만개의 노점이 분포 (Mumbai: 250,000개, Delhi:450,000개, Kolkata:150,000개 이상)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이민 또는 휴업자로 평균 1일 10~12시간 운영되고 있다. 1990년대 허가된 천정이 있는 노점은 14,000개였으나 이후 자릿세, 공급업체의 괴롭힘, 갑작스런 퇴거, 지방경찰 등의 뇌물, 강탈 등으로 인해 더욱 불법영업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노점 공급업체는 스스로 조직을 만들거나 NGO연합인 National Association of Street Vendors of India (NASVI)를 두어 보호하고 있다.

• 인증서 발급

노점을 자동판매기로 인식, TVC(Town Vending Committee)에 등록 후 조건을 갖추면 영업권을 취득, 도시의 지정된 자동 판매기 구역에 위치하여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14세 이상의 노점상은 인증서를 발급받게 되면 본인 혹은 가족만이 운영할 수 있으며 가족에게는 양도가 가능하나 타인에게 양도는 불가능하다.

18) <http://nasvinet.org/newsite/>

19) https://en.wikipedia.org/wiki/Street_Vendors_Act,_2014



〈그림 14〉 인도의 거리가게(좌)와 인증서(우)

• 위반 벌금 등

인증서에 규정된 조건을 위반 시에는 면허취소, 인증서 없이 노점 영업을 시행했을 시는 2000루피의 벌금을 부과된다. 그리고 지방 정부는 물건을 압수하고 영업위치를 재 조정할 수 있다.

노점 위치 이동에 관해서는 최소 30일 전에 재배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받은 후 공간을 이동하지 않을 시는 하루에 250루피의 벌금이 부과된다.

• 법령의 단점

National Association of Street Vendors of India (NASVI)에서 본 법안은 노점상의 40%가 TVC에 등록되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최종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영업장소의 ‘공공의 장소’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어 그 해석에 따라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5) 뉴질랜드 Christchurch시 이동 식품판매점 관리

이동 식품판매점 (Movable Food Premises: MFP)의 정의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준비 또는 처리, 식품판매를 위한 이동 가능한 점포를 의미하며 가변적 포장마차, 이동점포, 식품 판매 트레일러, 조립식 점포 등 이와 유사한 점포 또는 차량을 포함한다. 이동 점포에 의한 식품서비스업에는 포장이 된 식품판매에서부터 테이크아웃과 같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준비, 처리 등 다양한 지침을 공지하고 있다. 공지내용은 크게 판매점의 구조, 환경보호(디자인 관련), 식품위생법에 의한 점포설비 및 작업장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

• 이동식품 판매점의 구조

- 이동 식품판매점은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의 환경오염 (벌레, 새, 비, 직사광선 등) 에서부터 식품을 보호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바닥이나 벽, 천정, 선반 또는 작업대의 표면은 평평해야하고 내구성을 가지면서 청소가 간단한 구조여야 한다.

• 작업장소

- 일반가정의 부엌은 작업장소로서 겸용은 불가능하며, 별도의 작업장이 필요하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준비, 처리, 포장작업, 보관 또는 사용 용기의 세면 등을 위해서 작업장소를 마련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1항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작업장소는 이동 식품판매점 등록에 포함이 되나 지자체 환경위생관에 의한 검사와 허가를 받아 별도의 검사증명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작업장소를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는 각 사업자가 사용할 때마다 청소와 살균을 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제1항에 식품판매 점포에 관한 필요 최소한의 구조요건을 공지하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일반 : 점포의 구조와 수선이 적절해야하고 쥐 등의 침입이 있어서는 안된다.
- 바닥 : 내구성이 있고 간단한 청소가 가능한 바닥면과 벽면의 각은 바닥면에서 75mm이상의 높이로 한다.
- 벽 : 내벽은 환경위생관이 허가하는 페인트로 도색 또는 화학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표면이 깨끗하고 청소가 간단해야 한다. 벽의 높이는 2.4m이상 이여야 한다.
- 조명 : 작업대 높이에서 215룩스 이상의 밝기의 쾌적한 실내 환경이 요구된다. 또한 청소가 간단해야 한다.
- 환기 : 점포 내 가열방지, 결로방지, 냄새제거가 적용된 쾌적한 작업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자연환기가 어려울 경우, 환기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작업공간 : 작업장으로서 충분한 공간이어야 하며 청소가 간단하여야 한다.
- 화장실 : 점포에서 편리한 장소에 있어야 한다.
- 세면시설 : 식품 준비하는 장소에서 편리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

- 급수 : 청결하고 안전한 물을 충분히 공급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온수 : 38도의 온수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 수도 : 간단한 세면이 가능한 도구와 충분한 크기와 용량의 위생용품, 그 외 도구를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 하수처리: 건축기준에 준하여 배수하여야 한다.

• **영업장소**

영업장소에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주변에 화장실 구비
- 온냉수가 나오는 세면대
- 적절한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쓰레기통
- 일시적인 수도 연결 (급수 또는 이동식품 판매점의 배수통에서 하수도까지)이 가능

구분	서울특별시		경기도			울산시
	강동구	중구	광명시	고양시	부천시	중구
형태	디자인 노점	가변적, 일시적 시설물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허가 받은 판매시설물		거리에 설치된 노점
조 례 · 법 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 점용료 등 징수조례 -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조례 - 위생법 - 안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 점용료 징수, 과태료 부가 조례 -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조례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위 원 회	노점개선 자율 위원회	상생자율 협의체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	-	선정 위원회	-
관 리 · 교 육	- 각 지자체에서 시설물 관리 및 실태 조사 (운영관리, 위생관리, 보행 및 가로환경 관리)					
조 건 · 제 한	음식물 판매시 건강진단결과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점 설치 및 제한구역 지정 - 판매품목 규정 - 부동산 및 금융재산 조회 - 주택임대차 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표 제출 - 부동산 및 금융재산 조회 - 임대차 계약서 	판매품목 규정	-	-
위 반 행 위 시 조 치	금지사항 이행시 허가취소 및 노점 철거					
점 용 료 징 수	무단점용자에 점용료등 징수, 부과			-	-	-

〈표 10〉 국내 정책적 사례 비교 분석

제2장 거리가게 개요

구분	일본		미국	인도	뉴질랜드
	후쿠오카	동경	뉴욕	Delhi	Christchurch
형태	포장마차	푸드트럭	공공장소에 설치된 노점상		이동 식품 판매점
조례·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법 - 도로교통법 - 식품위생법 - 소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에 의한 식품영업에 관한 영업허가 - 식품위생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허가제 - 면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장소노점 영업 관리 및 권리 보호에 관한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및 공공장소에 따른 조례 - 식품위생법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위원회 - 상생추진본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리노점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점공급업체조직 - NASVI 	-
관리·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도요원에 의한 지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위생 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서비스국 노점상대책과의 관리 -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C에 의한 영업권리 부여 및 운영조사 -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증명서 취득 - 청소 및 살균 - 식품저장 및 품질관리
조건·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마차 기본조례 시행 -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 - 영업시간에 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설비기준 - 판매 품목에 대한 규정 - 판매 품목에 따른 급배수 탱크 용량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자인된 표준 노점판매대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 판매기 구역 지정 - TVC에 의한 허가증명서 취득 - 장소비용 지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에 따른 구조 규정 - 영업장소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 - 허가증, 등록증명서 취득 - 장소비용 지불
위반행위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사용허가 정지나 취소처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품노점상의 허가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정 위반 시 허가 취소 	-
점검·표징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서 없이 영업하거나 통지받은 공간으로 이동하지 않을시 벌금 부과 	-

〈표 11〉 국내외 정책적 사례 비교 분석

02 디자인 사례

(1) 국내

거리가게 개선사업 시 거리가게 디자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이태원 거리가게 특화거리

• 규모 및 형태

- 2007년에 서울시 노점특별관리대책에 따라 ‘노점 시범가로 조정사업’으로 개선된 거리가게 자체모델로 가로2.0m, 폭1.5m, 높이1.7m 규격
- 판매자가 거리가게 외부에서 운영하는 형식으로 영업시 점용면적이 기존 규격보다 확대

• 색채 및 재질

- 노점의 외관은 과거 손수레 형태에서 스테인리스 박스 형태로 개선
- ‘세계 속의 이태원 관광특구’ 이미지에 걸맞게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화와 서울의 상징인 남산 등을 삽화

• 정보 및 설치

- 이동이 용이할 수 있도록 최소의 규격과 전동바퀴 등의 설치 (타 거리가게와 차별점)

• 관리 및 규제

- 15시~21시 시간제 영업방법으로 영업 시에만 설치, 폐점 시는 이동 보관.



영업 시



이동 시

〈그림 15〉 이태원 특화거리 거리가게 디자인

2) 디자인 서울 '디자인 가판대'(S-Shop)

• 규모 및 형태

- 2008년 '디자인 서울' 정책에 따라 설치된 표준형 가로판매대
- 가로판매대의 규격은 가로2.65m, 세로1.5m, 높이2.5m, 구두 수선대의 규격은 가로2.8m, 세로 1.5m, 높이2.0m
- 부족한 창문 (가판대 내부와 외부거리와의 단절로 인한 답답함)
- 외부로 노출된 상품진열 공간은 내부로 옮겨 외부 돌출 최소화
- 측면공간 활용해 폭넓은 진열 가능하도록 계획

• 색채 및 재질

- 짙은 회색으로 보도상 공공시설물로서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디자인

• 정보 및 설치

- HVAC(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장비 설치
- 기존 가판대에서 지붕 위에 노출되어 있던 에어컨디셔너실외기를 이중의 방음실을 구성하여 내부에 설치
- 2010년에 환풍기 개선, 전기선 정비, 단열 보강 등으로 개선사업 진행

• 관리 및 규제

- 광고가 가능한 영역은 서울시 시정 홍보용으로만 사용



〈그림 16〉 서울시 디자인가판대 디자인

3) 강동구 디자인거리가게

• 규모 및 형태

- 2009년 강동구 로테오거리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22개소의 디자인 노점을 설치
- 사계절 용도로 사용 가능한 강동구 자체 제안 모형으로 결정
- 가로2.5m, 세로1.5m, 높이1.9m 규격으로 폐점 시 도로점용 면적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디자인 방향으로 제시

- 영업 시 판매자는 거리가게 밖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 규격보다 면적이 넓어지는 경향

- **색채 및 재질**

- 색상은 강동구의 생태이미지와 로테오거리의 테마 이미지를 반영해 분홍색에서 연녹색으로 변경
- 색상은 원색인 투명도가 없는 전면 연녹색으로 거리가게만 눈에 띄는 경향
- 내외부 마감재를 갈바 열처리해 사계절 용도로 설계돼 눈, 비와 같은 악천후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

- **관리 및 규제**

- 로테오거리 정식 노점으로 허가 받은 22개소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행위 가능
- 영업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제한



(그림 17) 강동구 디자인노점 거리가게

4) 명동 '뿌까(Pucca)' 거리가게

- **규모 및 형태**

- 명동 롯데백화점 앞 가판대 및 구두수선대 4곳을 대상으로 '뿌까'를 활용한 기차모양의 통합형 가판대

- **색채 및 재질**

- 국산 토종 캐릭터이면서 해외 인지도가 높은 '뿌까' 선정하여 디자인에 적용
- 백화점 앞 특화된 거리로서 일부 원색 사용으로 거리를 밝게 보여지는 효과는 있으나 자극적은 색상으로 인해 도시경관 저해

- **관리 및 규제**

- 디자인은 재능기부 형식으로 참여하여 추가 부담없이 새 단장한 거리가게로 오픈



〈그림 18〉 명동 ‘뿌까’ 거리가게

5) 연세로 거리가게 (스마트 로드샵)

• 규모 및 형태

- 2014년에 개선된 사례로 키오스크형태 (판매자 - 거리가게 내에서 운영)
- 전면에는 서터, 후면과 측면에는 창이 설치된 박스형 구조(서울 디자인심의 후 설치된 사항)
- 판매 품목에 따라 먹거리의 경우 가로2.5m, 세로1.7m, 높이 2.4m 규격, 타로의 경우 가로 2.0m, 세로 1.5m, 높이 2.05m 규격

• 색채 및 재질

- 판매대의 기본색상은 회색, 지붕의 색상은 판매 품목에 따라 먹거리는 녹색, 타로는 황색
- 거리가 보일 수 있도록 옆면 넥산 가림판 투명소재 활용

• 정보 및 설치

- 시설 내 상단 어닝(1m연장), 측면 슬라이드식 넥산 가림판, LED전등, LED메뉴판, LED간판, 빌트인 냉장고, 전기전용 설치
- 메뉴판 타입: 1500×180mm 사이즈로 샘플시안 제작
- 옆면 및 뒷면 유리면에만 구청에서 공익목적 등으로 허용한 광고만 부착, 그 외의 포스터, 현수막 등의 광고물 불허용
- 옆면 넥산 가림판 투명소재 활용으로 거리가 보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림판에 불투명한 광고물 부착은 불허용

• 관리 및 규제

- 연세로 거리가게 상생운영 및 관리규정에 의해 관리
- 도로점용 증명서를 일반시민들이 보기 쉽도록 시설물에 부착
- 디자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벌금 및 벌점조치
- 위반사항: 판매대 외부 물건진열, 판매대 규격 확장 및 변경, 도로점용 허가면적 초과, 천막(가림막) 무단 설치 등

연세로 거리가게 먹거리(그린) 디자인

연세로 거리가게 완성 후



〈그림 19〉 연세로 거리가게 디자인



연세로 스마트 로드샵



연세로 스마트 로드샵



명물거리 스마트 로드샵



와플 거리가게



악세서리 거리가게



거리가게 출입구

〈표 12〉 연세로 거리가게 디자인 세부

(2) 국외

1) 일본 후쿠오카 포장마차

포장마차의 외관은 도시경관을 크게 좌우하게 된다. 따라서 일본에서 유일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후쿠오카의 포장마차 또한 경관 훼손 및 위생 등의 문제로 폐기의 위기가 많았으나 포장마차를 중요한 관광자원의 하나로 위치를 부여하고, 상생위원회를 통해 통행장애, 오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정해 새로운 포장마차 영업을 인정하였다.



개선 전: 통행에 피해를 주는 요소 및 오염 등 (사진 제공: 후쿠오카시)



개선 후: 조례에 의해 점용시간 및 점용면적 등을 규정한 모습 (제공: 후쿠오카시)

(표 13) 후쿠오카 포장마차에 관한 조례 전 후의 모습

조례 및 시행규칙을 내용 중 포장마차의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포장마차의 규격은 가로3m, 폭2.5m로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테이블 및 도구, 취식 등은 규격 내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오후5시~새벽4시 영업시간 중 판매를 위한 물품 비치는 가로5m, 폭3m이내 가능하며 이 규격은 또한 유효보도폭 2m, 시각장애인 블록에서 0.6m가 확보되었을 시에만 가능하다.
 - 영업 시 요금표시, 외관 청결, 하수도 설비를 갖추도록 하였고 과도한 광고물 부착, 전구가 그대로 보이는 간판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 이에, 노점의 설치 등에 관한 예를 블로그 등에 공지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4시20분 자전거 출근



15시 이동 의뢰를 통해 노점 도착



노점위치 결정



외벽 설치



바닥에 외벽선 설치



천정을 넓힘



외벽 설치



광고물 등 설치



16시 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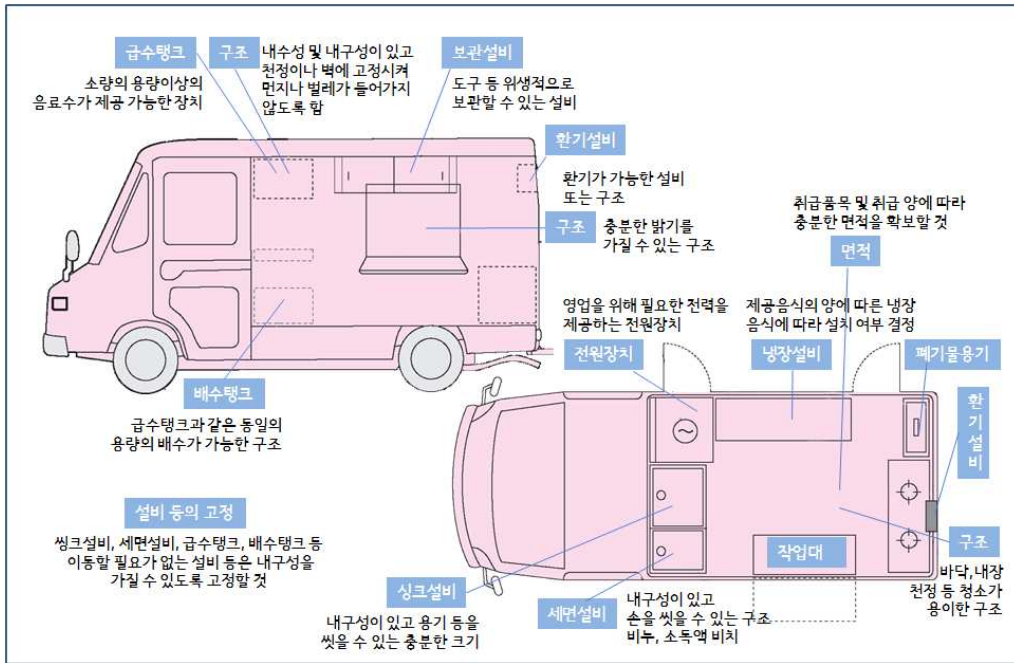
〈표 14〉 후쿠오카 포장마차 설치 예

2) 일본 푸드트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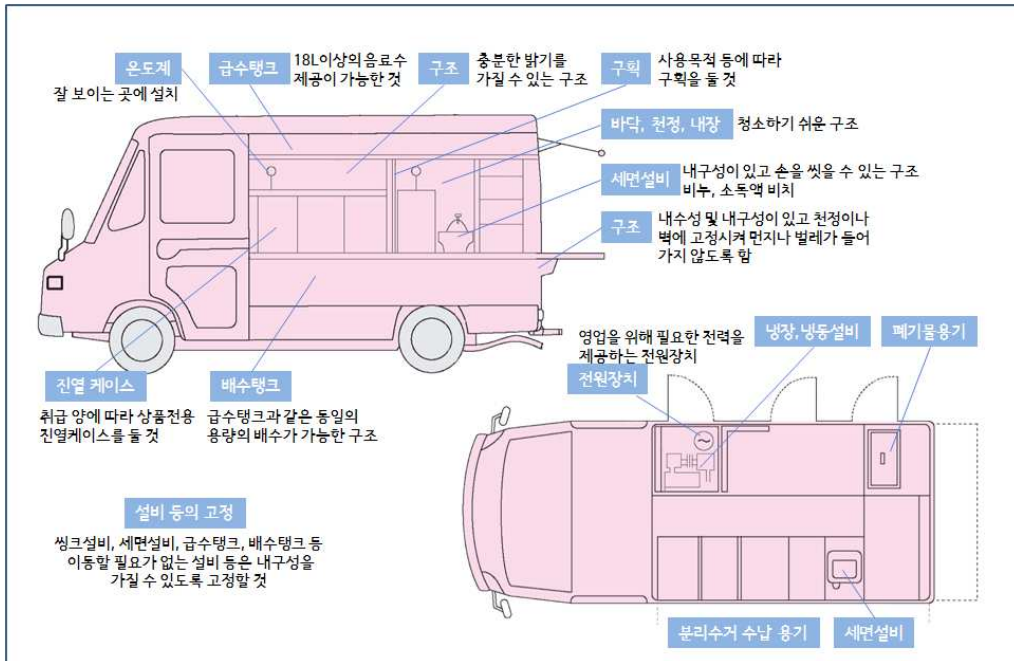
푸드트럭의 경우, 판매자가 기존의 트럭 및 승합차 등을 활용하여 각 지자체의 설비 허가조건 및 판매품목에 따라 제작을 의뢰한다. 각 지자체 및 판매품목에 따라 허가조건 사항이 상이하여 자동차 제조업체는 별도의 푸드트럭을 판매하는 경우는 아직 드물다. 따라서 이동판매차 전문제조회사가 존재하여 각 지자체의 허가조건 등을 맞추어 대형 트럭을 기본으로 한 키친 및 주방설비를 갖춘 자동차 외 이동 슈퍼마켓, 이동 편의점 등을 제작, 경트럭을 기본으로 한 가벼운 이동판매차까지 제작하게 된다. 외관의 경우는 대부분 인쇄물시트 등을 활용하여 개성 있는 외관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이동식품판매를 위해 푸드트럭에 갖추어야 할 설비 조건을 동경도북지보건국의 ‘자동차에 의한 식품영업에 관한 영업허가 등의 취급 요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① 영업차는 내수성과 내구성을 가지고 고정된 천정 및 벽이 있는 자동차로서 벌레 등의 진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 ② 시설 내는 사용목적에 따라 구획을 나누어야 한다.
- ③ 조리가공을 행하는 시설에는 조리품목 및 조리양에 맞게 충분한 면적이 확보되어야 한다.
- ④ 시설 내의 바닥, 내벽 및 천정은 청소하기 쉬운 구조여야 한다.
- ⑤ 시설 내는 충분한 밝기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⑥ 시설 내는 환기가 가능한 설비 또는 구조를 필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⑦ 시설 내는 영업자 전용의 손을 씻을 수 있는 설비가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⑧ 영업차는 내구성을 있으면서 식용에 적합한 물을 제공하는 급수탱크 또는 그와 동일한 용량의 배수탱크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 탱크의 크기는 지자체에 따라 상이함)
- ⑨ 시설 내는 뚜껑이 있으면서 충분한 용량의 청소하기 쉬우면서 냄새나 악취가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내수구조의 폐기물 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⑩ 영업을 위해서는 필요한 전력이 공급되는 전원장치를 영업차의 식품위생 상 장애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⑪ 이동할 필요가 없는 설비 등은 내구성을 가지는 방법으로 영업차에 고정하여야 한다.
- ⑫ 취급량에 따라 자가발전에 의한 냉장장비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이 있는 기계장치에 의해 식품을 냉장보존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⑬ 기구 등을 씻을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내구성이 있는 싱크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⑭ 필요에 따라 소독이 가능한 도구 등을 비치함과 동시에 이들을 위생적으로 보관하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림 20〉 식당영업자동차 (조리영업) 트럭 내 구조의 예



〈그림 21〉 식품 이동자동차 트럭 내 구조의 예

<p>외관</p>	
<p>차량상세</p>	<p>닛산트럭 2WD, 형식: 원동기형식, 특별종류의 보통 가공차 1800CC, 휘발유사용, 차량 4690*1810*2580</p>
<p>설비</p>	<p>100L의 급/배수 탱크, 6개 콘센트, 발전기, 접객카운터, 수납 등</p>
<p>내부</p>	

(표 15) 이동판매차 제작 사례

3) 뉴질랜드 Christchurch시

모든 이동식품판매점포는 지자체에서 환경위생관이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받을 수 있도록 환경 보호 차원에서 거리가게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적절하게 제작된 트레일러 또는 차량
- 스크린, 차양, 텐트, 지면 커버, 지면커버, 파라솔 등 (캔바스천 또는 플라스틱, 그 외 적절한 소재)을 사용하여 식품을 취급하는 부분을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사용
- 위생적인 구조로 식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용기, 또는 포장된 식품만 판매

4) 뉴욕시 Vendor Power

뉴욕의 1만여 개 노점에 대한 규정으로 노점들의 권리를 이해하기 위해 제작, 뉴욕거리 노점 가이드라인으로 Vendor Power²⁰⁾을 배포하여 운영 관리를 하고 있다. 뉴욕시 노점가이드라인에서는 별도의 디자인가이드라인은 없으나 가판대 규격 및 판매상품의 진열방법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20) <http://welcometocup.org/Projects/MakingPolicyPublic>

• **규모 및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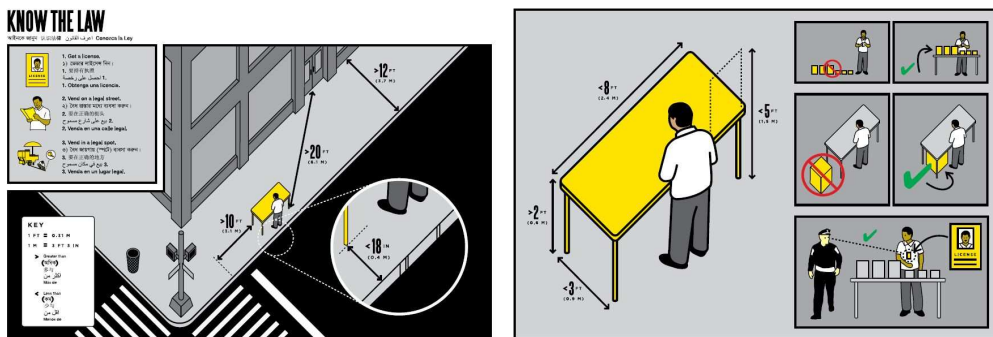
- 보도폭이 3.7m이상일 경우 거리가게 설치 가능하며, 그에 따른 거리가게의 점유공간은 가로 2.4m, 세로 폭1.3m (판매대 폭0.9m, 판매자 공간 0.4m)
- 가판 테이블의 크기는 가로 2.4m, 세로 0.9m, 높이 0.6m
- 상품은 1.5m 높이까지 진열 가능

• **정보 및 설치**

- 가판은 도로 경계석(curb)으로부터 0.4m, 건물 모서리로부터 3.1m, 건물 출입문으로부터 6.1m 떨어져 설치
- 가판은(food), 일반(general), 간행물(first amendment), 베테랑(veteran), 비허가(licensed)로 분류

• **관리 및 규제**

- 상품은 항상 가판 진열, 바닥 진열 금지, 부대 장비는 가판 내부에 위치
- 1000달러 주차권을 구입하면 지정된 위치에서 노점영업 가능
- 팜플렛에 노점의 등록절차, 설치규정, 상품에 따른 가판대 규정 등이 소개
- 거리가게 설치 후 실제 보도 유효보도폭은 2.4m로 규정하고 있다.
- 앞 상가와의 이격거리로 사선으로 6.1m이상 위치에 설치, 횡단보도에서는 3m의 이격거리를 규정
- 그 외 공공시설물 관련에서는 연석 및 펜스와는 45.7cm, 맨홀에서는 60cm, 수목보호대와는 1.5m, 소화전 및 분전반 개폐기와는 3m, 보행표지판 및 정보시설물 시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2m의 이격거리 규정



〈그림 22〉 Vendor Power에서 노점디자인에 관한 규정

5) 파리 바스티유 마켓 (Bastille Market, Marche de Bastille)

파리 바스티유 광장에서부터 리차드 르누아르가를 따라 500m의 거리에 형성되어 있는 채소, 과일, 베이커리, 등 식료품 / 꽃, 장식품, 옷감 등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노천시장이다.

• 규격 및 형태

- 캐노피와 판매대가 균일한 모양과 크기로 배열
- 보행광장을 따라 비계 파이프로 구성된 캐노피 구조물이 설치
- 캐노피 상단에는 줄무늬 천막 설치

• 색채 및 재질

- 매대 하단은 동일한 색깔의 천으로 가려져 있어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고, 정돈된 모습

• 정보 및 설치

- 캐노피 아래 일정한 크기로 상품진열대가 설치
- 캐노피 바로 아래 상품 정보가 적힌 패널과 조명기구 설치
- 소시지와 같은 상품들은 캐노피 기둥에 매다는 진열 장식 가능

• 관리 및 규제

- 영업시간은 일요일, 목요일 오전 7시에서 오후3시까지 제한



(그림 23) 노천시장의 풍경

구분	규격 및 형태	색채 및 재질	정보 및 설치	관리 및 규제
용산구 이태원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2.0m, 세로1.5m, 높이1.7m - 영업시 점용면적이 기존 규격보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테인리스 박스 형태 -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화와 서울의 상징인 남산 등을 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의 규격과 전동바퀴 등의 설치(이동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시~21시 시간제 영업방법 - 폐점 시는 이동 보관
디자인 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판매대 가로2.65m, 세로1.5m, 높이2.5m - 구두수선소 가로2.8m, 세로1.5m, 높이2.0m - 외부 돌출 최소화 - 부족한 창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화색으로 보도상 공공시설물로서 가로경관 등을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VAC장비 설치 - 에어컨디셔너실외기를 이종의 방음실을 구성하여 내부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가 가능한 영역은 서울시 시정 홍보용으로만 사용
국내 강동구 로데오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2.5m, 세로1.5m, 높이1.9m - 폐점 시 도로점용 면적이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동구의 생태이미지와 로데오거리의 테마 이미지를 반영해 연녹색 - 내외부 마감재를 갈바 열처리해 사계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전 10시~ 오후 10시 시간제 영업방법 -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행위 가능
명동 뽕까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뽕까'를 활용한 기차모양의 통합형 가판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릭터'뽕까'선정하여 디자인에 적용 - 원색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은 재능기부 형식으로 추가 부담없이 운영가능
연세로 거리가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셔터, 후면과 측면에는 창이 설치된 박스형 구조 - 먹거리: 가로2.5m, 세로1.7m, 높이 2.4m - 타로: 가로 2.0m, 세로 1.5m, 높이 2.05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색상은 회색, 지붕의 색상은 판매 품목에 따라 먹거리는 녹색, 타로는 황색 - 옆면 넥산 가림판 투명소재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내 상단 어닝 (1m연장), 측면 슬라이드식 렉산 가림판, LED전등, LED메뉴판, LED간판, 빌트인 냉장고, 전기전용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벌금 및 벌점조치

〈표 16〉 국내 디자인 사례 종합 분석

구분	규격 및 형태	색채 및 재질	정보 및 설치	관리 및 규제	
일본	후쿠오카 포장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3m, 폭2.5m - 이동이 가능한 구조 - 판매를 위한 물품 비치는 가로5m, 폭3m이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 시 요금표시, 외관 청결, 하수도 설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후5시~새벽4시 시간제 운영 방법 - 유효보도폭 2m, 시각장애자 블록에서 0.6m가 확보되었을 시에만 가능 	
	푸드트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트럭을 기본으로 한 가벼운 이동판 매차 (차량 4690*1810*25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쇄물시트 등을 활용하여 개성 있는 외관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기설비, 급수탱크, 내수구조의 폐기물 용기, 전력 장치, 위생설비 설치 	
미국 뉴욕	Vendor Pow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폭이 3.7m이상일 경우 거리가게 설치가 가능 - 가로 2.4m 세로 폭1.3m (판매대 폭0.9m, 판매자 공간 0.4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판은 도로 경계석 (curb)으로부터 0.4m, 건물 모서리로부터 3.1m, 건물 출입문으로부터 6.1m 떨어져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은 항상 가판 진열, 바닥 진열 금지, 부대 장비는 가판 내부에 위치 - 1000달러 주차권을 구입하면 지정된 위치에서 노점영업 가능 - 이격거리, 유효보도폭 규정 	
프랑스 파리	바스티유 마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노피와 판매대가 균일한 모양과 크기로 배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적으로 동일한 생상으로 통일감 - 비계 파이프 구조물, 줄무늬 천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노피 아래 상품 정보가 적힌 패널, 조명기구 설치 - 캐노피 기둥에 매다는 진열 장식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요일, 목요일 오전 7시~ 오후3시 요일시간제 운영방법
뉴질랜드	Christ-chur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된 트레일러 또는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크린, 차양, 텐트, 지면 커버, 지면커버, 파라솔 등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위생관이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 	

〈표 17〉 국외 디자인 사례 종합 분석

제3장

거리가게 현황

제3장 거리가게 현황

3.1 서울 거리가게 현황조사 개요

2014년 거리가게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현재 서울시에 입지하는 거리가게 수는 8,662개소로 집계, 2013년 8,826개소에 비해 미세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²¹⁾. 그러나 전통시장 등 비가로변 거리가게 및 트럭형 거리가게, 공공장소의 이벤트 등 간헐적으로 영업하는 거리가게를 포함한다면 그 수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상당수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듯 상당수의 거리가게 중에서 2014년 2월말 현재 서울의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 및 허가 현황 제출에 따르면 특화거리 조성개수는 2,235개이며 그 중 허가된 곳은 947개소, 미 허가된 곳은 1,288개소²²⁾로 집계되어 있다. 이러한 집계현황에서 볼 때 안전한 보행도로에서 허가된 거리가게는 전체의 10%도 안되는 상황에서 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2014년 거리가게 실태조사보고서의 유형별 현황을 보면 2012년 대비 2013년 포장마차 및 기타 거리가게 수는 큰 변화가 없으나 손수레는 67%감소에 반면, 차량노점은 144%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도로법 등에 의한 허가제에 따른 단속에서 일반 노점에 비해 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가이유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차량노점의 경우 간헐적 영업형태를 띄고 있어 그 수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1) 2014년 거리가게 실태조사 결과보고 - 서울시 도시안전실

22) 2014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거리가게 분야 특화거리 조성계획 제출

구분	계	포장마차	손수레	차량	좌판	기타
2014년	8,662	851	2,067	633	2,771	2,335
2013년	8,826	869	736	2,071	2,770	2,380
증감	▽ 164	▽ 18	△ 1,331	▽ 1,433	△ 1	▽ 45
증감율(%)	▽ 1.9%	▽ 2.1%	△ 180.8%	▽ 69.2%	△ 0.04%	▽ 1.9%
2013년	8,826	869	736	2,071	2,770	2,380
2012년	9,292	853	2,216	849	3,041	2,333
증감	▽ 466	△ 16	▽ 1,480	△ 1,222	▽ 271	△ 47
증감율(%)	▽ 5%	△ 2%	▽ 67%	△ 144%	▽ 9%	△ 2%

〈표 18〉 2012년, 2013년, 2014년 거리가게 실태조사 결과보고 - 유형별 현황

품목별로는 음식이 3,171개(35.9%), 잡화 및 의류, 악세서리 등의 공산품이 2,980개(33.8%), 농수산물 2,244개(25.4%), 타로 및 기타 431개(4.9%)순으로 조사되었다. 2012년 대비 대부분의 거리가게 수는 감소되었으나 잡화 및 기타 품목에 있어서는 소폭 증가되었다. 이는 지속적인 단속과 경기침체로 인한 수익감소 및 고령화에 의한 영업포기 등의 이유를 들 수 있다.

구분	계	음식	의류	악세서리	농수산물	타로(점)	잡화	기타
2013년	8,826	3,171	534	1,089	2,244	103	1,357	328
2012년	9,292	3,314	612	1,224	2,465	107	1,252	318
증감	△ 466	▽ 143	▽ 78	▽ 135	▽ 221	▽ 4	△ 105	△ 10
증감율	△ 5%	▽ 4.3%	▽ 12.7%	▽ 11.0%	▽ 9.0%	▽ 3.7%	△ 8.4%	△ 3.1%

〈표 19〉 2013년 거리가게 실태조사 결과보고 - 품목별 현황

(1) 거리가게 현황조사 개요

서울시 거리가게의 일반적인 현황 파악 및 문제점 분석을 위해 시범허가지역으로 선정된 3개 구 5개 지역과 특화지역으로 조성된 3개 지역, 거리가게가 밀집된 2개 지역을 임의로 선정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각 거리의 한가한 시간대와 혼잡한 시간대를 방문하여 직접 보도폭을 실측함과 동시에 판매자 인터뷰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결과를 통해 정량적 데이터를 취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24〉 현장 실측 및 인터뷰 조사

(2) 조사내용

전체적으로 도로의 환경적 조건, 시설적 조건, 운영시스템에 대해 조사하였다. 환경적 조건으로 도로의 평탄도 등 도로상태, 유효보도폭을 조사하였고 거리가게 대상지의 주변상가 및 상권의 특성, 차량진입과의 관계, 도로의 인프라시설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시설적 조건으로 거리가게의 규모 및 형태, 보도상의 배치 현황, 색채 및 재질에 대해 조사하였고 거리가게의 정보 및 진열상태, 운영시스템에 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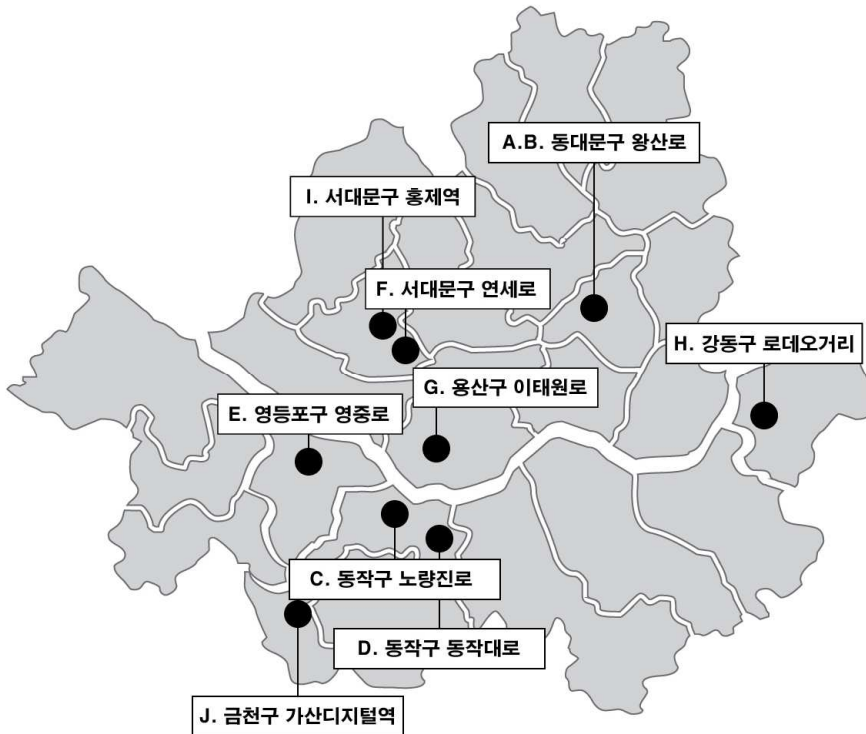
환경적 조건	시설적 조건	운영
(1) 도로 평탄도, 마모도 (2) 유효보도폭 (3) 이격거리	(4) 규모 및 형태 (5) 보도 상 배치 (6) 색채 및 재질	(7) 정보 및 진열 (8) 운영시스템
도로의 경사도, 마모상태 시간대별 보행 가능한 보도 폭 차량진입 가각부, 인프라와의 관계	매장크기 및 형태 배치형태	배치형태 및 크기, 형태 보안 및 운영방안

〈표 20〉 거리가게 현황분석 내용

(3) 직접조사 대상지

	대상지	시범허가대상	2015실행대상	일반밀집지역
A	동대문구 왕산로 100m 약27개소		√	
B	동대문구 왕산로 약26개소	√		
C	동작구 노량진로 약46개소		√	
D	동작구 동작대로 400m 약71개소			√
E	영등포구 영중로 360m 약44개소		√	
F	서대문구 신촌연세로 430m 약26개소	√		
G	용산구 이태원로 500m 약123개소	√		
H	강동구 천호동 로데오거리 300m 약21개소	√		
I	서대문구 홍제역 300m 약58개소			√
J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400m 약45개소	√		

〈표 21〉 직접조사 대상지



〈그림 25〉 조사 대상지 위치

3.2 환경조건

01 보도 평탄도

(1) 경사도

전통시장과 인접한 보도 2개소(경동시장 주변 왕산로(A), 홍제역 인왕시장 주변(I))는 부분적으로 급격한 경사도로 인해 보행환경이 한쪽으로 집중되어 실질적인 유효보도폭이 좁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보행 안전에는 적합하지 않는 보도상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접건물은 바닥면을 높이고 그에 맞추어 보도면의 높이를 변형시키는 경우가 있어 횡단 경사가 15도 정도로 가파른 부분도 있다. 그리고 생활권 거리인 노량진로(C)의 경우는 거리가게 앞 상점들의 입구가 계단으로 높아져 있어 통행로가 좁다. 이로 인해 혼잡한 시간대에는 보행자들이 좁은 보도 대신 상점 앞 계단을 이용하여 위험하다. 영중로(E) 또한 유사한 상황으로 좁은 보도에 설치된 거리가게로 인해 상점 앞의 빈 공터를 보행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어 보도환경이 불편하다.

그 외 지역의 보도는 평탄한 보도환경으로 보행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특히, 특화거리로 조성된 연세로(F)의 경우 도로 평탄화 작업 후 거리가게를 설치하여 아주 안전한 보행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A. 왕산로	B. 왕산로	C. 노량진로	D. 동작대로	E. 영중로
				
F. 연세로	G. 이태원로	H. 로데오거리	I. 홍제역	J. 가산디지털역
				

〈표 22〉 보도 경사도 현황

(2) 도로마모상태

전통시장과 인접한 보도 2개소(경동시장 주변 왕산로(A), 홍제역 인왕시장 주변(D))는 자전거 및 자동차가 보도위로 올라오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손상된 곳이 많다. 따라서 보행 시 마모된 도로를 피해 걸어야 하는 상황으로 실제 보도 폭은 마모가 없는 곳으로 집중되어 유효보도폭이 좁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보도블록 포장이 오래 전에 시공되어져 과중한 하중을 받을 때 깨지거나 블록 간 틈이 벌어진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되었다. 또 여름철 집중호우나 기타 원인으로 사춤래가 유실되어 그 부분의 보도가 침하되는 것도 종종 볼 수 있다.²³⁾ 같은 지역의 왕산로(B)의 경우는 보도블록은 노후되었으나 자동차 등의 주차나 진입에 의한 손상이 없고, 고객유입이 주변에 비해 적은관계로 인해 양호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취식이 가능한 포장마차가 많은 노량진로(C), 영종로(E), 가산디지털단지(J)의 보도는 오랜 시간 청소하지 않고 방치되어 오염으로 인한 도로마모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보도 손상으로 인해 빗물 및 오물이 고여 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연세로(F)와 로데오거리(H)는 새롭게 보도환경을 재정비 한 상황으로 양호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A. 왕산로	B. 왕산로	C. 노량진로	D. 동작대로	E. 영종로
				
F. 연세로	G. 이태원로	H. 로데오거리	I. 홍제역	J. 가산디지털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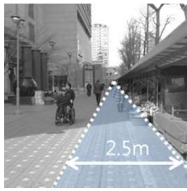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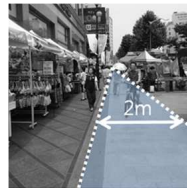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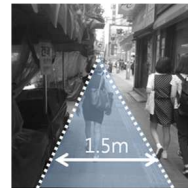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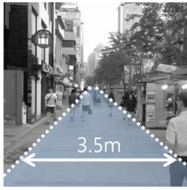




〈표 23〉 보도 마모도 현황

23) “보도설치기준 국제비교연구” 정석, 서울시정개발연구원

02 유효보도폭

(1) 한가한 시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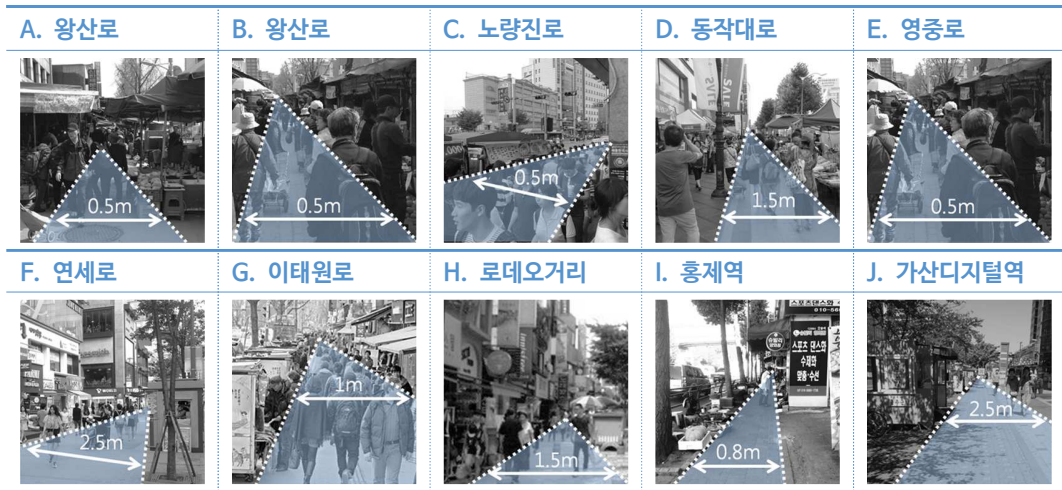
거리가게 및 거리가게 주변의 상가가 영업을 개시하기 시작하는 시간대로 앞 상가의 대지경계선에서 거리가게의 상품이 배치된 앞까지 거리를 실측하였다. 그 결과, 경동시장 주변의 왕산로, 노량진로, 영중로, 이태원로, 홍제역의 5개 지역의 평균 유효보도폭은 1.5m로 계측되었다. 그러나 거리가게의 앞 상가가 보유하고 있는 대지를 포함한다면 실질적인 유효보도폭의 평균은 2m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왕산로(B)와 동작대로(D)의 보도의 경우 거리가게 앞은 고층 빌딩으로 타 지역보다 다소 넓어 평균 3m의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대지경계선에서 볼 때는 평균 2.5m이다.

A. 왕산로	B. 왕산로	C. 노량진로	D. 동작대로	E. 영중로
				
F. 연세로	G. 이태원로	H. 로데오거리	I. 홍제역	J. 가산디지털역
				

〈표 24〉 한가한 시간대 유효보도폭 현황

(2) 복잡한 시간대

거리가게 및 거리가게 주변의 상가의 영업이 가장 활성화되는 시간대로 앞 상가의 대지경계선에서 거리가게의 상품이 배치된 앞, 또는 물건구매 및 식음을 하기 위해 거리가게 앞에 고객이 서 있는 선까지 거리를 실측하였다. 특히 시민의 보행량이 많아지는 시간대에는 거리가게 상품들이 보도로 침범하는 경우가 많아져 경동시장 주변의 왕산로, 노량진로, 영중로, 홍제역은 평균 1m이하로 아주 좁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이태원, 로데오거리는 복잡한 주말 저녁에는 1m~1.5m로 좁아지는 반면에 연세로와 가산디지털역 주변은 넓은 보도폭으로 인해 복잡한 시간대에도 보도환경에는 영향이 없었다.



〈표 25〉 복잡한 시간대 유효보도폭 현황

(3) 대상지 주변과의 관계

보행량이 많아지는 시간대 또는 주말의 경우 인근상점의 노점 또는 간판 등이 보도에 나와 있어 유효보도폭이 좁아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경동시장 주변의 왕산로(A), 동작대로(D), 영중로(E), 홍제역(I) 주변은 기존상점의 노점이 나와 있거나, 상품적제, 광고물 설치 등으로 인해 보도폭을 좁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26〉 주변과의 관계에서의 유효보도폭 현황

03 이격거리

(1) 가로시설물 - 교통시설물 및 도시기반 시설물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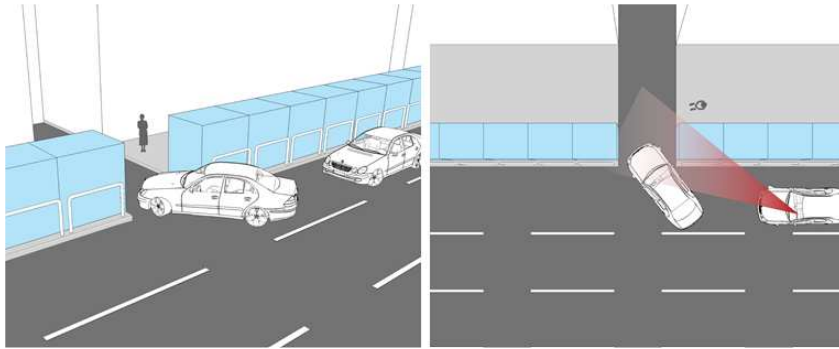
〈그림 26〉 가로 시설물 관계도

특화거리 개선사업을 실시한 신촌 연세로(F)를 제외한 모든 거리에는 버스정류장, 지하철출입구, 교차로, 육교 주변에 거리가게가 비치되어 있는 상태로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있다. 노량진로(C)의 경우, 버스진입방향으로 버스정류장 바로 앞까지 비치되어 있어 아주 위험한 상태이다. 그리고 동작대로(D)와 영중로(E)는 지하철 출입구 바로 앞에 거리가게가 비치되어 있어 진입에 있어 큰 방해로 주고 있다. 그 외는 도시기반시설물을 무시하고 거리가게가 비치되어 있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A. 왕산로	B. 왕산로	C. 노량진로	D. 동작대로	E. 영중로
F. 연세로	G. 이태원로	H. 로데오거리	I. 홍제역	J. 가산디지털역

〈표 27〉 교통시설물 및 도시기반시설물과의 관계 현황

(2) 차량진입 - 가각부 현황



〈그림 27〉 거리가게와 가각부의 관계도

특화거리 개선사업을 실시한 연세로(F)를 제외한 모든 거리에 대로변에서 차량진입을 위한 가각부, 사차로의 코너 앞에 거리가게가 비치되어 있는 상태로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을 저해하고 있다.

A. 양산로	B. 양산로	C. 노량진로	D. 동작대로	E. 영중로
F. 연세로	G. 이태원로	H. 로테오거리	I. 홍제역	J. 가산디지털역

3.3
규격 및 배치

01
규모 및

〈표 28〉 가각부 현황




04 형태

현재 서울시 디자인가판대의 규격은 너비2.5m, 폭1.5m, 높이2.5m로 점용면적 2.4~4.0㎡내외로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상생협의체에서 논의된 거리가게 규격은 가로 3m, 세로2.5m로 품목에 대한 제안 없이 통일된 규격으로 논의된 상태이다.



〈표 29〉 서울시 가판대 규격과 상생협의체 협의된 규격

규격은 농수산물 등 비가공품일 경우 평균 가로3m, 세로2m, 높이2.1m로 전통시장 주변의 임시 허가형으로 비치되어 있다. 공산품일 경우 평균 가로2.5m, 세로1.5m, 높이2m로 그 중 판매품목의 류일 경우 상황에 따라 좌판형태로 가게규격이 확장되고 있다. 그리고 판매자는 거리가게 외부에서 판매하고 있어 판매자 공간을 포함한다면 실질적인 규격은 0.5m 더 확대되고 있다. 취식이 가능한 포장마차의 경우는 취식하는 고객 수에 따라 기존 보다 넓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거리가게의 평균규격은 가로3m, 세로2.5m이다. 특화거리조성으로 인한 가게규격은 가로2.5m, 세로1.5~1.7m로 제한되어 있으나 신촌 연세로를 제외한 2개 지역의 거리가게는 실제 영업 시 상품배치 등으로 인해 규격이 커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농산물 등 비가공품 가로3m, 폭2m	공산품 가로2.5m, 폭1.5m	포장마차 가로3m, 폭2.5m
		

〈표 30〉 품목에 따른 평균 규격

A. 왕산로	B. 왕산로	C. 노량진로	D. 동작대로	E. 영중로
선형 / 연속 부스 3.2m*2m	선형 / 연속 부스 2.5~3m*2m	점형 / 임시+상주 2.5~3.5m*2m	점형 / 임시+상주 2~2.5m*2m	점형 / 임시+상주 3m*2.5m
				
F. 연세로	G. 이태원로	H. 로데오거리	I. 홍제역	J. 가산디지털역
점형/ 고정/상주 2.5m*1.7m	점형 / 이동 2m*1.5m	점형 / 고정/상주 2.2m*1.5m	점형 / 임시+좌판	점형 / 고정/상주 3m*1.6m
				

〈표 31〉 거리가게의 규모 및 형태

05 보도상 배치

현존하는 거리가게는 가로시설 영역 내 독립적인 가게형태로 점적으로 배치된 곳과 긴 텐트 시설 내 구역을 나누는 형태의 선형으로 배치하는 두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점형 거리가게 또한 좁은 도로 내에서 연속선형 배치되어 특히 24시간 도로변에 존치된 연속적 선 형태의 거리가게의 경우는 도시미관을 고려했을 때 공공시설물로서의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거리가게 상인의 선형군집은 결국 마주보는 상권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고, 자리에 대한 전대의 가능성 뿐 아니라 화재 등에 의한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천막소재 설치 시 앵커볼트 등으로 도로에 고정된 경우도 볼 수 있어 고정시설물로서 도로에 존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치 형태	선형	<p>캐노피 형태의 일률적 배치로 거리가게 구역을 나누는 형태: 연속적으로 이어진 긴배치로 인해 가로경관 가림막화</p>	
	점형	<p>독립적 가게형태로 보도에 점적 배치: 점형태 거리가게가 연속으로 배치될 경우 도시미관 저해</p>	
고정 형태	<p>앵커볼트 등을 활용하여 바닥에 설치 이동의 어려움</p>		

〈표 32〉 거리가게 배치 현황

06 색채 및 재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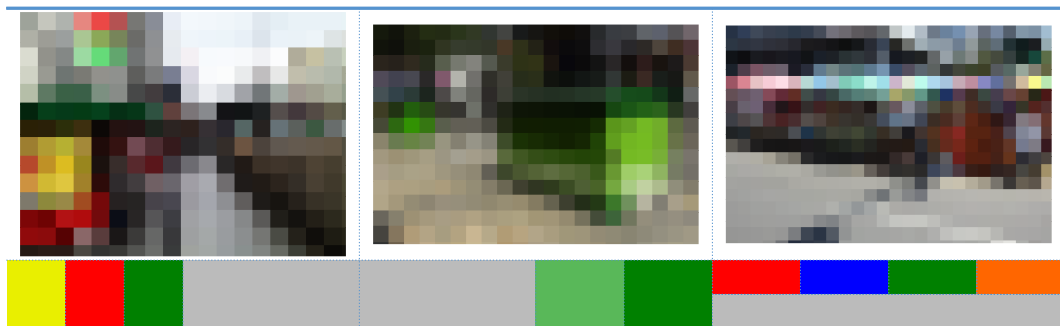
(1) 색채

대부분의 거리가게는 천막을 사용하고 있어 색채의 경우는 기존 천막색상인 적색, 녹색, 청색 등 원색이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거리가게를 조금 더 눈에 띄게 하기 위해 강렬한 색 대비를 활용하기도 한다. 그 외 특화거리로 조성된 강동구 거리가게의 경우 전 면을 녹색 원색을 사용하고 있어 강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 신촌 연세로의 경우는 주변 환경색과 더불어 원색을 포인트로 사용하고 있다.

A. 왕산로	B. 왕산로	C. 노량진로	D. 동작대로	E. 영중로
청색	청색	녹색+청색	녹색+적색	청색
				
F. 연세로	G. 이태원로	H. 로데오거리	I. 홍제역	J. 가산디지털역
도시색+포인트 컬러	청색+재료색	녹색	무지개색	백색
				

〈표 33〉 거리가게 색채 현황

거리가게의 대표 이미지를 모자이크 분석법을 통해 거리가게 색상과 주변의 도시색상을 추출하면 도시의 회색 가운데 Red, Green, Blue의 원색계열이 밀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4〉 거리가게 색채 분포현황

(2) 재질

대부분의 거리가게는 포장마차 형태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천막, 또는 파라솔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불을 사용하고 있는 거리가게의 경우는 화재에 대한 대비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는 점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천막의 수명 또한 짧고 청소 등의 어려움이 있어 새것으로 교체를 하지 않은 이상 낡은 그대로 거리에 존치되어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정비가 된 거리가게의 경우는 갈바(철+아연)재질의 가판대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전기 아연 도금 강판 EGI (Electrolytic Galvanized Iron) 사용도가 높다

소 재		
기존거리가게	정비사업 후	
화재에 약한 텐트소재를 활용하고 있음 	폴리카보네이트 - 렉산 화재예방 및 투명감은 있으나 내구성이 약함 	EGI재질 - 우레탄 도장 

〈표 35〉 재질 현황

3.4 운영 시스템

01 정보 및 진열

고객들의 대부분은 값이 싸고 편리한 이유로 거리가게를 이용한다. 하지만 한편 위생면에 있어서는 아직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곳이 또한 거리가게이다. 현존하는 거리가게 중 천호 로데오거리의 거리가게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판매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식품에 대한 원산지표기도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일부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기는 볼 수 있으나 이는 극히 일부이며 기본적인 상품에 대한 가격정보도 없는 경우가 대다수 이다.

상품진열에 있어서는 좌관형태의 판매에서는 바닥에 그대로 방치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거리가게 내부공간은 적재공간으로 활용, 질서 유지선을 넘어서 바닥에 상품을 진열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A. 왕산로	B. 왕산로	C. 노량진로	D. 동작대로	E. 영중로
바닥진열	바닥진열/신선도 저하 상품정보 미표기	원산지 미표기	가격 미표기	원산지 미표기
				
F. 연세로	G. 이태원로	H. 로데오거리	I. 홍제역	J. 가산디지털역
과대 광고노출	가격 미표기	판매자 정보 표기	바닥진열 상품정보 미표기	과대 광고노출 원산지 미표기
				

(표 36) 정보 및 진열 현황

02 운영 및 유지

거리가게대부분의 거리가게는 도로에 24시간 존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 중 이태원로의 일부 거리만이 영업시간에만 대로변에 비치되고 폐점과 동시에 타 장소에 이동하고 있다.

현존하는 거리가게 관련 조례에는 거리가게의 운영시간이나 도로점용시간에 관해 아직 제한한 지역은 없다. 단, 관광특구의 이태원로의 경우는 15시~21시의 시간제 운영(폐점 시 철수), 물청소 실시, 자율정비 실시, 전기 및 전열기구, 소방설비 안전점검 실시 등으로 거리가게를 자체 운영, 관리 하고 있다. 이처럼 거리가게는 근본적으로 이동 가능한 구조로 영업하지 않을 경우 도로를 점용해서는 안 될 것이나 영업시간에만 거리가게를 도로에 점용시킬 경우 영업시간 외 보관 장소 확보 등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그러다 보니 현재의 이태원로의 경우 점용시간에만 배치하는 거리가게가 있는 반면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거리가게도 보인다. 이렇듯 이동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강동구 디자인노점, 신촌 연세로에서는 24시간 존치를 허가하고, 폐점 후에도 보행에 영향이 없고 도시미관에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리를 위해 영업자의 실명제를 도입하였다. 그에 따라 전매, 전대 관리, 조건 및 제한 사항에 대한 벌칙, 위생 및 화재 예방에 대한 교육 등 직접적 관리가 가능해 진다.

A. 양산로	B. 양산로	C. 노량진로	D. 동작대로	E. 영등로
묶어서 보관	방치	셔터	묶어서 보관	묶어서 보관
				
F. 연세로	G. 이태원로	H. 로데오거리	I. 홍제역	J. 가산디지털역
달아두기	달아두기	달아두기	묶어두기	달아두기
				

〈표 37〉 거리가게 개 폐점 현황

3.5 분석 종합

서울시 거리가게 현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해야 할 내용을 도출, 거리가게 디자인의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내용	현황 및 문제점	개선내용
환경 조건	도로 평탄도 유효 보도폭	손상되고 편평하지 않는 도로 보행 방해요소들의 과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평한 도로에서의 거리가게 배치 - 안전한 보행환경이 확보될 수 있는 보도폭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위치 - 규격 외 상품적재 금지
	이격거리	도시기반 시설물과의 이격거리가 지켜지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 시설 및 도시기반시설물 간 이격거리 - 가로시설물간 이격거리 - 도로 가각부간 이격거리
규격 및 배치	규격 및 형태	다양한 규격, 넓은 점유공간 시각적 개방을 방해하는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상품에 따른 적절한 규격 및 형태 - 도로현황에 따른 적절한 규격 및 형태 - 지역 특성에 따른 적절한 규격 및 형태
	보도 상 배치	도로 고정형태 연속적 긴 배치로 도시미관 저해 공간활용의 효율성이 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설물로서의 배치 기준 - 이동 가능한 구조 - 공간활용이 적절한 상품배치 기준
	색채 및 재질	가로시설물로서 원색 사용 시각적 개방을 방해하는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색채 기준 - 화재 예방 및 지속가능한 재질
운영 시스템	정보 및 진열	영업자 신뢰 부재 바닥 진열 등으로 비위생 원산지 및 가격정보 미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명제를 통한 투명한 관리 체계 - 진열방안 제안 - 운영 지침서 개발
	운영 유지	24시간 도로 존치 영업자 직접관리 부재 위생, 화재 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시설물로서의 기준 설정 - 실명제를 통한 투명한 관리 체계 - 운영 지침서 개발

〈표 38〉 현황분석 종합

제4장

서울 거리가게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제4장 서울 거리가게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4.1 서울 거리가게 유형분류

서울의 거리가게는 현장 현황분석을 통해 설치위치 및 장소, 보도 상의 영업시간, 판매품목에 따라 거리가게를 운영별, 위치별, 품목별 3가지로 분류된다. 그 외 입지형태만으로 본다면 보도 상의 배치형태에 따라 산재형(random), 군집형(cluster), 규칙형(uniform)으로 구분지어 설명할 수 있다²⁴⁾. 하지만 거리가게는 자연적으로 발생된 가운데 입지가 굳어진 형태로 배치현황에 따라서 그 유형을 분류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²⁵⁾의 노점 취급품목에 대한 분류기준을 활용하면서 일부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판매 허가 품목 기준을 적용하였다. 농산물 및 완전 포장된 식품류의 문제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취급품목에 대한 재 분류를 실시하여 운영시간, 설치 장소, 취급품목의 세 가지 대 분류를 전제로 정리하였다. 이에 각 유형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24) 박대형, “노점상의 입지패턴 분석: 수도권 신도시 역세권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25) 노점상의 실태와 대응방안: 서울시를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3

- 취급품목을 기준으로 한 노점상의 분류표

재화 판매 노점상				서비스노점상
현지 가공식품류	농수산물류	공산품류	기타	

유형	형태		내용
운영 기간별	임시형	임시 좌판형	- 땅에 펼치거나 임시 지지물에 의한 설치 판매형태 - 일시적 설치 후 철거
		임시 허가형	- 허가에 의한 기간제 이벤트 운영 - 천막 구조 내 임의적 판매대 설치 후 철거
	이동형	이동 좌판형	- 바퀴구조로서 인력에 의한 이동, 주차
		이동 차량형	- 차량개조를 통한 전통적인 차량 형식
	상주형	상주 좌판형	- 24시간 지속 점유 - 공간 확보 후 천막형태의 취사 및 취식구조를 갖춘 대형 판매대
		고정박스	- 24시간 지속 점유 - 고정시설물로 키오스크형태의 박스형 판매시설물
설치 장소별	전통시장인접/ 생활권 거리		- 생활권 인접으로 전통시장과 맞물리는 거리 - 특정시간과 목적에 의한 밀집도가 있음 - 평탄하지 않는 보도 및 적치물에 의한 좁은 보도폭
	쇼핑 및 관광거리		- 지속적인 유입인구가 많은 거리 - 거리의 특징적인 이미지 및 산업 배치 - 비교적 정비된 가로환경이나 여유 없는 유효보도폭
	특화거리		- 지차체 등이 지정한 거리로 충분한 유효보도폭 - 개발에 의한 보도 평탄화 및 디자인 개선이 이루어짐
취급 품목별	비가공품	비가공류	- 채소, 과일, 식물 등 가공이 없는 원자재 판매 - 육류 및 어패류는 식품위생법상 판매금지
		가공류	- 떡, 주스, 과자 등 이미 조리 포장된 음식류
	완제품	공산품류	- 의류, 잡화, 생필품 등의 생산품류
		서비스류	- 구두수선, 점 집 등 대인 서비스 제공
조리, 취식	포장마차	- 화기를 사용하여 음식 조리 및 원자재 가공 - 취식 가능한 공간 - 현 식품위생법에 관계한 법령검토가 필요함	

〈표 39〉 서울시 거리가게 유형

01 운영기간에 따른 유형

거리가게가 대로변에 배치되는 시간 및 기간을 기준으로 볼 때 임시형, 이동형, 상주형의 3가지 형태의 유형이 있다.

(1) 임시형

거리가게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땅에 펼치거나 임시 지지물 (책상 등)에 상품을 진열하여 판매하는 임시 좌판형과 이벤트 등 특정기간에만 간헐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텐트를 설치하여 판매하는 임시 텐트형이 있다. 이 두 유형의 판매형태는 일시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언제든지 철거가 가능하며 영업종료 시에는 공간을 점유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임시 텐트 중에서는 간헐적 운영으로 시작하여 단속이 없다는 이유로 철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상주형태로 입지가 굳어지는 경우가 있다.

(2) 이동형

‘마차’ 라고 불리는 거리가게 판매소 유형이다. 리어카 또는 바퀴 구조가 있는 형태로 영업이 끝나면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는 형태로 인력이나 차량을 개조하여 판매행위를 하는 이동 차량형 판매대도 이에 포함된다. 이동 좌판형의 경우는 판매가 가능한 장소가 정해져 있고, 주로 같은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동 차량형은 최근 늘어나는 푸드트럭의 원형으로 도로점용에 관한 등록과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불법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이 두 유형의 판매형태는 영업시간 중에만 도로를 점용하고 영업 종료 시에는 거리에서 사라지는 것이 원칙이나 주차장소 부족과 단속의 어려움에 따라 거리에 방치되는 경우가 있다.

(3) 상주형

24시간 거리의 공간을 점유하고있는 거리가게 유형이다. 거리점용 허가에 의해 운영되는 서울 가로판매대도 이 유형에 포함된다. 거리 일부 공간을 확보하여 취사, 취식을 위한 전기제품 등 기자재 배치뿐 아니라 판매재료, 판매상품 등의 적치하고, 노상에 앵커볼트를 설치하는 등 시간이 흐르면서 점포의 형태로 굳어진 경우가 많다. 포장마차의 경우에도 이동이 가능하도록 바퀴가 설치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동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거리가게 디자인개선 사업 및 가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다수의 거리가게가 지자체 허가에 따라 24시간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운영기간에 따른 유형

임시형	임시 좌판형		
	임시 텐트형		
이동형	이동 좌판형		
	이동 차량형		
상주형	상주 좌판형		
	고정 박스형		

〈표 40〉 운영기간에 따른 유형

02 설치위치 및 장소에 따른 유형

서울 대로변의 거리가게 밀집지역을 위치적 특성에 따라 3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

(1) 전통시장 인접 생활권 거리

거리가게가 밀집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장소이다. 생활권과 인접한 전통시장 상권과 맞물리는 거리로 평일 낮 시간대의 구매가 활발하다. 그리고 특정 시간에 유동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목적구매에 따른 시간대별 밀집도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보행로이다. 임시적으로 설치된 좌판형태의 거리가게가 많이 보이는 가운데 그로 인해 보도 폭이 좁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보행자의 보행안전에 대한 이슈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시에 주변상가와 거리가게와의 마찰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소이다. 자율질서선 유지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보도폭을 확보하는 정책을 활용하는 거리도 존재한다.

(2) 쇼핑/관광거리

대형 쇼핑센터 주변 및 지역적 특성상 유입인구가 많은 거리이다. 운영주체의 자체적 노력에 의해 비교적 정비가 이루어진 가로환경이나 유효보도폭 등의 제약 없이 거리가게가 형성되어 있다. 보행의 속도는 일반 거리에 비해 느린 경향이 있으며 업종으로는 먹거리 관련 거리가게가 많은 장소이다. 거리의 특징적 이미지 및 집객, 거리활성화를 위한 계획적 배치가 무엇보다 필요한 장소이다.

(3) 특화거리

거리가게 개선을 위해 지자체 등이 특화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충분한 유효보도폭 안에서 보도 평탄화작업과 함께 거리가게의 디자인개선 사업까지 실행한 거리이다. 지자체로부터 영업허가를 받고 통일되고 공통적인 디자인으로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관리체계의 부재로 인해 일부 특화거리의 경우는 거리가게 개선 전 단계로 돌아가거나 원래의 개선시의 취지를 잘 지키지 못하고 있다.

설치위치 및 장소에 따른 유형

<p>전통시장 인접 생활권 거리</p>		
<p>쇼핑 관광거리</p>		
<p>특화거리</p>		
		

〈표 41〉 설치위치 및 장소에 따른 유형

03 판매품목에 따른 유형

거리가게의 판매 품목에 대한 분류에 있어서는 주요 관점은 원재료(특히 식재료)에 대하여 조리 및 가공행위 여부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거리가게에서 원재료에 열을 가하여 판매하는 식품류는 원칙적으로 불법으로서 판매의 원인행위를 근거로 3가지 분류로 나누었다. ① 가공하지 않은 원제품(식품군 포함)을 판매하는 품목, ② 공산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품목, ③ 화기를 이용해 조리를 하고 사람들이 취식하는 품목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1) 비가공품

채소, 과일, 식물 등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원자재를 판매하는 형태이다. 전통시장 주변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품목으로 그 중 육류 및 어패류는 식품위생법상 판매가 금지된 상품이나 전통시장 주변 거리가게에서는 육류에서부터 생닭, 어물류를 판매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원재료의 지속적 물류수급과 창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2) 공산품 및 서비스

떡, 주스, 과자 등 이미 가공된 식품류가 포함된다. 그리고 의류, 잡화, 생필품 등의 공산품류, 구두수선이나 점집 등 대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류의 거리가게 유형이다. 해당 판매품목에 대한 거리가게 규모 축소가 충분히 검토 될 수 있는 대상으로, 품목에 대한 허가사항에 결격사유가 없는 유형이다.

(3) 조리 및 취식

포장마차로 불리는 거리가게로 영업시설 내에서 화기를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 가공하여 판매하는 유형이다. 2013년 거리가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 유형의 거리가게가 전체의 30% 이상으로 서울 시내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상 불법이며, 위생적 측면에서도 제한사항이 없어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그리고 화기를 사용함에도 화재에 대한 예방대책이 전무해 화재예방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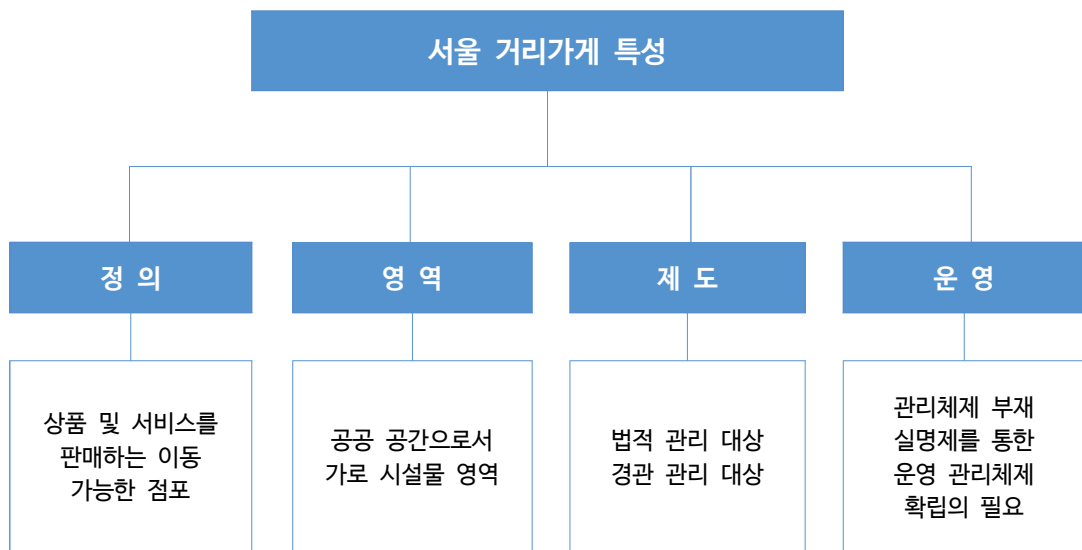
판매품목에 따른 유형

비가공품	비가공류		
	가공류		
생산품 및 서비스	공산품		
	서비스		
조리 및 취식	간식류		
	포장마차		

〈표 42〉 판매품목에 따른 유형

4.2 서울거리가게 특성 및 법규분석

서울의 거리가게 현황, 거리가게 관련 법령 및 조례,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거리가게의 특성을 정의, 영역, 제도, 운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43〉 서울 거리가게 특성

국내에서 시행 중인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분석, 현황분석, 관련법규 및 서울시 공공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 분석을 통해 서울의 거리가게 특성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거리가게 디자인의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01 거리가게 조례분석

거리가게의 정의, 영역, 제도, 운영측면에 있어 국내에서 시행중에 있는 거리가게 관련 조례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서울 거리가게의 특성	국내 거리가게 조례 검토
정의	상품 및 서비스 등을 판매하기위해 도로변에 일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로서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 운영되는 이동 가능한 점포	<p>〈서울시 중구〉 “거리가게”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도로에 가변적, 일시적으로 설치한 시설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p> <p>〈부천시〉 “노점판매대”란 노점잠정허용구역에 설치된 허가된 판매시설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판매시설물</p> <p>〈광명시〉, 〈울산중구〉 “노점”이란 거리에 설치된 노점을 말한다</p>
영역	대로변 가로시설물 영역에 24시간 존치되는 판매 시설물	〈서울 강동구〉 〈서울 중구〉 〈부천시〉 〈울산 중구〉 도로법, 지자체의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에 따른 별도의 거리가게 점용 영역에 관한 내용은 부재
제도	<p>〈도로법〉 대로변 존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법적대상</p> <p>〈도시경관, 공공디자인 심의〉 공공공간의 가로시설물로 경관 심의 대상</p> <p>〈식품위생법〉 거리가게 내 식품류 판매에 따른 별도 법적 대상</p>	<p>〈서울시 강동구〉 〈부천시〉 〈울산 중구〉 도로점용허가 1년</p> <p>〈서울시 중구〉 보행권을 침해하는 도로에 대해 금지구역을 지정함</p>
운영	직접관리에 의한 실명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체제 확립의 필요	<p>〈서울 강동구〉 연2회 이상 위생점검, 운영상태 점검</p> <p>〈고양시〉 가스, 전기 등의 안전점검, 안전사고 예방의 의무 준수, 카드단말기 설치, 부과금 납부 등</p> <p>〈부천시〉 노점매대 실태점검(년1회)-규격,색상,모양,훼손,도시미관저해 등</p> <p>〈울산 중구〉 보행환경, 가로환경</p>

〈표 44〉 거리가게 조례분석에 따른 서울거리가게 특성 도출

02 현황에 따른 서울거리가게 특성

(1) 환경조건에 따른 특성

1) 보도평탄도

보도평탄도의 공통적 특징으로 도로가 정비된 구역과 일반 생활권 거리와의 대비가 극명하였으며, 평균 10~15도가 기울어진 보도의 컨디션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전통시장과 인접한 거리, 생활권 거리의 경우 부분적으로 급격한 경사도를 가지고 있어 보행환경이 좋지 못하며, 부분적으로 손상된 부분이 많아 실질적인 보행 가능한 유효보도폭을 더욱 좁게 만들고 있다.

2) 유효보도폭

거리가게가 설치되어 있는 거리의 평균 유효보도폭은 2.0m이나 보도의 경사 손상 등의 문제로 이용가능한 보도의 폭은 1.0m~1.5m로 좁아지는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리가게의 보도 점유면적이 클 경우, 변화한 시간대 또는 주말에는 주변 상가의 상품, 거리가게의 상품들이 보도 위를 침범하고 또한 거리가게 이용들로 인해 보행가능한 보도폭은 평균 0.5m~1.0m로 측정되었다.

교통약자가 서로 마주하여 보행 할 수 있는 보도의 유효폭은 2.0m로 실제로 두 개의 휠체어 교행에 방해되지 않은 보도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거리가게의 대부분은 장소 이전 또는 규모의 축소를 검토해야할 부분이다.

3) 이격거리

보도상 교통시설물 및 도시기반 시설물, 가로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가운데 거리가게는 보도 상 영업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격거리에 관한 규제 및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행자는 물론, 교통약자, 운전자에게도 불편을 주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거리가게 설치 시 교통시설물 및 도시기반시설물간의 이격거리, 가로시설물간의 이격거리, 도로 가각부의 이격거리(움직이는 차량에서의 보행자에 대한 관찰이 가능한 범위)등의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적극적인 관리체계 도입이 시급하다.

환경조건	<p>도로현황 (마모도) (경사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상된 보행도로 및 오염을 방지 - 시각적으로 약10~15도 가량 대로변으로 기울어짐 - 청결 유지를 위한 배수처리 (거리가게에서 오염물 발생 금지) - 평탄한 도로환경 유지
	<p>유효 보도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가와 거리가게의 상품 적치, 간판 설치 등으로 좁아지는 보도폭 - 보행안전을 위한 유효보도폭 확보 필요, 점자블록의 적절한 위치설정 - 시설 및 상품을 보도에 쌓아두는 행위의 금지
	<p>교통시설및 도시기반 시설물간 이격거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은 불편함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교통시설물 및 도시기반 시설물간 명확한 이격거리 제시 필요
	<p>보도상 시설물 이격거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전반, 환풍기 주변 등에서의 영업행위로 인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 - 가로 시설물간 명확한 이격거리 제시 필요
	<p>도로 가각부 이격거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가각부에 설치된 거리가게로 인해 보행자, 운전자의 시야 방해 - 도로 가각부의 정의와 거리가게 배치기준 필요

〈표 45〉 환경조건에 따른 서울거리가게 특성

(2) 규격 및 배치 상 특성

1) 규격 및 형태

개선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지역의 대부분의 거리가게는 통일되지 않는 형태의 시설을 활용한 영업을 하고 있다. 거리가게 규격은 평균적으로 너비 3.0m, 폭2.5m 전 후이나 그 중 오랜 기간 동안 동일 장소에서 영업을 지속한 거리가게의 경우 계속적인 물품적치와 비닐포장 및 임의적 영역확장 등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거리가게 규격이 정해진 곳이나 자율질서선을 운영하는 곳 등에서도 영업 중에는 파라솔을 내어 놓거나, 상품을 바닥에 진열함으로써 점유공간을 조금씩 넓혀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 보도상 배치

가로시설 영역 내 가게형태로 점형으로 배치된 곳과 긴 천막 형태로 선형으로 배치하는 두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점형 거리가게 또한 연속적 배치, 24시간 연속적 선 형태를 유지하며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속된 천막형태의 거리가게의 경우 바닥에 앵커볼트를 설치된 보도의 경우 별도의 조치가 없는한 유효보도폭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거리가게 선형군집은 결국 마주 보는 상권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고, 자리에 대한 전대의 가능성 뿐 아니라 화재 등에 의한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대로변에 연속 배치되는 서울의 거리가게의 특성에 대한 상위 명기된 수치적 근거 부재에 따라, 가로폭 3m 기준으로 10개 이상의 거리가게가 연속적으로 경관을 가로막는 것에 대한 일부 규제가 따라야 할 것이다.

3) 색채 및 재질

시중에 판매되는 천막 또는 파라솔을 사용하는 관계로 원색을 사용하고 있고 명시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보색대비, 고대비의 원색 천막 및 외부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기존의 천막을 사용하는 경우는 개방감을 주기 위한 투명소재의 일부 활용, 원색면 사용면을 줄이는 방법 등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게 된다.

재질 또한 천막사용이 대부분으로 화재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천막의 경우 청소 등의 어려움으로 노후화되어 낡은 상태로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있다.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규격 및 배치</p>	
	<p>규격 및 형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가게 영업 중 외부공간에 상품 및 부속물 설치행위 등에 의해 점유면적이 확대되고 있음 - 외부공간 이용에 따른 점유면적 확대에 대한 규제가 필요 - 보행조건에 방해가 없고 판매상품 진열에도 적절한 규격 제안이 필요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보도상 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형태의 영업행위가 이루어짐 - 규격 및 형태에 대한 규제가 필요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색채 및 재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에 취약한 외부소재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외부소재의 색상 또한 대부분 원색이 사용됨 - 색상에 대한 규제와 화재예방 대책마련 필요

〈표 46〉 규격 및 배치 상 서울거리가게 특성

(3) 운영 시스템의 특성

1) 정보 및 진열

전통시장 및 생활권거리에는 임시적으로 좌판을 펼쳐놓고 물품을 판매하는 거리가게가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은 ‘임시’라는 이유에서 진열대 비치가 어려워 상품을 그대로 바닥에 깔고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러한 이유에서 보도 오염이 발생되고, 판매상품 또한 비위생적으로 보이게 된다. 또 전통시장 주변의 거리가게의 내부는 상품을 쌓아두는 장소로 이용하고, 상품을 영업장소 외부에 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보이고 있다. 이에, 거리환경을 위해서 도로변 좌판형 거리가게의 규제와 함께 상품을 위생적으로 진열이 가능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

취식이 가능한 포장마차의 경우 식품을 판매하는 장소이면서도 식품위생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점검 및 단속의 대상이 아니다. 이로 인해 거리가게 이용자는 좋지 못한 위생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원산지 표기 등 먹거리에 대한 간단한 정보또한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거리가게에 적합한 식품위생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고 허가를 받은 거리가게의 식품일 경우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2) 운영 및 유지

일부 지자체에서는 거리가게 개선사업 후 실명제를 통해 거리가게를 자체 관리를 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에 따른 명확한 운영관리 방침은 보이고 있지 않아 관리하는 공무원의 판단에 의해 규제해야 하는 부분과 완화해야 하는 부분을 정해 관리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지자체에 의해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곳의 경우 노점단체에 의해 거리가게 형편에 맞추어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판매자의 판단과 형편에 맞는 자율적인 운영으로 인해 가로경관을 저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유지운영과 자발적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지속적인 거리가게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법제화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운영시스템	폐점 관리 (이동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시간 이후에는 차고지 이동, 폐점 후 경관관리 - 차고지로 이동 시 보관시설 마련, 폐점 시의 경관관리 지침 필요
	폐점 관리 (24시간 존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자의 이용편리성에 맞춘 방법으로 관리 - 차고지로 이동하지 않고 도로에 존치되는 경우 관리체계 필요
	운영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자의 실명 및 간판, 자율질서선 지키기. 위생, 청결유지가 요구됨 - 실명제로 인해 영업자 자격표시, 자율적 참여 방안 마련
	정보 및 진열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공간은 활용하지 않은 채 기준선을 넘어서 상품진열 - 공간 활용을 위한 상품진열 방안, 상품의 정보전달 필요

〈표 47〉 운영시스템에 따른 서울거리가게 특성

03 관련법규 및 정책 내용 분석

2013년 12월 서울시는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시의원 1명, 거리가게단체 대표 3명, 상인 및 사회적 기업가 3명, 디자인전문가 2명, 건축 및 도시계획전문가 3명, 시민단체 3명, 도시안전기획관, 민생경제자문관)을 구성하여 2년간 논의된 내용 중 디자인 관련 사항들을 상위법 및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환경조건(보도평탄도, 이격거리, 유효 보도폭), 규격 및 배치(규모 및 형태, 보도 상 배치, 색채 및 재질), 운영(정보 및 진열, 운영관리)을 분석하였다.

(1) 환경적 조건에 관한 상위법 내용분석

상위법 및 정책	내 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2014.1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함이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 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한다. - 보도블록은 이음새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바닥면을 평탄하게 시공한다. - 최소 2.0m이상의 보행안전통로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또는 접근로의 유효폭은 2.0m이상으로 하여야한다.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2015.0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부적정 시설물로서 - 보도폭이 4.0m 이하인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 - 지하철역 또는 지하도입구로부터 5.0m이내에 위치하여 시민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주변에 위치하여 버스,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진입차량 확인을 방해하는 시설물 - 교차로 등에 위치하여 차량운전자의 교통흐름 파악을 현저히 방해하는 시설물
보행우선구역 표준설계 매뉴얼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 흐름을 단절 혹은 우회시키거나 유효 보도폭을 줄여 보행자의 이동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장애물은 제거한다. - 차량으로부터 안전성 확보(차량으로 부터의 시야확보)한다.
서울시 공공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폭 1.5m~4.0m폭 내 가로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 (가로판대대는 보도폭이 4m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에도 실질적인 보행을 위한 보도폭을 2.0m이상 확보한다. 단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5m이상 가능하다. - 차도에 인접한 버스정류장 설치 구역 내 교통관련 시설 외 시설물의 설치를 금지한다. - 교통표지판 지주반경 5m이내 식재를 금지한다. - 점자블록 주변 돌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다. (점자블록 중 유도형 선형블록 설치 시 단위블록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성인2명이 지나갈 수 있는 폭 내에는 설치를 금지한다)
상생정책자문단 협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유효보도폭은 2.5m이상 확보한다.

〈표 48〉 환경적 조건에 따른 상위법 내용

(2) 규격 및 배치에 관한 상위법 내용분석

상위법 및 정책	내 용
<p>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2015.07.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판매대간 거리가 50미터 이내 가로판매대는 과밀시설물. - 구두수선대간 거리가 50미터 이내 구두수선대는 과밀시설물. - 가로판매대(2.65×1.5×2.5내외, 2.4~4.0㎡내외) - 구두수선대(2.8×1.5×2.0내외, 2.4~4.2㎡내외)
<p>상생정책자문단 협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가게 규격으로 최대 3.0m×2.5m 점유공간으로 한다.
<p>보행자 중심 가로경관 가이드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시설물은 장식 보다는 기능 위주의 단순하고 간결한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고 지역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권장 - 가판대는 이동 가능한 독립된 부스형식을 기본으로, 판매를 위한 부속물이 외부에 돌출하지 않도록 한다.
<p>서울시 공공공간 디자인가이드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란하고 과장된 형태는 지양하고 차분하며 안정된 가로 환경을 조성한다.(과장된 패턴, 자극적인 색채는 지양, 주변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고채도, 고명도 시설물 설치 지양, 장식보다 기능을 우선시 하는 디자인 지양) - 시설물 설치구역에 통합적으로 설치하여 시설물 도로 점유율을 최소화 한다. - 통행 구역 내 고정시설물의 설치를 금지한다. - 주변환경에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한다. - 지나치게 많은 재료의 혼용은 금지한다. -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저채도 색을 주조색으로 하며, 원색계열의 포인트 색상을 최소화한다. - 조명 도입할 경우 지나치게 자극적인 색채와 점멸을 금지한다. - 재료 자체의 고유 색채 활용으로 자연스러운 경관을 조성한다. - 인접 건축물, 녹지 등 주변환경과 조화된 색체계획을 수립한다.
<p>서울시 공공 시설물 디자인 가이드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식적인 형태요소를 최소화, 기능을 우선으로 한 디자인 - 크기와 형태를 최적화하고 연계 가능한 시설물간 통합 - 시각, 심리적, 개방감 확보가 가능하도록 도시경관 연속성 확대 - 시설물 점유 면적을 최소화하여 보행공간 확대 - 무계획적 색채사용은 지양하고 재료 자체의 색 활용 - 친환경성 및 내구성을 고려한 재료사용으로 지속 가능한 디자인 - 안전성과 인체공학을 고려한 디자인

(표 49) 규격 및 배치에 따른 상위법 내용

(3) 운영에 관한 상위법 내용분석

상위법	내 용
<p>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2015.07.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된 점용장소 또는 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 및 그 밖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 - 시설물 외벽에 상품 등을 과다 진열한 후 시설물 외부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 -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금지. 다만,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보온을 요하는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 건포(乾脯)류 및 김밥의 판매행위에 한정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 판매를 허용 -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에 게시하여 누구나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시설물 외부를 수시로 세척하고 시설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p>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2015.06.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p>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06.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거래 상대방이나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p>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014.01.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재료, 제품 등을 제조, 가공, 수입, 판매, 소비하거나, 건설고아를 하는 자는 폐기물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 유해성을 줄여야 한다. - 발생된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표 50〉 운영에 관한 상위법 내용

4.3 디자인 기본계획

도시가 발전됨에 따라 활기 있는 상업거리에 거리가게가 들어서기 시작했고, 이제 거리가게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또 하나의 경제활동 공간이 되었다. 하지만 대로변에 24시간 존치하는 거리가게는 열악한 보도 환경조건 안에서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보행에 불편함을 주는 동시에 도시 경관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서울의 가로환경 안에서 혼란하고 무질서한 공공공간의 기능과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거리가게를 가로 시설물로 적용하고 그에 따른 서울 거리가게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 서울시 공공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에 부합되는 디자인
- 서울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에 부합되는 디자인
- 서울시 도시경관과 조화되면서 개방감 있는 디자인
- 지속가능한 도시 공간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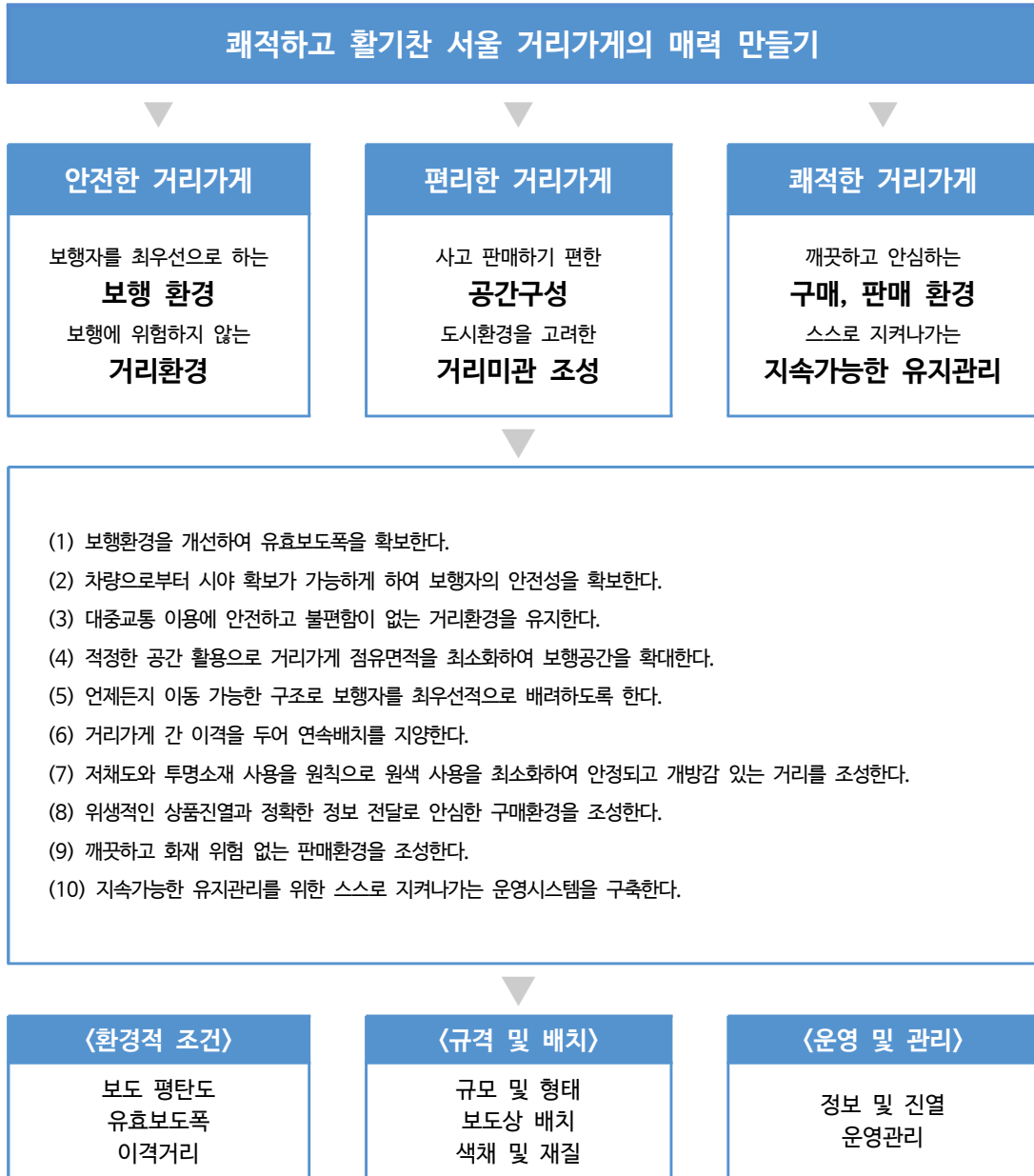


쾌적하고 활기찬 서울 거리가게의 매력 만들기

도로법55조7항에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중에서 노점, 상품진열대가 포함됨에 따라, 노점(거리가게) 또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행 안전성, 편의성, 쾌적성 등 개선이 필요하다. WHO²⁶⁾에서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 환경요소로 안전성(Safety), 보건성(Health), 편의성(Convenience), 쾌적성(Amenity)을 구성했다. 이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기본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의 거리가게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조화로운 도시환경 및 문화가 서로 소통하는 디자인도시를 계획한다.

26) Residential environment index system and evaluation model established by subjective and objective methods, GE Jian, HOKAO Kazunori, Zhejiang University, 2004

서울 거리가게의 비전인 쾌적하고 “활기찬 서울 거리가게의 매력을 만들기” 를 위해 3대 비전, 6대 추진전략을 제시, 10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추진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표 51〉 서울 거리가게 디자인 기본계획

01 안전한 거리가게

보행자 중심의 공공공간으로서 교통약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심리적, 물리적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현황 및 문제점

- 거리가게가 개선된 지역과 타지역간의 대비가 극명하다.
- 대다수의 거리가게가 설치되어 있는 보도는 편평하지 않고 손상되어 있다.
- 취사가 가능한 거리가게 주변 보도는 오염된 상태로 존치되어 있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유도블록은 설치되어 있으나 보도 상의 설치물 및 거리가게의 상품 등으로 인해 이용을 침범 받는다.
- 보행로 관리 및 유지상태의 개선이 시급한 상태이다.
- 거리가게로 인해 유효 보도폭이 좁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 개선사업 시행 전, 불필요한 거리시설물의 적극적 제거가 결실하다.
- 거리가게의 자율질서선이 대부분 지켜지고 있지 않다.
- 교통시설물과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거리가게가 설치되어 있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 도로 가각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거리가게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 움직임에 대한 인지성이 떨어지고 있다.
- 가로시설물과의 이격거리가 무시되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개선방안

- 거리의 전체 기초 품질 향상을 위해 거리가게를 가로시설물로 정의하고 그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다.
-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이미지를 통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 이동보행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구역으로 보행자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 보행안전을 위해 최소 2m이상의 너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가로시설물 및 교통시설물간의 이격거리와 가각부의 이격거리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다.

02 편리한 거리가게

현재 서울시 특성에 맞는 융통성 있고 형편이나 조건이 편한 거리가게 조성으로 도시의 바탕인 공공공간의 표면을 간결하고 단순화하여 질서 있는 도시를 조성한다.

현황 및 문제점

- 적절한 판매 공간 활용을 고려하지 않는 판매대 규격이다.
- 보도 상 판매물 및 적재물이 그대로 존치되어 거리가게의 점용면적이 넓어지고 있다.
- 거리가게의 무분별한 규격 확대로 보도폭이 좁아지고 있다.
- 거리가게가 밀집형으로 모여 있어 대형 구조물 형태로 보여 지고 있다.
-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배치로 도시환경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 불투명 소재 활용으로 도시환경을 답답하게 하고 있다.
- 천막 등의 재질 사용으로 화재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 원색이 과도하게 사용되어 도시미관이 불편하다.



개선방안

- 판매품목 및 판매환경에 맞는 적절한 판매대규격 제안이 필요하다.
 - 대로변의 가로형태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방향이 필요하다.
 - 보행에 불편이 있을 시 언제나 이동 가능한 디자인방향이 필요하다.
 - 폐점 시 거리환경을 고려하여 완전히 닫히는 완결된 구조의 디자인방향이 필요하다.
 - 대로변 가로시설물 영역의 거리가게는 가로시설물로 정의, 가로경관을 위해서 디자인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따라서 대로변 가로시설물 영역에 존치되는 거리가게만의 한정적 관리가 불가피하다.
 - 도시의 가로경관의 침해가 적도록 대로변의 연속적 배치는 지양해야 한다.
 - 색상 등의 관리로 도시이미지 정온화가 필요하다.
 - 투명소재 활용을 지향하여 거리가게로 유발되는 도시 가로경관의 답답함을 완화하여야 한다.
 - 지속가능한 재질 사용과, 화재예방이 되어야 한다.
-

03 쾌적한 거리가게

깨끗하고 안심한 구매활동이 가능한 거리가게 조성으로 거리가게 판매자의 자발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한다.

현황 및 문제점

- 전통시장 및 생활권주변거리에는 아직 좌판형태의 거리가게가 존치되고 있다.
- 환경적으로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 보도 바닥에 상품을 진열하여 판매하고 있는 곳이 있다.
- 운영자의 정확한 정보가 결여되어 있다.
- 판매상품의 정확한 정보가 결여되어 있다.
- 거리의 특성, 판매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거리가게 운영현황이 다양하다.
- 상품적치, 진열, 취식장소확보로 인해 점용면적이 확장되고 있다.
- 거리가게 주변이 청결하지 못한 상태이다.
- 천막을 사용하고 관리가 잘 되지 않아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
- 화재예방, 방법, 위생관리가 결여된 상태이다.



개선방안

- 좌판형태의 거리가게는 가로시설물 영역에 존치하지 않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 환경정비를 위해서 보도 상의 물건 적치와 보도 상의 바닥판매를 금지하여야 한다.
 - 임의적 확장을 금지하여야 한다.
 - 거리가게 폐점 시 자율 질서선을 준수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 실명제와 명확한 상품의 정보기입 등의 정보제공 수단이 필요하다.
 - 실명제를 통한 지자체의 직접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 대로변 거리에 거리가게 배치 시 반드시 지켜야 할 항목 도출이 필요하다.
 - 상위법 및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에서의 금지규정은 반드시 지키도록 한다.
-

4.4 가이드라인 목표

서울 거리가게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현황분석과 기본계획인 3대 비전(안전한 거리가게, 편리한 거리가게, 쾌적한 거리가게)과 6대전략을 바탕으로 공공공간의 개선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10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



[거리가게 디자인 가이드라인 10원칙]

[거리가게 디자인 가이드라인 10원칙]

1 유효보도폭을 확보하여 보행환경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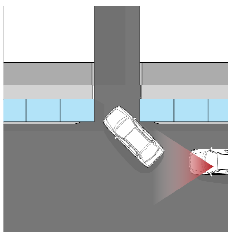
현 황



-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걸어 다니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한다.
- 교통 약자의 이용에도 지장이 없도록 안전한 보도환경을 조성한다.
- 경사도가 없고 평편한 보도에 거리가게를 설치한다.
- 보도 상 상품진열 제거로 유효보도폭을 충분히 확보한다.
- 깨끗한 보도환경을 조성한다.

2 안전성확보를 위해 도로의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확보

현 황



- 도로에서 골목 또는 코너 진입 시 차량에서부터 보행자를 판단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한다.
- 도시기반 시설물 구간 내 거리가게 설치를 제한하여 차량으로 부터의 인지성을 확보한다.
- 가로시설물 구간 내 거리가게 설치 시 제한을 두어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3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거리조성

현 황



- 교통시설물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택시 승강장) 구역 내 거리가게 설치를 제한하여 교통이용에 안전하고, 불편함 없는 거리환경을 조성한다.
- 교통이용에 불편이 있을 시 거리가게는 즉시 이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 교통이용에 따른 안내 등이 거리가게로 인해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 교통 약자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보도상 거리가게 점유면적 최소화

현 황



- 판매에 적절하고 공간 활용이 가능한 거리가게 규격으로 점유면적을 최소화 한다.
- 거리가게 내 필요물품이 최대한 수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도록 한다.
- 점유면적을 초과하는 임의적 확장(추가 가판대, 상품적재, 파라솔, 비닐막, 그늘막 등)은 금지한다.
- 보행이 가능한 유효보도폭이 확보가 된 후 거리가게를 설치한다.

5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기 위해 언제든지 이동가능 한 구조로 구성

현 황



- 보행자가 불편함이 있을 시 즉시 이동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 보도 바닥에 앵커볼트 설치는 금지한다.
- 가능한 한 거리가게는 영업 중에만 존치되어야 한다.
- 거리가게 보관 장소 확보 시에는 폐점 후 이동하여 보관, 24시간 존치는 지양한다.
- 폐점 후 거리가게 보관 장소가 없을 시에는 언제든지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민원 발생 시에는 즉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거리가게 간 이격거리를 두어 연속배치 지양

현 황



- 거리가게의 연속적 배치로 인한 도시 가림막화를 금지한다.
- 시각적, 심리적, 개방감 확보가 가능하여야 한다.
- 거리가게로 인해 건너편 상점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거리가게 간 이격을 두어 휴게 및 쓰레기통 등 거리가게 운영을 위한 공동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7 저채도, 투명소재 사용, 원색사용 최소화 안정되고 개방감있는 거리 조성

현 황



- 가로시설물은 장식 보다는 기능 위주의 단순하고 간결한 디자인을 적용한다.
- 지역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권장한다.
- 가판대는 이동 가능한 독립된 부스형식을 기본으로 한다.
- 현란하고 과장된 형태 및 색채, 자극적 색채, 광택소재는 지양한다.
- 주변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고채도, 고명도 시설물을 지양한다.
- 투명소재를 활용하여 개방감을 확보한다.

8 위생적인 상품진열과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한 안심할 수 있는 구매환경 조성

현 황



- 위생적이면서 인체공학을 고려한 상품진열을 지양한다.
- 바닥의 상품진열은 지양한다.
- 원산지 표기, 가격표시 등 상품정보를 기입한다.
- 판매자 정보를 게시한다.

9 깨끗하고 화재 위험 없는 판매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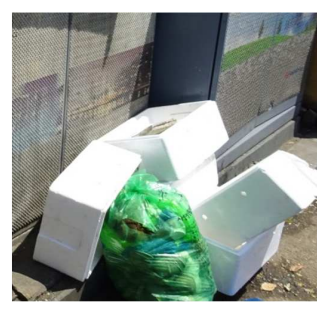
현 황



- 거리가게 외부를 수시로 세척하고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한다.
- 화재예방을 위해 불연 소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 불을 사용하는 거리가게의 경우, 화재 방지 예방을 위한 도구를 비치한다.
- 폐점 후 거리가게 물품이 그대로 방치 및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0 지속 가능한 운영시스템 구축

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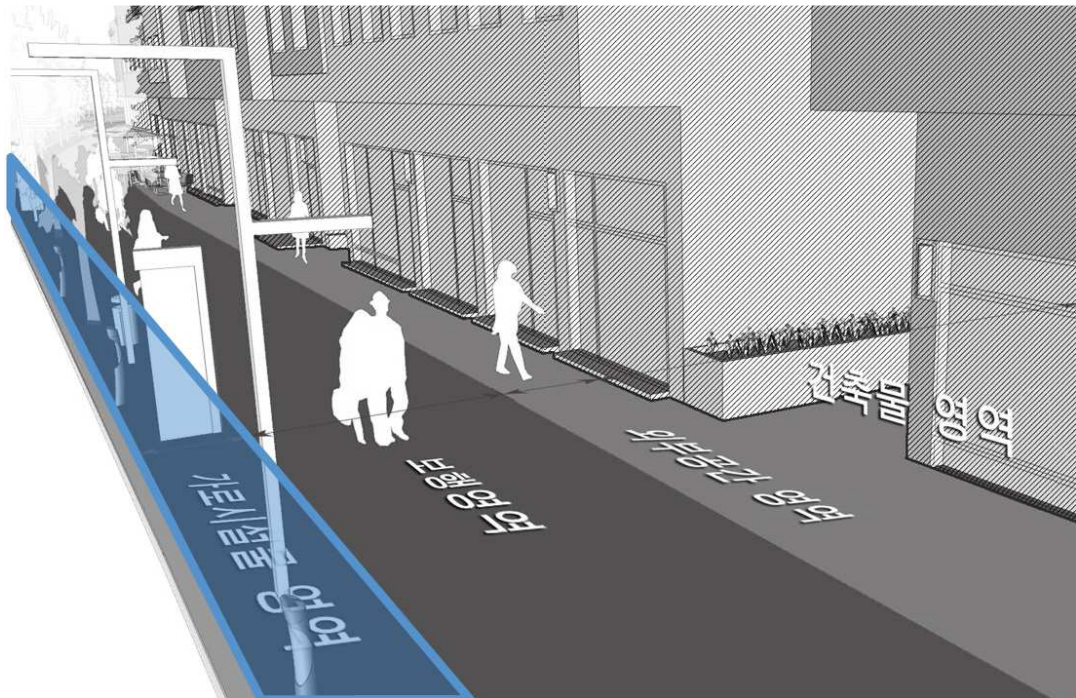
- 보도 상의 상품 및 폐기물 존치는 금지한다.
- 폐점 시 도시경관 및 방법을 위해 전면을 닫을 수 있도록 한다.
- 분리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 위생을 위한 교육 및 소독 등을 실시한다.
- 단정한 복장으로 고객을 맞이하도록 한다.

4.5 세부가이드라인

본 가이드라인의 세부지침은 24시간 대로변에 존치되고 있는 거리가게를 대상으로 한다. 본 장에서 제시하는 세부지침은 서울시 거리가게 개선사업 실행 및 유지관리에 있어 적용되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 본 내용에 명시된 규정은 제반여건 및 상황에 합리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01 환경적 조건

보도환경은 도시공간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보행안전 및 편의를 증진에 관한 법률의 가장 큰 목적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함이다. 이에 거리가게 배치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보도 평탄도, 유효보도폭, 시설물 및 도로 이격거리로 안전한 보도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보도 환경적 조건이다.



〈그림 28〉 거리가게 대상 영역

(1) 보도경사도 및 마모도

현황 및 문제점

- 평균적으로 보도가 약10~15도 경사가 있음.
- 평탄성 유지가 미흡함.
- 포장마차 인접된 보도의 경우 음식물 등으로 인해 오염되어 있음.
- 불규칙적 표면으로 안전보행에 위협받음.
- 보도 유지관리 불량으로 도시미관을 저하시킴.

관계 법령 및 가이드라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b 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 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 마감 · 보도블록은 이음새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바닥면을 평탄 시공. · 보도의 기울기는18분의1이하 유지, 지형상 불가피할 경우는 12분의1. · 보도 등의 좌우 기울기는 25분의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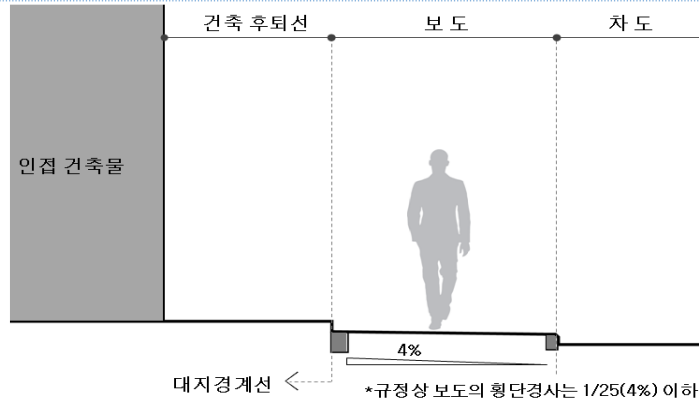
현황 사례



<표 52> 보도경사도 및 마모도 현황 및 법령 사례

디자인 가이드라인

보도상 배치원칙



평탄한 보도 상 배치

- 경사도가 없는 평탄한 보도에 설치한다. (경사도 4% 이하인 장소에 설치)

경사진 보도 위 배치

- 경사진 보도에 설치 경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고, 미끄럼방지 안전장치를 의무화한다.

물을 사용할 경우 하수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 보도의 오염을 최소화하기위해 취식 장소의 F.D 설치를 의무화한다. (하수관로와 연결하여 내부의 이물질 배출)
- F.D 설치가 어려울 경우, 영업장소의 오수가 보도에 흘러나오지 않도록 호스 등을 직접 하수관로와 연결하도록 한다.
- 배수구설치가 불가할 경우, 거리가게 내에서 물을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재료 및 그릇을 씻는 행위, 국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
- 부득이 오수가 배출될 경우 따로 모아 영업종료 후 지정된 하수관을 이용하도록 한다.
- 하수관에 이물질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거름망을 설치하도록 한다.
- 거리가게 주변 우수관에 거름망을 설치, 취식고객이 만들어낸 이물질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거리가게 주변의 우수관, 하수관은 늘 청결하도록 한다.

보도와 이격

- 바닥과 이격을 두어 오수 및 기타 이물질이 거리가게 내부로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 취식장소에는 별도의 바닥재를 설치한다.

〈표 53〉 보도경사도 및 마모도에 관한 가이드라인

(2) 유효보도폭

현황 및 문제점

- 거리가게 설치 후 평균 유효보도폭은 2m
- 보도경사 및 마모상황에 따라 실질적인 보행 가능한 유효보도폭은 1m~1.5m로 좁아짐
- 변화한 시간대 경우, 주변상가의 상품적치 및 상품구매 고객, 취사고객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보행이 가능한 보도폭은 0.5~1.0m로 좁아짐
- 건너편 상점의 대지경계선을 넘어서 입구까지 보도로 활용되고 있음
- 점자블록의 유효보도폭이 지켜지지 않음
- 거리가게 캐노피가 보도로 1.0m이상 침범

관계 법령 및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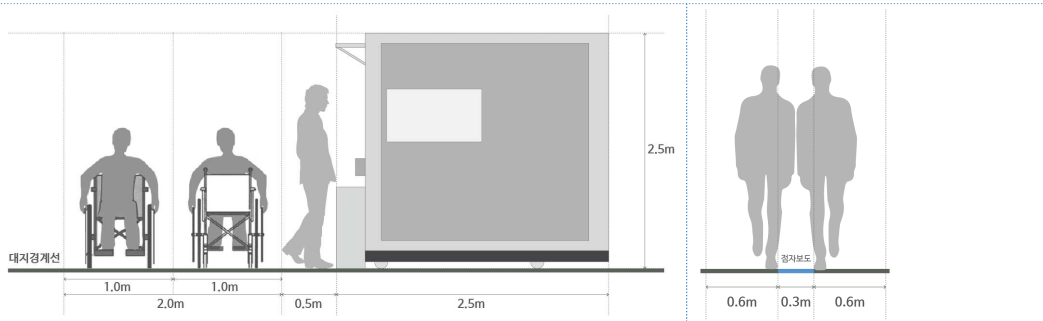
법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최소2.0m이상 보행안전통로의 유효폭을 확보하여야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보도 또는 접근로의 유효폭은 2m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조례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 보도폭 4m이하 - 위치 부적정 시설물(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규격 폭1.5m) 최종 유효보도폭 2.5m
	서울시 중구	· 거리가게-도로시설물 정의 유효보도폭 최소 2.5m이상
	일본 후쿠오카 시	· 유효보도폭 최소2m 확보, 시각장애인 블록에서 0.6m이내 설치 불가능
가이드라인	뉴욕시 가이드라인	· 보도폭이 3.7m이상의 거리에 설치가능(가로폭0.9m, 판매공간 0.4m-실 보도폭:2.4m) 상점입구와 거리는 사선으로 6.1m이상
	서울시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 유효보도폭 내 보행을 방해하는 가로시설물 설치를 금지 (보도폭1.5m~ 4.0m폭 내 가로시설물 설치 금지) · 점자블록 중심선 기준으로 성인2명 지나갈 수 있는 폭 내 설치물 금지.
상생정책자문단 협의		· 최소 유효보도폭은 2.5m확보

현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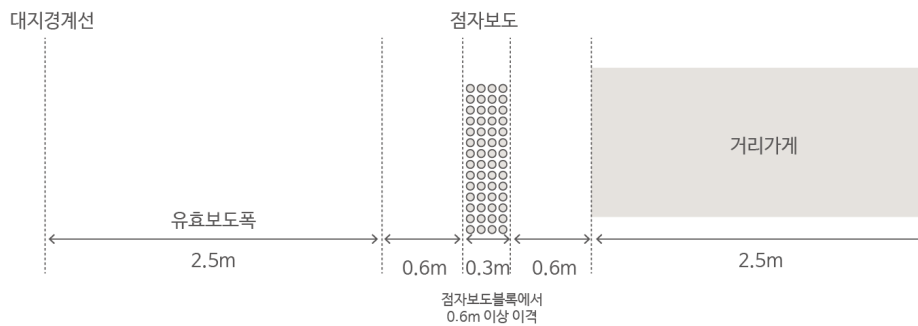
(표 54) 유효보도폭 현황

산출근거



- 교통약자가 보행할 수 있는 유효보도폭 2.0m를 확보, 상품구매 및 취사 가능 폭을 0.5m로 산정. 거리가게 설치 후 보행 가능한 최소 유효보도폭은 2.5m로 설정하도록 한다.
- 유효보도폭 기준은 앞 상가 대지경계선에서 거리가게 외경 선까지 거리이다.

디자인 가이드라인



유효보도폭 확보

- 거리가게 설치 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2.5m이상 확보한다.
(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 2m이상 공간을 확보하고, 그 이하인 경우 설치를 지양)
- 유도형 점자블록 설치 보도의 경우 거리가게에서 최소0.6m이상의 공간을 확보한다.
- 유효보도폭 확보를 위해 최대 돌출부(어닝 끝선, 또는 바닥 끝선)로 부터 대지경계선까지 거리를 2.5m 이상 둔다.
- 거리가게 규격 외 임의적 확장을 금지하고 자율 질서선을 준수한다
(임의적 확장: 파라솔 설치, 상품진열대 설치, 상품 · 물품박스 · 의자 · 입간판 비치, 햇빛 가림막 설치 등)
- 동절기 일시적 바람 가림막 설치 시, 두꺼운 투명소재를 활용하되 가림막 끝 선이 거리가게 끝 선 밖으로 확장되지 않는다. 가림막이 거리가게 보다 클 경우, 규격 외 임의적 확장으로 간주한다.
- 가림막 설치 시 바닥에서 최소 0.3m이상 이격을 두어 보행 시 위험하지 않도록 한다.
- 가림막이 바닥까지 설치될 경우 바닥에서 0.3m 구간은 시인성이 높은 색상 및 소재를 활용하여 보행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표 55〉 유효보도폭 산출기준 및 가이드라인

(3) 이격거리

현황 및 문제점

- 교통시설물과의 기본적인 안전거리 관련 규정 부재에 따라 시민의 불편함과 동시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가로시설물 환경저해 및 배전반 및 환풍기 주변에서의 영업행위로 안전성 저해가 우려됨
- 도로 가각부에 방치된 거리가게로 인해 보행 및 차량으로부터 안전에 노출됨

관계 법령 및 가이드라인

조례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부적정 시설물 · 지하철역, 지하도 입구로부터 5m 이내에 위치한 시설물 ·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주변에 위치하여 진입차량 확인을 방해하는 시설물 · 교차로 등에 위치, 차량운전자의 교통흐름 파악을 현저히 방해하는 시설물 · 시민불편으로 이점이 필요한 시설물
	서울시 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권 침해 도로에 금지구역 지정 · 버스정류장 양끝 3m 이내 지점 · 지하철 출구로부터 5m 이내 지점 · 횡단보도로부터 3m 이내 지점 · 지하도, 육교입구로부터 3m 이내 지점
가이드라인	서울시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도폭 4m이하 -위치 부적정 시설물(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규격 폭1.5m) 최종 유효보도폭 2.5m
	뉴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가게 관련 · 횡단보도에서는 3m거리 · 건너편 상점입구와의 거리는 사선으로 6.1m이격 * 공공시설물 관련 · 연석 및 펜스와의 이격거리 0.457m · 맨홀 이격거리 0.6m · 수목보호대와의 이격거리 1.5m · 소화전, 분전반, 개폐기와 이격거리 3m · 보행표지판, 정보시설물 시거리 확보 2m

현황 사례



〈표 56〉 이격거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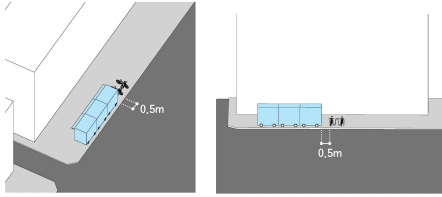
디자인 가이드라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 확보 원칙

<p>최소 이격거리</p>	<p>5.0m : 지하철 출입구, 지하철 노출 승강기,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횡단보도, 육교</p> <p>2.0m : 배전반, 지하철 환풍구, 도로 가각부(코너부분)</p> <p>1.0m : 가로수화분대, 수목보호대, 신호등주, 맨홀, 가로등주</p> <p>0.5m : 자전거보관대, 공중전화 부스, 블라드, 보호펜스, 방음벽</p>	
		<p>① 교통시설물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출입구, 지상노출 승강기, 버스정류장, 택시 승강장과의 이격은 최소 5m이상 이격을 둔다.
		<p>② 녹지시설물, 보호시설물, 조명시설물, 관리시설물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수화분대, 가로수 보호덮개, 신호등주, 맨홀과, 가로등주와의 이격은 최소 1m이상 이격을 둔다.
		<p>③ 관리시설물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전반, 지하철 환풍구와는 최소 2m이상 이격을 둔다.
		<p>④ 교통시설물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횡단보도, 육교와는 최소 5m이상의 이격을 둔다.
		<p>⑤ 도로 가각부</p> <p>가각부 (골목과 수직으로 만나는 코너부분, 도로 코너부분 등)와는 최소 2m이상의 이격거리를 둔다.</p>

〈표 57〉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⑥ 서비스시설물, 보호시설물 중
자전거 보관대, 공중전화 부스, 블라드, 보호펜스, 방음벽과는
최소 0.5m이상 이격을 둔다.



⑦ 이격거리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가게에서 돌출된
판매대 및 가림막, 상품, 파라솔 등의 임의설치물은 금지한다.

- 디자인서울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분류에서 보행가로 공간에 설치되는 시설물을 기준으로 이격거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대분류	소분류	여부	이격거리
휴게시설물	벤치	×	
위생시설물	휴지통	×	
서비스시설물	자전거 보관대	○	0.5m
	공중전화 부스	○	0.5m
	우체통	×	
녹지시설물	가로 화분대	○	1.0m
	가로수 보호덮개	○	1.0m
보호 시설물	블라드	○	0.5m
	보호 펜스	○	0.5m
	방음벽	○	0.5m
	신호등주	○	1.0m
조명 시설물	가로등주	○	1.0m
	지상 기기	○	2.0m
관리시설물	교통신호 제어기	○	2.0m
	맨홀	○	1.0m
	트랜치	○	1.0m
통행시설물	지하철 환기구	○	2.0m
	버스 정류장	○	5.0m
	택시 정류장	○	5.0m
	지하철 출입구	○	5.0m
	지상노출 승강기	○	5.0m
	점자블록	○	0.6m
	보차도 경계석	○	0.5m
육교	○	5.0m	

〈표 58〉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02 규격 및 배치

서울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10가지 기본원칙 중 거리가게에 적용되어야 할 사항- ①장식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기능을 우선시한 디자인한다, ②크기와 형태를 최적화하고 연계 가능한 시설물들을 통합한다. ③시각적, 심리적 개방감 확보가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여 도시경관의 연속성을 높인다, ④무계획적 색채사용을 지양하고 재료 자체의 색을 활용한다 -을 바탕으로 거리가게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현황 및 문제점

(1) 규모 및 형태

- 국내 거리가게 조례에 있어 규격 및 형태와 관련된 명확한 제시가 없다.
- 다양한 형태와 규격을 가지고 있다.
- 영업 중 판매 상품 적치 등 임의적 영역확장으로 점유면적이 확대되고 있다.
- 판매방법 및 품목에 적합한 거리가게 규격인지 재확인 필요하다.

관계 법령 및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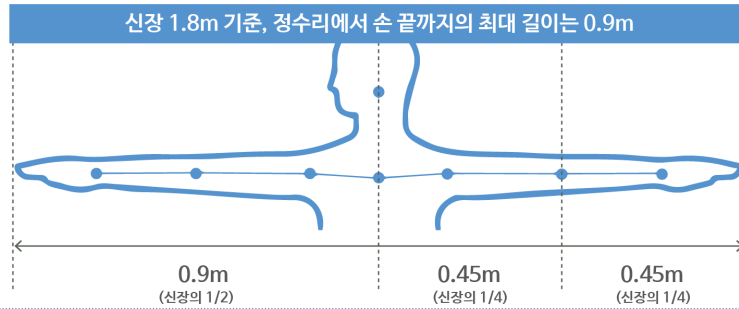
조례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 가로판매대(2.65×1.5×2.5m내외, 2.4~4.0m내외), 구두수선대(2.8×1.5×2.0m내외, 2.4~4.2m내외)
	일본 후쿠오카시	· 규격: 가로3m, 폭2.5m 이내 · 구조: 이동 가능한 구조 · 영업 중 물품비치는 5m, 3m 이내 규격 외 테이블 및 도구 배치 불가
가이드라인	뉴욕	· 노점판매대 규격 가로2.4m, 폭0.9m, 높이1.5m 판매자 규격 0.4m (총 점유공간 가로2.4m, 폭1.3m, 높이1.5m)
	서울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시설물 점유면적을 최소화하여 보행공간을 확대 안전성과 인체공학을 고려한 디자인
상생정책자문단 협의		· 최대 가로 너비 3m, 세로 폭 2.5m

현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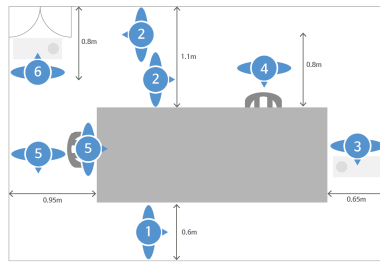


(표 59) 규격 및 형태 현황 법령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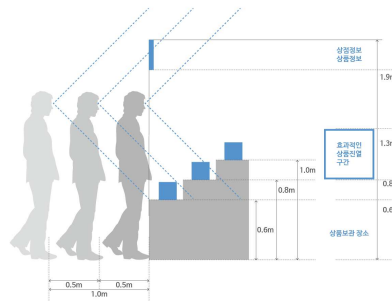
산출근거



- 인체공학을 기반으로 거리가게 내 판매 공간을 산출하였다.
- 판매자 신장을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제시한 2013년 성인남자(19세 이상) 상위10% 신장 1.79m 상위5% 신장 1.809m 하여 판매자 신장을 1.8m 정하였다.
- 1.8m 신체 기준을 바탕으로 공간과의 상호작용, 동선, 판매방법 등을 고려한 판매 공간을 산출하였다.



- ① 사람이 지나갈 경우: 0.6m
(옆으로 지나갈 경우:0.45m~)
- ② 사람과 사람이 스칠 경우: 1.1m~
- ③ 물건을 든 사람이 지날 경우: 0.65m~
- ④ 의자를 빼서 앉을 경우: 0.8m~
- ⑤ 앉은 사람 뒤를 지날 경우 : 0.95m~
- ⑥ 문에서 물건을 꺼낼 경우: 0.8m~



- 시선은 좌에서 우
- 시각의 범위는 좌우120도, 더 잘 보이는 각도의 범위는 25도
- 바닥에서 높이 0.8~1.3m 높이는 '골드존'으로 가장 손이 쉽게 닿는 곳
- 멀리서 잘 보이는 높은 위치에는 상품정보 또는 상점정보 게시

〈표 60〉 규격 및 형태 산출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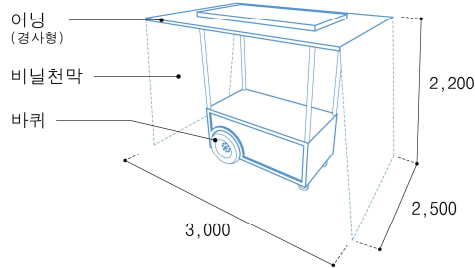
산출근거(기물)

판매물품에 따른 판매공간 규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진열도구 규격을 기본으로 하여 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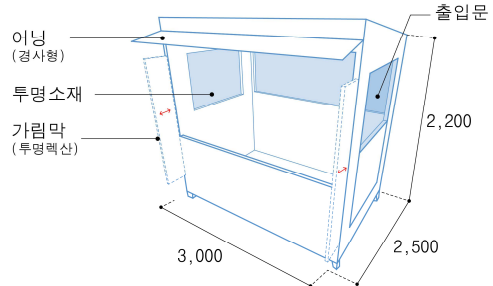
			
진열 바구니 대:600×450mm	상품상자 10kg 과일박스 (450×320mm)	의류행거 길이1000~1200mm	진열장 가로900mm~1800mm 세로 폭500~600mm
			
가스화덕 가로370mm 세로560mm	업소용 밥솥 가로380mm 세로380mm	반찬냉장고 가로1000mm 세로600mm	포장마차 분식대 폭700mm 시식대300mm
			
음료수 냉장고 가로1200mm 세로700mm	3단 작업대 가로600mm 세로600mm	정수기 가로300mm 세로300mm	어묵조리기 가로530mm 세로330mm

〈표 61〉 규격 및 형태 산출근거 및 가이드라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크기 및 규격에 대한 원칙



[텐트형 거리가게]



[부스형 거리가게]

협이에 따른 거리가게 규격

- 상생정책자문단 회의를 통해 협의된 거리가게 규격은 가로 3m, 세로 2.5m이다. (유효보도폭이 2.5m이상 확보된 경우)
- 거리가게의 높이는 설비 및 간판을 포함하여 2.2m을 넘지 않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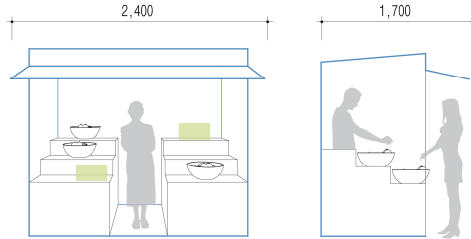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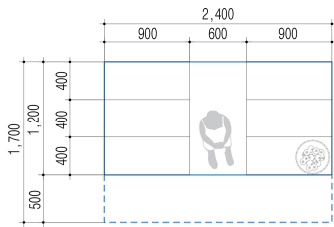
가림막 설치 기준

- 환경조건이 여의치 않을 경우(동절기, 우천 시) 투명plexan 소재 등의 벽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가림막의 상층부는 투명소재를 이용하며, 하층부와 모서리 부분은 안전을 고려하여 시인성이 높은 색상의 소재를 사용)
- 가림막의 끝선과 대지경계선과의 거리가 최소 2.5m가 되도록 한다. (가림막 설치 시 거리가게 기본규격은 넘지 않는다)

* 거리 및 품목유형에 따른 최소 규격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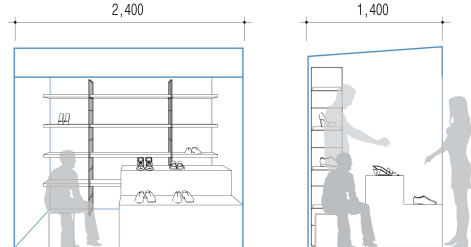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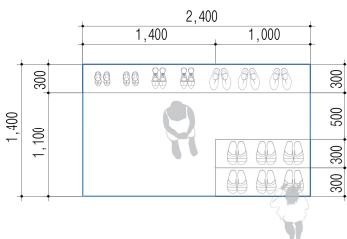
전통시장 및 생활권거리 - 비가공류

- 0.9m너비, 0.4m폭의 3단 가판대 2개 설치 - 중앙에 일부 상품을 적치 후 판매자 이동경로로 활용
가로 너비 2.4m (판매자 이동경로 포함), 세로 폭 1.7m (차양막 포함)



전통시장 및 생활권거리 - 비가공류, 가공류

- 뒷면에 0.3m폭의 선반을 두고, 앞부분에 0.3m폭의 2단 매대 설치 후 점포 내 2인이 마주 앉을 수 있는 규격
가로 너비 2.4m(판매자 이동경로 포함), 세로 폭 1.4m (차양막 미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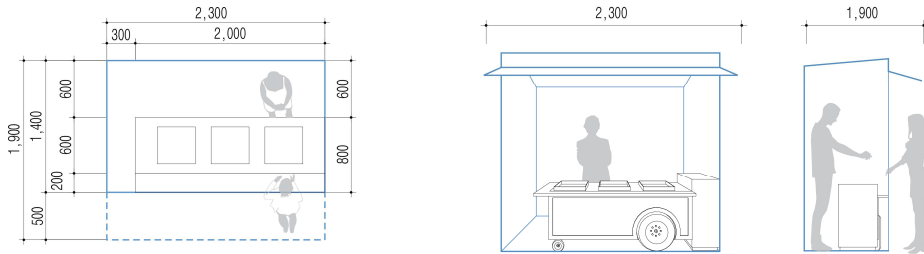
(표 62) 거리가게 규격 가이드라인-1

전통시장 및 생활권거리 - 포장마차

- 3개의 조리기구와 1개소의 보관함 배치

판매자는 거리가게 내에서 고객을 상대할 수 있도록 배치. 규격 내 취식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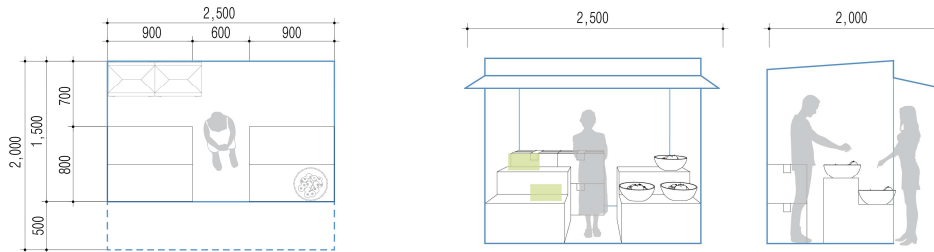
가로 너비 2.3m (판매자 이동경로 포함) 세로 폭 1.4m (차양막 미포함) 1.9m (차양막 포함)



쇼핑 및 관광거리, 특화거리 - 비가공류

- 뒷면에 상품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비치, 앞면에 2단 가판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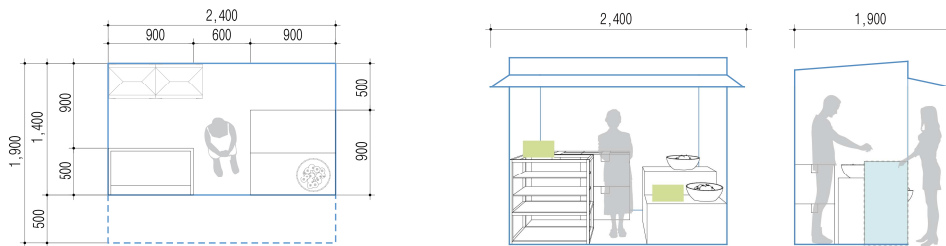
가로 너비 2.5m (판매자 이동경로 포함), 세로 폭 2.0m (차양막 포함)



쇼핑 및 관광거리, 특화거리 - 비가공류, 가공류

- 뒷면에 상품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비치, 앞면에 쇼케이스와 함께 2단 가판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규격

가로 너비 2.4m (판매자 이동경로 포함), 세로 폭 1.9m (차양막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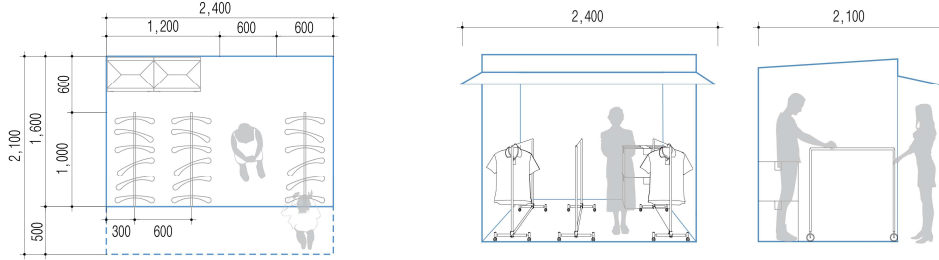


〈표 63〉 거리가게 규격 가이드라인-3

쇼핑 및 관광거리, 특화거리 - 가공류

- 행거를 두고 제품판매가 가능한 최소규격 상품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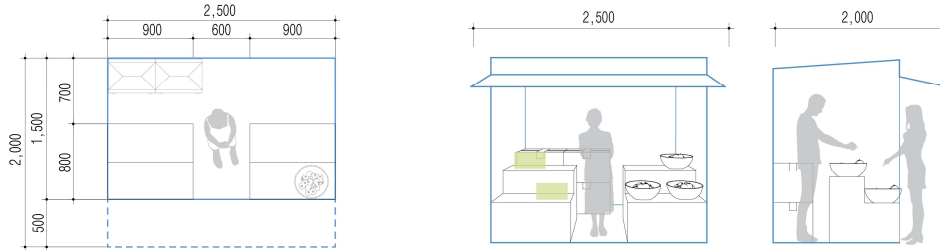
가로 너비 2.4m (판매자 이동경로 포함) 세로 폭 2.1m (차양막 포함)



쇼핑 및 관광거리, 특화거리 - 포장마차

- 뒷면에 상품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비치, 앞면에 2단 가판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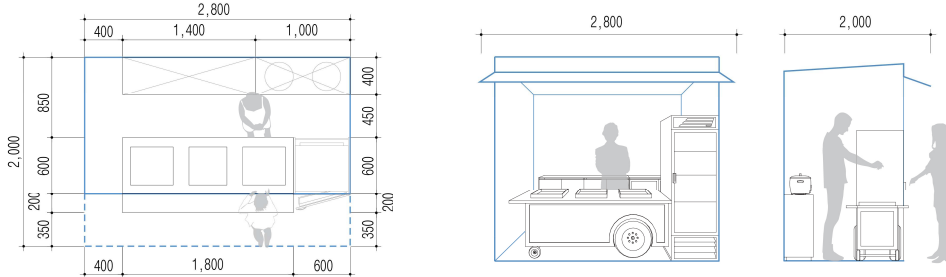
가로 너비 2.5m (판매자 이동경로 포함), 세로 폭 2.0m (차양막 포함)



쇼핑 및 관광거리, 특화거리 - 비가공류, 가공류

- 3개의 조리 기구를 두고 재료보관함과 냉장고를 함께 비치, 고객은 규격 내 취식이 가능

가로 너비 2.8m (판매자 이동경로 포함), 세로 폭 2.0m (차양막 포함)



〈표 64〉 거리가게 규격 가이드라인-3

현황 및 문제점

- 일부 거리가게의 경우 보도 바닥에 앵커볼트가 설치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 연속배치로 인해 가림막화로 도시경관의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 단독 부스형태의 거리가게가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다.
- 군집형태의 거리가게는 마주보는 상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관계 법령 및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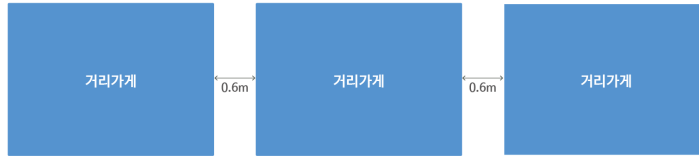
조례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 가로판매대간 거리가 50m 이내 가로판매대는 과밀시설물
가이드라인	보행자중심 가로경관	· 가판대는 이동 가능한 독립된 부스형식을 기본으로 판매를 위한 부속물이 외부에 돌출하지 않도록 한다.
	서울시 공공공간 디자인	· 시설물 설치구역에 통합적으로 설치하여 시설물 도로 점유율을 최소화 · 통행구역 내 고정시설물 설치 금지
	서울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 크기와 형태를 최적화하고 연계 가능한 시설물간은 통합 · 시각적, 심리적, 개방감 확보가 가능하도록 도시경관 연속성 확대

현황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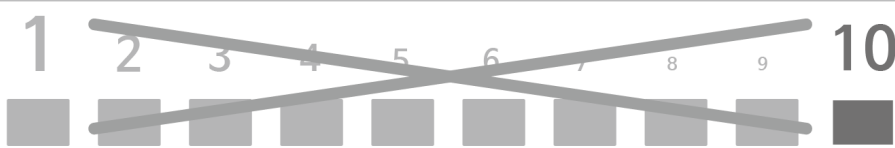


<표 65> 보도상 배치 현황 및 법령 사례

디자인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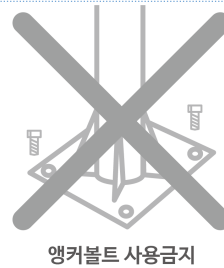


거리가게의 10개 이상 연속적 배치를 금지



거리가게 사이의 이격거리

- 거리가게와 거리가게 사이는 최소 0.6m이상 이격하여 배치한다.
- 이격 공간은 측면 출입과 동시에 환기가 용이하도록 한다.
- 식료품 배달 시 불편하지 않도록 출입문은 최대규격으로 배치한다.
- 이격 공간은 거리가게의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한다. (물품보관, 공동 쓰레기통, 벤치, 휴게공간 등)
- * 10개 이상의 거리가게 연속적 배치를 금지한다.



앵커볼트 사용금지

이동형 거리가게 구조

- 이동이 가능한 바퀴구조로 영업시간외의 공간점용을 하지 않도록 한다.
- 바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동 시 지게차 활용에 용이하도록 바닥과 0.8m을 이격하여 배치한다.
- 자차체 허가를 받은 공사 등에 의해 거리가게 이동이 필요할 경우 즉시 이동하여 공사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바닥에 앵커볼트 사용은 금지한다.

〈표 66〉 보도상 배치 가이드라인

(3) 색상 및 재질

현황 및 문제점

- 대부분의 거리가게는 기존 색상의 고채도 천막천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 눈에 띄게 과장된 패턴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 자연환경 색으로 '녹색'을 사용하였으나 고채도의 색상을 선택함으로써 시각적 피로감을 유발하고 있다.
- 일부 투명소재를 함께 사용하여 거리의 답답함을 해소하고 있다.
- 화재에 약한 천막 천 사용이 대부분이다.

관계 법령 및 가이드라인

	보행자중심 가로경관	· 가로시설물은 장식 보다는 기능 위주 단순하고 간결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지역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지향.
가이드라인	서울시 공공공간 디자인	· 현란하고 과장된 형태는 지양하고 차분하며 안정된 가로환경을 조성. (과장된 패턴, 자극적인 색채는 지양, 주변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고채도, 고명도 시설물은 지양) · 주변 환경에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 · 지나치게 많은 재료의 혼용 금지.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저채도 색을 주조색으로 하며 원색계열의 포인트 색상 최소화 · 조명을 도입할 경우 지나치게 자극적인 색채와 점멸 금지 · 재료 자체의 고유 색채활용으로 자연스러운 경관 조성
	서울시 공공시설물 디자인	· 무계획적 색채사용을 지양하고 재료 자체의 색 활용 · 친환경성 및 내구성을 고려한 재료사용으로 지속 가능한 디자인 실현

현황 사례



<표 67> 색상 및 재질 현황 및 법령 가이드라인

디자인 가이드라인

색상	색채값	색상	색채값	색상	색채값
SEC001	NCS S 0502-Y C1 M0 Y12 K0 L*92.2 a*-0.5 b*7.8 R252 G254 B223 0.7Y 9.1 /1.1	SEC003	NCS S 0502-B C5 M0 Y7 K0 L*83.1 a*-1.8 b*0.7 R242 G250 B234 5.3G 8.2 /0.3	SEC442	NCS R18 G0 B0 C100 M100 Y100 K0 L*18.3 a*-3.6 b*0.6 R0 G0 B0 9.0G 1.8 /0.9
SEC011	NCS S 1002-Y C8 M3 Y16 K0 L*85.9 a*-0.5 b*5.8 R235 G239 B208 0.4Y 8.5 /0.8	SEC015	NCS S 1002-B C9 M2 Y9 K0 L*95.9 a*-0.5 b*2.3 R232 G241 B225 7.1Y 9.5 /0.3	SEC582	NCS S 0300-N C0 M0 Y0 K0 L*95.4 a*0.2 b*2.5 R235 G255 B255 3.3YR 9.5 /0.4
SEC053	NCS S 1502-Y C12 M6 Y18 K0 L*82.7 a*-0.7 b*6.0 R224 G229 B199 3.3Y 8.1 /0.8	SEC056	NCS S 1502-B C14 M5 Y12 K0 L*82.4 a*-2.1 b*-1.0 R219 G229 B212 2.6B 8.1 /0.5	SEC583	NCS S 0500-N C0 M0 Y0 K1 L*93.7 a*0.0 b*2.2 R252 G252 B252 2.0Y 9.3 /0.4
SEC068	NCS S 2002-Y C12 M6 Y21 K0 L*82.7 a*-0.7 b*6.0 R223 G224 B191 3.3Y 8.1 /0.8	SEC063	NCS S 2002-B C18 M7 Y12 K0 L*77.4 a*-1.5 b*-0.9 R208 G220 B209 4.2B 7.6 /0.4	SEC584	NCS S 1000-N C0 M0 Y0 K5 L*88.0 a*0.0 b*1.5 R242 G242 B242 1.9Y 6.7 /0.3
SEC139	NCS S 2502-Y G22 M14 Y26 K0 L*73.9 a*-0.6 b*5.5 R199 G200 B170 8.2Y 7.2 /0.7	SEC141	NCS S 2502-B G26 M14 Y20 K0 L*73.4 a*-2.0 b*-1.9 R189 G197 B182 5.8B 7.2 /0.6	SEC585	NCS S 1500-N C0 M0 Y0 K10 L*83.7 a*-0.3 b*1.7 R230 G230 B230 6.1Y 8.3 /0.2
SEC221	NCS S 3502-Y C33 M22 Y33 K0 L*65.7 a*-0.5 b*4.4 R171 G173 B147 6.6Y 6.4 /0.6	SEC223	NCS S 3502-B C36 M22 Y28 K0 L*65.0 a*-1.8 b*-1.6 R163 G171 B156 3.2BG 6.3 /0.5	SEC586	NCS S 2000-N C0 M0 Y0 K18 L*78.7 a*-0.1 b*1.6 R209 G209 B209 3.4Y 7.8 /0.3
SEC274	NCS S 4502-Y C45 M33 Y42 K0 L*57.4 a*-0.3 b*4.2 R148 G142 B120 4.6Y 6.0 /0.4	SEC276	NCS S 4502-B C45 M30 Y33 K0 L*57.6 a*-1.3 b*-2.1 R140 G147 B139 0.3PB 6.0 /0.7	SEC587	NCS S 2500-N C0 M0 Y0 K22 L*74.6 a*-0.4 b*1.4 R199 G199 B199 9.3Y 7.3 /0.2
SEC410	NCS S 5502-Y C54 M45 Y54 K0 L*50.0 a*-0.3 b*3.7 R118 G108 B91 5.0Y 4.8 /0.5	SEC412	NCS S 5502-B C54 M42 Y42 K0 L*49.5 a*-1.4 b*-2.4 R118 G116 B113 8.5B 4.8 /0.7	SEC588	NCS S 3000-N C0 M0 Y0 K28 L*71.2 a*-0.3 b*1.0 R184 G184 B184 10Y 1.7 /0.2
SEC477	NCS S 6502-Y C65 M57 Y65 K0 L*42.3 a*-0.3 b*3.2 R91 G79 B68 7.7Y 4.1 /0.4	SEC479	NCS S 6502-B C70 M60 Y60 K0 L*41.5 a*-1.7 b*-2.3 R79 G72 B74 4.8B 4.0 /0.7	SEC589	NCS S 3500-N C0 M0 Y0 K38 L*66.4 a*0.1 b*1.4 R166 G166 B166 2.0Y 6.0 /0.2
SEC507	NCS S 7502-Y C80 M80 Y100 K0 L*33.3 a*0.4 b*3.9 R51 G32 B9 3.0Y 3.3 /0.6	SEC509	NCS S 7502-B C85 M85 Y85 K0 L*30.9 a*-1.4 b*-2.5 R40 G24 B26 7.6B 3.0 /0.6	SEC590	NCS S 4000-N C0 M0 Y0 K41 L*62.4 a*-0.2 b*0.6 R150 G150 G150 2.0GY 6.1 /0.1
SEC539	NCS S 8502-Y C90 M100 Y100 K0 L*20.7 a*0.4 b*4.0 R26 G0 B0 2.9Y 2.0 /0.7	SEC541	NCS S 8502-B C95 M100 Y100 K0 L*18.5 a*-1.1 b*-2.7 R78 G44 B17 9.5B 1.8 /0.7	SEC591	NCS S 4500-N C0 M0 Y0 K45 L*58.5 a*-0.1 b*0.2 R140 G140 B140 N 5.7 /0.0
SEC013	NCS S 1002-B C4 M0 Y9 K0 L*97.8 a*1.4 b*2.1 R240 G237 B222 2.6Y 1.4 /2.1	SEC004	NCS S 0502-G C4 M0 Y9 K0 L*97.8 a*1.4 b*2.1 R245 G251 B230 1.8G 9.2 /0.4	SEC592	NCS S 5000-N C0 M0 Y0 K46 L*54.6 a*-0.2 b*-0.4 R138 G138 B138 N 5.4 /0.0
SEC055	NCS S 1502-R C12 M9 Y14 K0 L*82.5 a*1.5 b*1.3 R223 G221 B204 9.1R 8.1 /0.5	SEC017	NCS S 1002-G C9 M1 Y12 K0 L*87.9 a*-2.4 b*1.3 R232 G243 B219 3.2G 8.7 /0.4	SEC593	NCS S 5500-N C0 M0 Y0 K50 L*50.8 a*-0.4 b*0.2 R127 G127 B127 0.8B 4.9 /0.1
SEC065	NCS S 2002-R C13 M13 Y15 K0 L*77.7 a*1.5 b*0.8 R220 G219 B198 4.4R 7.6 /0.4	SEC058	NCS S 1502-G C16 M6 Y16 K0 L*82.3 a*-2.2 b*1.2 R214 G228 B202 3.8B 8.0 /0.4	SEC594	NCS S 6000-N C0 M0 Y0 K55 L*46.7 a*-0.2 b*-0.1 R115 G115 B115 N 4.5 /0.0
SEC140	NCS S 2502-R C22 M16 Y20 K0 L*65.6 a*1.5 b*0.8 R198 G196 B181 5.9R 6.4 /0.4	SEC061	NCS S 2002-G C18 M5 Y16 K0 L*77.8 a*-1.8 b*1.1 R209 G225 B201 2.0G 7.6 /0.3	SEC595	NCS S 6500-N C0 M0 Y0 K60 L*42.8 a*0.0 b*0.1 R102 G102 B102 N 4.2 /0.0
SEC222	NCS S 3502-R C33 M24 Y28 K0 L*50.0 a*1.8 b*0.6 R171 G169 B155 6.15R 4.8 /0.4	SEC142	NCS S 2502-G C24 M12 Y22 K0 L*73.6 a*-2.5 b*0.6 R194 G203 B180 9.5G 7.3 /0.4	SEC596	NCS S 7000-N C0 M0 Y0 K72 L*38.8 a*-0.2 b*-0.1 R71 G71 B71 N 3.3 /0.0
SEC275	NCS S 4502-R C42 M33 Y36 K0 L*41.2 a*2.3 b*1.1 R148 G142 B131 7.7R 4.0 /0.4	SEC224	NCS S 3502-G C36 M22 Y30 K0 L*65.1 a*-2.6 b*0.1 R163 G171 B152 3.2BG 6.3 /0.5	SEC597	NCS S 7500-N C0 M0 Y0 K77 L*34.1 a*-0.2 b*-0.1 R59 G59 B59 N 3.8 /0.0
SEC411	NCS S 5502-R C51 M45 Y45 K0 L*33.1 a*2.6 b*1.1 R126 G111 B106 4.9R 3.2 /0.5	SEC277	NCS S 4502-G C45 M30 Y39 K0 L*57.9 a*-2.5 b*0.0 R140 G146 B128 3.5BG 6.0 /0.5	SEC598	NCS S 8000-N C0 M0 Y0 K82 L*28.1 a*-0.2 b*0.3 R45 G45 B45 N 3.0 /0.0
SEC478	NCS S 6502-R C65 M50 Y60 K0 L*18.6 a*3.7 b*1.3 R91 G74 B74 7.4R 1.8 /0.7	SEC413	NCS S 5502-G C57 M42 Y48 K0 L*50.2 a*-2.5 b*0.3 R111 G113 B103 1.5BG 4.9 /0.5	SEC599	NCS S 8500-N C0 M0 Y0 K90 L*20.5 a*0.1 b*0.1 R26 G26 B26 N 2.0 /0.0
SEC508	NCS S 7502-R C80 M90 Y100 K0 L*33.1 a*2.6 b*1.1 R51 G16 B3 4.9R 3.2 /0.5	SEC480	NCS S 6502-G C65 M54 Y60 K0 L*42.3 a*-2.8 b*0.1 R91 G85 B77 1.6BG 4.1 /0.6	SEC600	NCS S 9000-N C0 M0 Y0 K100 L*11.0 a*-0.5 b*-1.1 R0 G0 B0 N 0.8 /0.0
SEC540	NCS S 8502-R C85 M100 Y100 K0 L*18.6 a*3.7 b*1.3 R37 G5 B0 7.4R 1.8 /0.7	SEC510	NCS S 7502-G C85 M85 Y100 K0 L*31.9 a*-2.6 b*0.3 R38 G23 B8 0.8BG 3.1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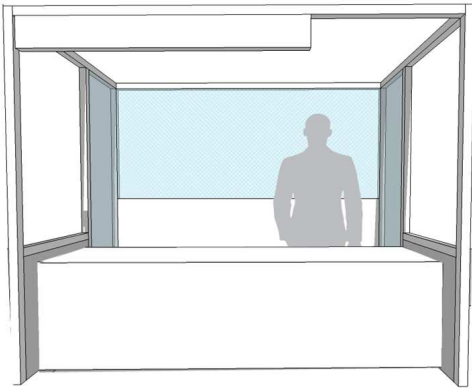
- ① 지정된 지체 색채활용을 지향한다.
- ② 거리가게의 주조색은 지체도, 무채색 사용을 지향, 자연환경색, 전통환경색을 근간으로 제시된 서울관광색 600무채색을 사용하도록 한다.
- ③ 주변과 조화되며 시각적으로 공해가 없도록 다양한 색채적용을 금지한다.
- ④ 고채도, 곁영도를 지양한다.
- ⑤ 과광된 패턴, 자극적 색채를 금지하고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색상을 지향한다.

〈표 68〉 색채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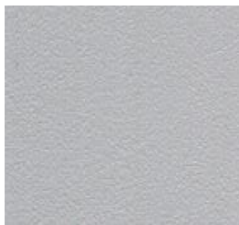
디자인 가이드라인



- ① 지정된 지자체 색상활용을 지향한다.
- ② 거리가게의 주조색은 저채도, 무채색 사용을 지향, 자연환경색, 건
통환경색을 근간으로 제시된 서울권장색 600무채색을 사용하도
록 한다.
- ③ 주변과 조화되며 시각적으로 공해가 없도록 다양한 색채적용을 금
지한다.
- ④ 고채도, 고명도는 지양한다.
- ⑤ 과장된 패턴, 자극적 색채를 금지하고 재료 자체의 색을 적용한다.



- ⑧ 투명소재를 활용하여 개방성을 부여한다. (전체 면적의 20%사용
을 지향)
- ⑨ 광택소재의 전면사용을 금지하여 눈부심을 방지한다.



- ⑩ 천막 천을 사용할 경우 불연재 사용을 지향한다.
- ⑫ 거리가게 소재로 EGI철판 등의 오염에 강하고 내구성이 있으며 관
리가 용이한 소재 활용을 지향한다.

〈표 69〉 색채 및 소재 가이드라인

03 운영계획

거리가게 내 상품진열 및 적치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좁은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운영 전반에 관한 지침에 대한 규정을 제시한다. 특히 재료 및 판매자 정보제공, 위생적 판매, 화재, 범죄에 대한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1) 정보 및 진열

현황 및 문제점

- 전통시장 및 생활권 거리의 거리가게의 경우 바닥에 상품을 펼쳐서 진열하고 있다.
- 상품이 눈높이에 배치되어 있지 않아 구매하기가 불편하다.
- 위생적인 진열이 미흡하다.
- 원산지 및 가격표기가 미흡하다.
- 판매자 정보 표기가 되어있지 않다.
- 소독 및 위생교육 여부에 대해 정보가 없다.

관계 법령 및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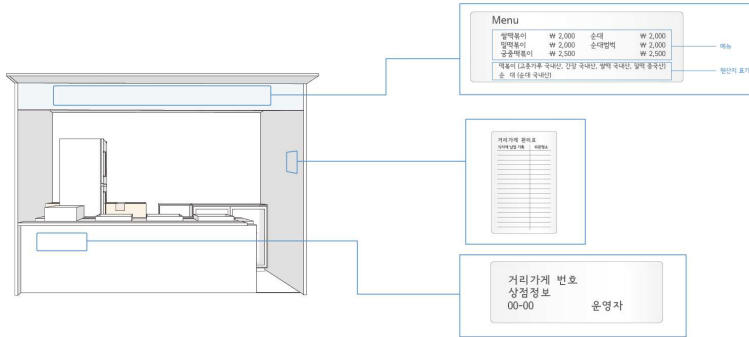
조례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외벽에 상품 등을 과다 진열한 후 시설물 외부에서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에 게시하여 누구나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법령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거래 상대방이나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현황 사례



〈표 70〉 정보 및 진열 현황 및 법령 사례

디자인 가이드라인



거리가게 운영정보전달

- 거리가게 외관 정면(상단 또는 하단)에 거리가게 관리번호 또는 상점에 관한 정보를 기입한다. (상호명보다 거리가게 관리번호 기입을 지향한다)
- 위생교육 실시 및 소독에 관한 거리가게 활동에 대한 정보가 있을 시 함께 기입한다.
- 거리가게 정면 상단에 메뉴, 가격 및 원산지 정보 등을 기입하도록 한다.



상품정보전달

- 상품정보는 깨끗한 용지에 적어서 해당 상품에 부착한다.
- 상품정보 부착 시에는 상품이 가려지지 않는 크기로 한다.
- 상품정보에는 원산지 및 가격을 표기 후 게시한다.
- 바닥에 상품배치 및 진열, 적치는 지양하고 테이블 및 선반 위에 상품을 진열한다.
- 상품의 특징이 잘 보일 수 있게 계단식 진열을 지향한다.

(표 71) 정보 및 진열 가이드라인

(2) 운영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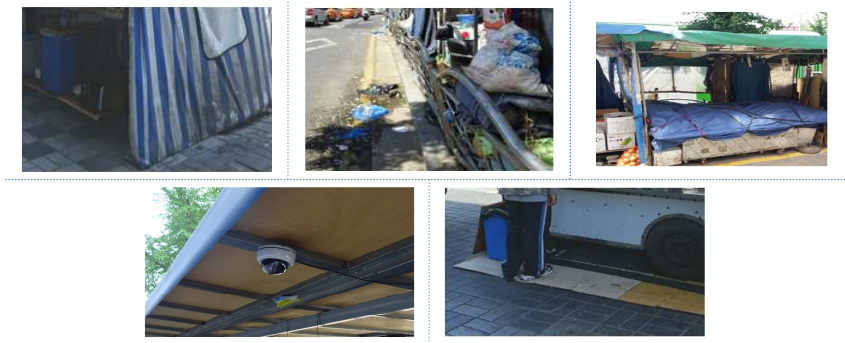
현황 및 문제점

- 영업 폐점 시, 상품이 그대로 비치된 상태에서 상품만 덮어서 보관하고 있다.
- 방법을 위해 거리가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보이고 있다.
- 정기적인 청소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방법을 위한 설치는 있으나 화재예방을 위한 설비는 구비되어 있지 않다.
- 보도가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오물 등이 고여 있어 악취 등 위생관리가 안되는 곳이 있다.
- 식자재가 그대로 바닥에 방치되어 있다.
- 쓰레기 분리수거는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다.
- 프로판가스를 사용하여 조리할 경우, 방염이 되지 않는 천막천은 늘 화재위험을 가지고 있다.
- 소화기가 비치된 곳을 찾기 어렵다.
- 위생복을 착용하고 있는 곳을 찾기 어렵다.

관계 법령 및 가이드라인

조례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된 점용장소 또는 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 및 그 밖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 ·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 단,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보온을 요하는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 건포(乾脯)류 및 김밥의 판매행위에 한정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 판매를 허용한다.
법령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재료, 제품 등을 판매하는 자는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 유해성을 줄여야 한다. · 발생된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현황 사례



〈표 72〉 운영관리 현황 및 법령사례

디자인 가이드라인



그늘막, 테이블, 상품 등을 적치하여 거리가게 외부공간을 점유하는 행위를 금함

거리가게 외부관리

- 거리가게 규격 외 상품배치 및 파라솔, 의자, 가판대 등 기물 적치 등은 금지한다.
- 거리가게 규격을 벗어나는 범위에서의 가림막 등의 확장을 금지한다.
동절기 및 우천시 가림막 설치 시 고정 끝 선은 거리가게 규격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 거리가게 외부의 낙서 및 광고물 부착은 금지한다.



바람막이

바람막이를 설치할 경우 불연소재를 사용하고, 바람의 영향을 고려하여 일정거리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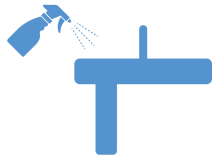
오래된 가스 연결 호스는 교체하도록 함



소화기 비치

화재안전관리

-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거리가게 내장재 및 가림막 등은 방염처리된 소재 혹은 불연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한다.
- 화기와 탈 수 있는 기물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가스 호스, 바람막이, 기름통 등 기타 기물)



취식하는 장소의 청결상태 항상 철저히 관리



월 1회이상 거리가게 외관 청소 및 주변 청소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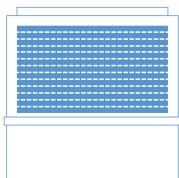
너무 많은 쓰레기통 설치 자제



분리수거 실시

위생관리

- 고객이 취식하는 장소는 늘 청결하도록 관리한다.
- 외관청소 및 주변 청소는 정기적으로 1개월 1회 이상 실시한다.
- 과도한 쓰레기통 설치는 지양한다.
- 분리수거를 실시한다.



기타 운영규정

- 폐점 시 방법 및 미관을 위해 반드시 전면을 닫도록 한다.
- 포장마차의 경우 기물 및 상품이 노출되지 않도록 천막을 바르게 묶도록 한다.
- 허가받지 않는 물품판매는 금지한다.

〈표 73〉 운영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05 평가 체크리스트

시민이 걷는 보행로는 시민의 공공공간으로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행의 안전성, 편의성, 쾌적성이 보장 되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WHO에서 언급한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의 필수조건인 안전성(Safety), 보건성(Health), 편리성(Convenience), 쾌적성(Amenity)과의 연관성을 짚지어 보면, 언급된 세 가지 명제는 기본적인 도시의 보행환경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쾌적하고 활기찬 서울 거리가게의 매력 만들기를 위한 3대 비전인 ‘안전한 공간’ ‘편리한 공간’ ‘쾌적한 공간’에 대한 가로 환경 적용기준 지표 개발에 있어 시민의 안전성과 편의성, 쾌적성을 평가의 축으로 삼고 6대 추진전략을 기본으로 가이드라인 추진방향을 바탕으로 세부 지표로 분할하였다.

안전한 공간 (안전성)			편리한 공간 (편의성)			쾌적한 공간 (쾌적성)			
① 보도 환경 개선	② 시거리 확보	③ 안전 거리 유지	④ 규격 형태	⑤ 배치 기준	⑥ 거리 미관	⑦ 안심 정보 표기	⑧ 위생 진열	⑨ 사고 방지	⑩ 지속 가능한 운영
환경조건 구축			규격 및 배치 기준 구축			운영 시스템 구축			

(표 74) 가이드라인 기준 목표

각 10개의 지표 내 25개의 세부 체크 기준을 도출하였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5~10점을 부과하여 총200점 만점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다.

각 세부지표의 평가 점수는 상위법 및 공공공간 가이드라인에 있어 금지규정이 있거나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강제성이 있는 경우 10점, 현장분석에 따라 융통성을 두어 변경이 가능한 항목은 5점으로 구성하였다.

각 세부 평가 기준은 국내에 현존하는 거리가게 또는 유사 시설물에 관련된 상위법과 서울시 공공공간 가이드라인, 공공시설물 디자인가이드라인 등에서 도출한 평가기준 12개 항목, 상생정책자문단 협의결과 및 현장사례분석을 통해 13개 항목의 평가기준을 도출하였다.

기준	세부 내용
보도 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통시설물 및 도시기반 시설물과는 5m이상 이격 (2) 시설물의 규격 외 변경은 하지 않음 (3) 점용면적 외 상품 및 물건은 적치하지 않음 (4) 운영자 증명서를 시설물에 게시 (5) 위치이동이 가능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6) 허가받은 취급품목 외 판매 금지 육류, 어패류 취급 및 판매 금지 (7) 위생교육은 받고 소독약 비치 및 1회용 용기를 활용
환경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8) 분리수거를 하도록 함
원산지 표기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9) 원산지 및 가격을 표기하도록 함
서울시 공공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 손상되지 않은 평탄한 보도 상 배치 (11) 장애인 점자블록에서 0.6m이상 이격 (12) 거리가게의 연속배치는 지양 (13)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저채도 사용, 원색 사용 최소화
서울시 상생정책자문단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4) 최소 유효보도폭을 2.5m이상 확보 (공공공간디자인 가이드라인 - 시설물 설치 후 실질적 보행을 위한 보도폭은 2m확보, 가로판매대는 보도폭이 4m이상 확보 시 설치) (15) 거리가게 규격은 최대 가로폭3m, 세로폭2.5m. 세로폭에는 차양 사이즈 (약 0.5m)도 포함
현장분석에 따른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6) 소화전, 분전반 개폐기 시설물과 2m의 이격 (17) 도로가각부와 2m의 이격 (18) 시설물에 경관을 저해하는 광고물의 부착 금지 (19) 바닥에 상품을 적치 또는 바닥 진열을 지양 (20) 거리가게 전면 광택소재 사용 금지 (21) 거리가게 시설물에 창문 등 투명소재를 활용하여 개방감을 확보 (22) 준불연재를 사용하여 화재 예방 (23)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 예방 (24) 폐점 시 전면을 단도록 함 (25) 오수는 도로바닥에 배출되지 않도록 처리함

〈표 75〉 세부평가 기준에 대한 근거 및 내용

제5장 결론

제5장 결론

5.1 결론

2014년 국토교통부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거리가게가 보도 상 시설물에 일부 포함됨에 따라 거리가게의 제도권 편입에 대한 검토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2007년 가판대 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다양한 거리가게 개선사업이 산발적으로 시행, 대부분 일정 구역의 미관 개선사업의 일부로 진행되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되고 시범거리 사업의 결과가 보도 상 곳곳에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현존하는 서울의 거리가게 유형에 따른 현황, 관계법, 타 지역의 사례, 서울시 상생정책자문단에서 협의한 내용에 근거하여 거리가게 조성에 있어 필요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이드라인은 보행자의 기본 권리인 안전 기준과 함께 운영과 개발의 기반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1단계 시범거리 조성으로 노량진구 컵밥 특화거리를 설정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그리고 제2단계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지표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운영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시민과 거리가게가 상생할 수 있는 도시 특화거리가 조성될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대로변에 24시간 존치되는 거리가게에 대한 환경 적용기준 수립의 근거를 바탕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보행안전을 위해 제시한 이격거리와 유효 보

도폭은 반드시 규제되어야 할 사항이다. 다만, 유효보도폭을 유지하기 위해 제시한 거리가게 규격은 필수 최소규격이 아닌, 판매자의 행동범위와 함께 상품의 적정한 진열을 위해 규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다음으로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스스로 지켜나가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제시하였다. 그 중 판매환경개선 및 위생, 청결유지, 화재예방에 관한 내용은 지속가능한 거리가게를 위해 최소한의 지켜야 할 항목이 된다. 특히 특화거리 조성 기존 거리가게의 문제점을 시민과 상생하며 새로운 거리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디자인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적정성 평가 틀을 위한 체크리스트는 거리가게 운영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법제화의 근거가 되도록 하며, 향후 평가지표와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운영·관리함으로써 안정성, 편리성, 쾌적함, 지속가능성을 만족시키는 거리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5.2 체크리스트 적용방안

거리가게의 지속가능한 운영, 유지를 위해 4장에서 제시한 체크리스트는 공공의 공간으로서 보도 상에 거리가게 적용 시 검토해야 하는 기본사항이자 현재까지 제시된 많은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

향 후 본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서울시 각 시범거리에 대한 테스트를 통하여 평가의 결과를 수합하고 비교 분석함으로써 가장 핵심적인 문제요인 도출 및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새롭게 시작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거리가게 적용 기준으로 활용 될 수 있다. 차후 다양한 적용과 검증에 따라 실효성을 평가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의 발전을 거듭함으로써 거리가게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도 상에서의 질서를 유지하는 시설물로 정의될 수 있다.

각 체크리스트에 관한 지적사항 및 사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손상되지 않는 평탄한 보도



√ 손상 없는 보도인가?	<input type="checkbox"/>
√ 보도는 평탄한가?	<input type="checkbox"/>
√ 수평과 수직을 유지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2) 오염없는 보도



√ 오수배출 우려는 없는가?	<input type="checkbox"/>
√ 바닥과 이격을 두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 취식장소에 별도의 바닥처리는 되었나?	<input type="checkbox"/>

(3) 유효보도폭



- 유효보도폭이 2.5m이상인가?
(대지경계선에서 거리가게 돌출부분까지)
- 유효보도폭이 2m이상인가?
(대지경계선에서 거리가게 돌출부분까지)
- 동결기, 우천용 가림막이 거리가게 규격 내에 존재하는가?

(4) 점자 유도블록



- 점자유도블록 끝 선에서 0.6m위치에 시설물이 존재하는가?
- 자율질서선은 지키고 있는가?
- 파라솔, 상품, 보관박스, 쓰레기통이 거리가게 규격 외에 존재하는가?

(5) 교통시설물 및 도시기반 시설물간 이격



- 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과의 이격 거리가 5m이상 위치에 있는가?
- 지하철 출입구, 지상 승강장와의 이격 거리가 5m이상 위치에 있는가?
- 횡단보도, 육교와의 이격거리가 5m이상 위치에 있는가?

(6) 도로가각부



- 도로에서 골목 진입에 있어 2m이상의 이격거리 위치에 있는가?
- 도로의 코너부분과 2m이상의 이격거리 위치에 있는가?
- 운전자 시야는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가?

(7) 소화전, 분전반, 개폐기 등 시설물



✓ 배전반과 2m이상의 이격거리 위치에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 지하철 환풍구와 2m이상의 이격거리 위치에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 가로수화분대, 보호덮개, 신호등주, 맨홀과의 이격거리가 1m이상 인가?	<input type="checkbox"/>

(8) 거리가게 규격



✓ 가로3m, 세로폭2.5m 이내인가? (차양막포함, 동절기 및 우천 시 가림막 포함)	<input type="checkbox"/>
✓ 품목 및 판매방식을 고려한 거리가게 규격인가?	<input type="checkbox"/>
✓ 가림막 및 상품진열, 취식장소가 가로3m, 세로2.5m 이내에 존재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9) 규격 외 확장 여부



✓ 파라솔이 설치되지 않았는가?	<input type="checkbox"/>
✓ 가림막이 넓게 펼쳐져 있지 않은가?	<input type="checkbox"/>
✓ 의자가 외부에 비치되지 않았는가?	<input type="checkbox"/>

(10) 규격 외 상품적치



✓ 거리가게 규격 밖으로 상품 및 박스 등 비치되어 있지 않은가?	<input type="checkbox"/>
✓ 거리가게 표면에 상품을 비치되어 있지 않은가?	<input type="checkbox"/>
✓ 거리가게 밖으로 상품진열대가 나와있지 않은가?	<input type="checkbox"/>

(11) 거리가게 간 이격배치



- ✓ 거리가게 간 0.6m이상 이격 배치 되었나?
- ✓ 거리가게 간 이격공간은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 (공동공간, 쓰레기배출공간, 출입구 등)
- ✓ 10개 이상의 거리가게가 연속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은가?

(12) 이동이 가능



- ✓ 1시간 내 이동이 가능한가?
- ✓ 지자체에서 허가한 가로판매대로 지게차를 이용한 이동이 용이한가?
- ✓ 바닥에 고정 장치는 없는가? (기물설치로 인해 이동이 불편하지 않는가)

(13) 원색사용여부



- ✓ 거리가게 전체 면적 중 원색면이 5%이내 인가? (원색은 포인트색으로만 사용)
- ✓ 지자체 색을 활용하고 있는가?
- ✓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색을 사용하였는가?

(14) 광택소재 설치 여부



- ✓ 광택소재를 거리가게 전면에 사용하지 않았는가?
- ✓ 전면에 과한 LED사용으로 눈부심은 없는가?
- ✓ 햇빛을 반사하는 소재사용은 없는가?

(15) 투명소재 사용여부



- ✓ 투명소재를 전체면적의 20%이상 사용 하였는가?
- ✓ 거리가게 뒷부분에 투명소재를 사용 하였는가?
- ✓ 투명소재 활용 후 짐으로 가리고 있지 않은가?

(16) 운영자정보표기



- ✓ 영업시 운영자의 정보를 전면에 표기하였는가?
- ✓ 운영자 정보는 거리가게 허가번호인가?
- ✓ 거리가게 정보 외 위생에 관련한 교육정보도 함께 표기가 되는가?

(17) 원산지 및 가격표기



- ✓ 상품에 원산지표기는 하였는가?
- ✓ 상품에 가격표기는 하였는가?
- ✓ 원산지 및 가격표기가 상품을 가리지 않는가?

(18) 위생진열



- ✓ 바닥에 상품진열하지 않았는가?
- ✓ 위생에 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가? (위생교육, 소독약비치 등)
- ✓ 주변은 청결하게 정리하고 있는가?

(19) 불연재 사용



불을 사용하는 곳에는 불연재 사용이 기본이다

√ 준불연재를 사용 하였는가?

(20) 소화기 비치



불연재 사용이 어려울 경우엔 소화기 비치로 화재 예방

√ 불을 사용하고 있는 곳에 소화기는 비치 되었는가?

√ 불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가?

(21) 폐점시 방법



육류, 어패류는 거리가게에서 판매 금지 상품

√ 전면을 닫고 열쇠로 잠그는 방법인가?

√ 내부가 보이지 않는 상태로 폐점하고 있나?

√ 끈으로 포장을 잘 묶고 폐점하고 있나?

(22) 광고물 부착



거리가게 정기청소, 주변청결은 기본

√ 거리가게 내부의 광고물 부착은 없는가?

√ 거리가게 외부의 광고물 부착은 없는가?

√ 낙서 등은 바로 지우고 있는가?

(23) 육류 및 어패 판매 금지



√ 금지된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가?

√ 허가 외 상품은 판매하고 있지 않은가?

(24) 청소여부



√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가?

√ 쓰레기통은 1개 이하인가?

(25) 청결한 판매환경



√ 별도의 위생교육은 받았나

√ 주변에 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있지 않은가?

√ 물품들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는가?

부록

시범적용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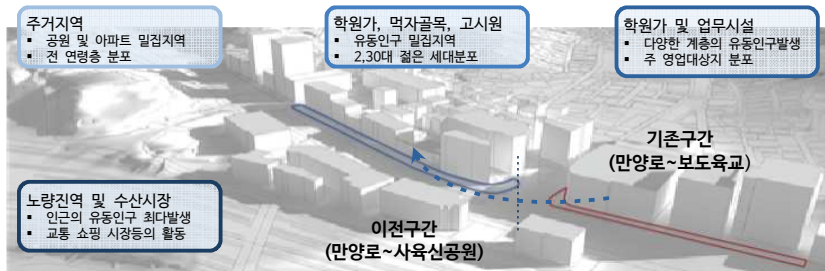
조례 및 가이드라인 해외사례

참고문헌

시범적용사례

○노량진 컵밥거리 개선사업

기존의 노량진역 부근은 학원가, 주거지 그리고 노량진수산물시장 등으로 이루어진 하루 유동 인구가 12만 명에 달하는 보행가로이다. 학원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음식을 파는 거리가가게가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에 따른 보행안전성 저해와 도시미관 훼손, 주변상 인들에 대한 영업방해 등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자치구는 그 동안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한 대응을 하였으나 근본적 해결방법은 아니었다.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노량진로 개선 사업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었고, 노량진 역 보도육교 철거 등 노량진로 변화를 시발점으로 하여 거리가게 이전, 특화거리 조성 등 개선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거리이전은 기존의 만양로~보도육교에서 만양로~사육신공원으로 이전]

01 노량진로 거리가게 현황분석

(1) 노량진 컵밥거리 현황 분석

특화거리 조성사업 이전 노량진 컵밥거리는 노량진역, 수산시장, 입시/공무원 학원, 먹자골목 등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에 위치하여 보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다른지역의 거리가게와 달리 분식이나 주전부리 등의 판매 이외에 식사로 이용되는 음식을 판매하는 특성으로 인해 거리가게 내 비품 배치 및 적치되는 품목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이용자 개개인의 점유시간이 길어져 보행로의 혼잡성을 가중시켰다. 또한 시설적으로도 우수, 먼지 등에 대한 대비를 갖고 있지 않아 위생적으로도 취약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노량진 컵밥거리 개선사업 실행 전]

1. 냉장고
2. 밥솥
3. 조리대(화덕)
4. 진열장 및 식대
5. 정수기
6. 조리포차
7. 쓰레기통
8. 수납공간(배면)
9. 적치공간(배면)
10. LPG함(배면)



[거리가게 내부 구성요소]

거리가게 내부(컵밥)는 거의 모든 거리가게의 배치구성품은 동일하며, 각 거리가게 특성에 맞는 메뉴와 거리가게주의 조리 동선에 따라 배치되어있다. 포차에 의한 지붕 프레임 구조, 외기를 막아주는 천막으로 되어있으며, LPG사용에 따라 차도 변(보행로 끝)에 LPG함을 적치하고 있다.

(2) 거리가게 품목별 현황 - 컵밥 거리가게

개선 중요사항 -

거리가게 분류	취급재료	열기구사용
<p>[분식 거리가게]</p>	<p><input type="checkbox"/> 분식류 - 떡볶이, 순대 등 - 순대볶음, 김치말이국수 등 특이성을 가진 메뉴 존재</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다양한 메뉴에 따라, 재료 구비 량이 많음</p>	<p><input type="checkbox"/> 가스화덕2EA, 순대찌기, 어묵조리기 튀김기 등</p> <p><input type="checkbox"/> 취급요리가 다양하여 조리공간이 부족</p>
냉장고 사용	거리비품적치	외부전경
<p><input type="checkbox"/> 재료에 대한 보관량이 많음 - 업소용 냉장고 추가사용</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외부특성상 재료의 장기보관이 어려움</p>	<p><input type="checkbox"/> 기본재료는 냉장고에 보관 - 떡볶이 떡, 계란 등 대량 보관의 경우가 있음</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형물품 보관량이 많음</p>	

거리가게 분류	취급재료	열기구사용
		
<p>[이외 거리가게]</p>	<p><input type="checkbox"/> 주전부리 - 핫케익, 꼬치, 핫도그 등 - 소시지, 핫케익가루 등 상자 보관</p> <p><input type="checkbox"/> 재료다양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p>	<p><input type="checkbox"/> 대형 가스철판화덕 사용</p> <p><input type="checkbox"/> 보조화덕을 구비하거나, 진열장을 늘리는 경우가 있음</p>
냉장고 사용	거리비품보관	외부전경
		
<p><input type="checkbox"/> 재료보다는 음료 보관 위주 - 재료특성상 냉장보관품목이 적음</p> <p><input type="checkbox"/> 하루 사용품목만 냉장보관 이외 실온보관</p>	<p><input type="checkbox"/> 아이스박스 및 상자 등 대형물품 보관 많음</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실온보관품목 보관량 많음</p>	

02 특화거리 환경현황 및 개선방안 도출

(1) 거리가게 배치 가능 여부 확인

과업구간으로 기존의 거리가게를 이전 시 배치를 위한 지장물의 철거와 가로수 이식 등의 구청 협의를 통해 거리가게가 배치될 수 있는 세부 위치를 가능여부를 검토한다.

(2) 과업구간 내 거리가게 배치 조건

건축물/건축주	보행로	지장 물	거리가게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가게 배치 거부 ✓ 영업방해 여부 ✓ 간판 노출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가게 배치 시 보행공간 확보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거/이식 가능확인 ✓ 지장 물 간 공간 사용 가능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 거리가게 규모선정

(3) 노량진 컵밥거리 배치계획

*세부 치수 배치도참고



[구간별 배치계획]

(4) 특화거리구간 내 환경요인 분석

현장의 수치적 데이터, 실제 사용자와의 인터뷰, 구청과의 거리조성계획을 조율해 나가며 환경 정보 수집을 통해 거리조성의 실질적 요인의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 동작구 노량진의 특성에 따른 현장 조사 및 협의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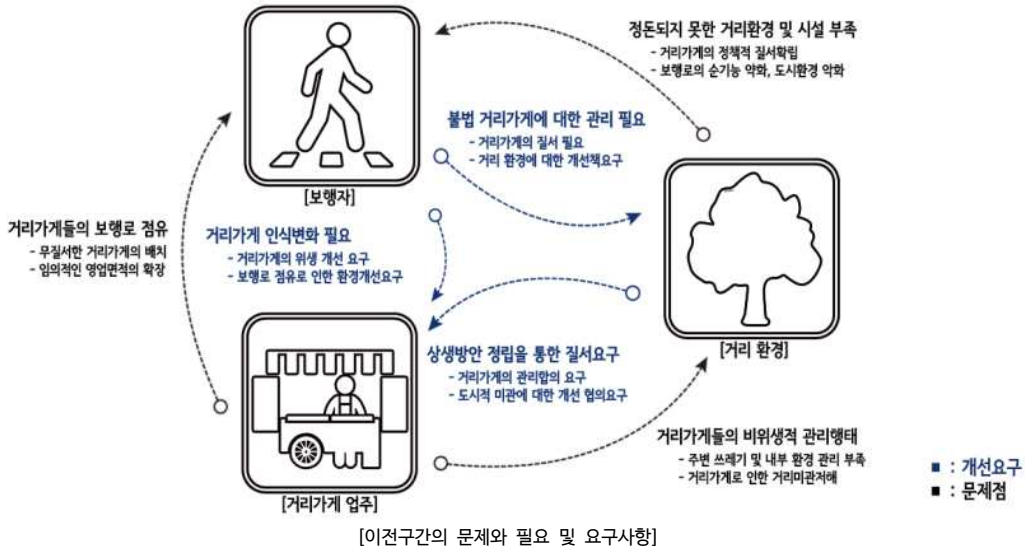
<p>물리환경 조건</p> <p>디자인 현실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로 너비 - 지장 물 간격 - 건축물 광고간판 - 이전가게 대수파악 	<p>거리가게 대수 / 크기</p> <p>가로 지장 물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가게 대수 : 32대 ✓ 분전함 미 이전에 따른 활용방안 검토 ✓ 접근성이 떨어지는 구간의 Advantage 제공여부 	<p>기존건축물 영업의 방해요소가 없어야함</p> <p>가로수 정리 및 분전함 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판노출을 위한 거리가게 높이 제한 (2,400이하) ✓ 거리가게의 대지경계선 침범 불허(不許) ✓ 미도빌 앞 거리가게 배치 불수용 	<p>동작구 노량진 캅잡 거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보도 폭(최소2.5m) 대지경계선 - 셀터기준 - 거리가게 크기 규격화 (2.15mx2.3mx2.3m) - 분전함 미 이전에 따라 분전함 커버 계획 - 사유신공원 부근 거리가게 2면 개방형
<p>사용자(보행자)</p> <p>거리가게인식변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판적 의식 - 사회적 상생방안 - 비위생적 시설 	<p>위생적인 시설</p> <p>보행로 공간의 쾌적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위생적인 내부환경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 배치가능구간 검토를 통한 보행로 쾌적성 증대 	<p>휴게공간</p> <p>보행공간의 쾌적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개선 시설배치를 통한 명품거리로의 재생 ✓ 노량진캅잡의 문화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시설에 대한 검토 진행, 인덕션 등 구매 - 내부환경 개선을 위한 디자인 자문 및 검토 - 휴게시설 및 셀터 등 보조 보행시설물 계획
<p>거리가게 업주 / 구청</p> <p>제한적 공간의 효율적인 System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 비품 파악 - 사용공간 극대화 - 전력, 수도 - 거리명소화 	<p>사용편의성 요구</p> <p>거리가게 관리편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적 공간을 위한 거리가게 크기 조정 ✓ 거리가게협회의와와 상생정책자문단을 통한 디자인검토 ✓ 기후조건 및 안전성을 위한 자문·협의 	<p>관리운영</p> <p>가로 안전성 및 관계성 확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가게 및 가로시설물 전력 및 수도 연결 검토 ✓ 도시재생과 상생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 가게대수의 최적 공간을 위해 물리환경 조사 후 최적 매대 크기 선정 - 가이드박스의 수도 시설화적용 등 환경 제공의 아이디어 모색

거리가게 디자인

거리조성 및 배치

03 구조물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1) 거리환경 및 판매구조물 문제점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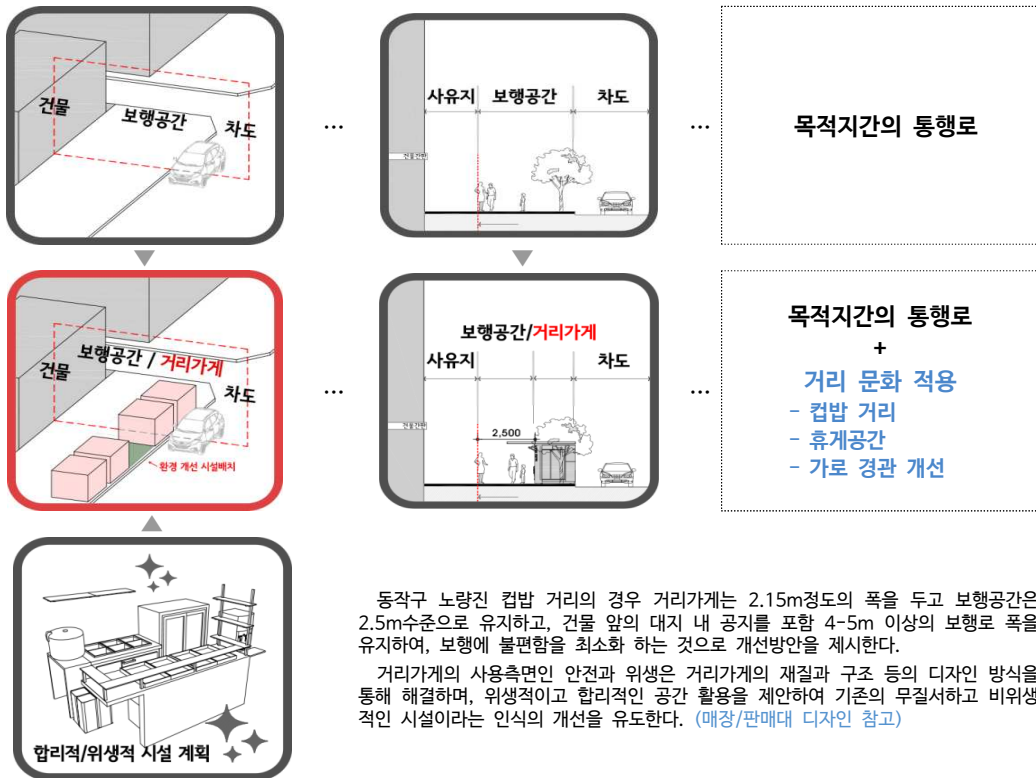
노량진역 주변의 기존구간과 이전 배치되는 과업구간 내의 현황을 종합하여 켄밥 거리가게가 즐비하게 배치된 현재 보행로는 거리환경, 보행자(사용자), 거리가게 운영의 세 가지 관점에서 그 문제점을 이야기 할 수 있다. 무질서한 거리가게의 배치와 임의적인 영업면적의 확장으로 보행공간의 밀도는 답답함을 가져오며, 유동인구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보행로는 공공보행로의 순기능과 안전한 보행의 도시질서가 무너지는 상황을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보행자는 보행불편에 대한 불쾌감을 유발하며, 노량진에 대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이 제고(提高)되어 도시전체의 악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의 거리가게의 구조는 천막구조와 화덕과 LPG를 사용하여 화재 등 안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환경 또한 식재료를 취급하는 거리가게의 위생측면에서 외기에 바로 노출되어 있으며 독립된 바닥이 아닌 보도 위에 영업은 지면과 밀접함에 따라 우수나 먼지에 취약하며, 거리가게 내 보관품의 과(過)적치, 외부로 노출되는 쓰레기통 등 무질서한 공간은 고스란히 외부로 노출되어 사용자에게 불쾌감을 준다.

(2)거리가게 판매구조물 개선방안

현 시대의 공간은 단일 역할만을 갖는 것이 아닌 복합적이며 동시적인 역할을 갖고 주변의 공간과 연계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균형이 중요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보행로의 개선 방식 또한 공간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거리가게의 디자인만의 개선방식 보다는 주변과 연계되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 동작구 노량진 컵밥 거리는 거리가게 부스 규모와 디자인의 기본방안 설정을 통해 도시 미관 개선 방안을 구성하며, 동시에 거리가게와 함께 휴게시설, 건축조명, 보도블록개선 등 거리문화로의 조성을 위한 환경 개선을 제시한다.

- 거리가게 문제점 개선방안



(3) 동작구 노량진 컵밥 거리 기본 구상(전략화)

	Agenda	Action Plan
	쾌적하고 편안한 거리	... - 보도개선을 통한 편안하고 쾌적한 거리제공
거리가게 사용자	보행로의 공간화	... - 보행로와 컵밥가게의 분리 - 쉼터, 셀터 등 점유 공간의 다채로운 활용
수강생	먹거리, 카페, 쉼터 등 휴식의 제공	... - 기존 먹거리와의 연계성을 위한 로드맵 제공 - 거리가게 환경 개선을 통한 위생적인 시설 제공

[거리이미지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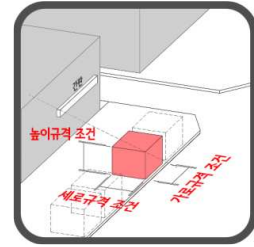
거리가게	쉼터(캐노피)	쉼터(휴게시설)	가이드박스	보도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격화/소형화 ✓ 컵밥특성 적용 ✓ 색상/재질/형태 모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과 조화 ✓ 거리가게이용 편리성 제공 ✓ 거리 이미지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목과 어우러진 휴식 ✓ 거리특성 적용 ✓ 점유 공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리 상징성 필요 ✓ 거리활성화 로드맵 ✓ 관리부스 적용(Contr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색 있는 디자인패턴 ✓ 안전한 보행로 ✓ 거리 이미지 변화

[보행로 시설 디자인 전략]

02 노량진 거리가게 디자인

(1) 부스의 규모

부스의 규격 조건인 가로, 세로, 높이에 대한 기준은 거리가게업주의 편의성과 거리상황과 연결 지을 수 있다. 거리가게를 운영하기 위한 비품의 배치를 통해 최소 조리공간을 측정하여 소형화하며, 보행로 너비 측정 자료를 통해 보행편의와 업주의 조리공간의 절충 규모를 선정한다. 또한 건축물의 간판노출을 위해 부스의 높이 또한 그 규모 선정 조건으로 한다. 동시에 구청 - 거리가게협회 등의 협의를 통해 규모를 산정하였으며, 배치수량과의 조율을 통해 최선의 규모를 선정함에 목적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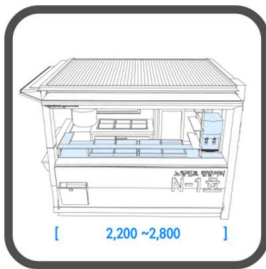
부스 규모조건

가로규격 조건	세로규격 조건	높이규격 조건
1. 지장 물건의 간격 조사 정보 + 2. 이전되는 거리가게 수량 + 3. 거리가게 비품 최적 배치안	1. 보행로 너비 조사 정보 + 2. 거리가게 비품 최적 배치안	1. 간판 높이 조사 정보 + 2. 셸터(캐노피) (보조시설) 설치 계획

✓ 거리보조시설과 구청의 거리가게 배치요구수량의 조건을 거리 지장 물건의 간격조사 정보를 기준으로 최적 배치를 위한 가로규격을 선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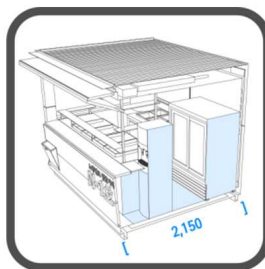
✓ 보행로 너비를 조사한 기준 데이터와 비품배치를 통해 거리가게 내부의 실효성을 검토하여 세로규격을 선정한다.

✓ 거리가게로 인해 건축물이 가려지지 않도록 간판높이를 기준으로 하며, 노량진은 셸터(캐노피)(캐노피) 설치에 따라 높이에 대한 규격을 선정한다.



가로규격 설정

- 거리가게 배치 대수 : 32대
- 거리가게 배치 가능구간 (지장 물 간격 조사)
- 거리가게 비품 배치 시 2.2m ~ 2.8m 가로길이 필요
- 전체 2.8m로 선정 (A구간 2.2m)



세로규격 설정

- 대지경계선을 제외한 보행로의 너비가 2.5m 수준으로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거리가게 비품 배치시 2.15m의 세로길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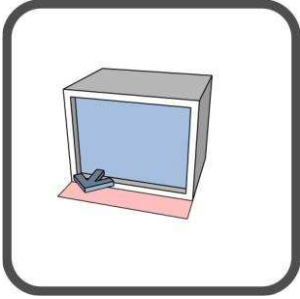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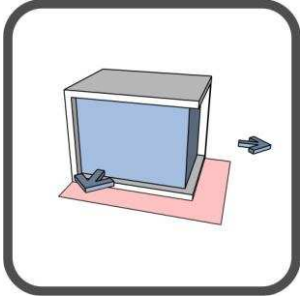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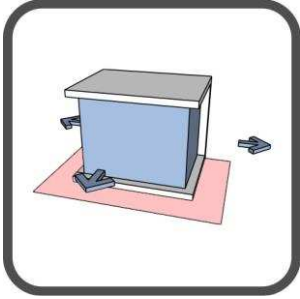


높이규격 설정

- 과업구간 내 최소 간판높이 2.45m
- 2.4m 제한높이 설정(셸터)
- 환풍기 등 설비 문제 해결감안 하여 부스높이 설정

(2) 형태 및 수량 산정

주변 환경과 조건에 맞춰 부스의 규모가 선정되면, 이에 맞춰 거리가게의 활용에 최적 안을 선정하여 거리가게의 형태를 선정한다. 활용방식에 대한 분류는 거리가게의 동시 이용자가 얼마나 확보/유지되는지에 대한 검토에서 시작한다.

1면 개방형식	2면 개방형식	3면 개방형식
		
개방형식	개방형식	개방형식
■ : 매대의 노출면 ■ : 점유되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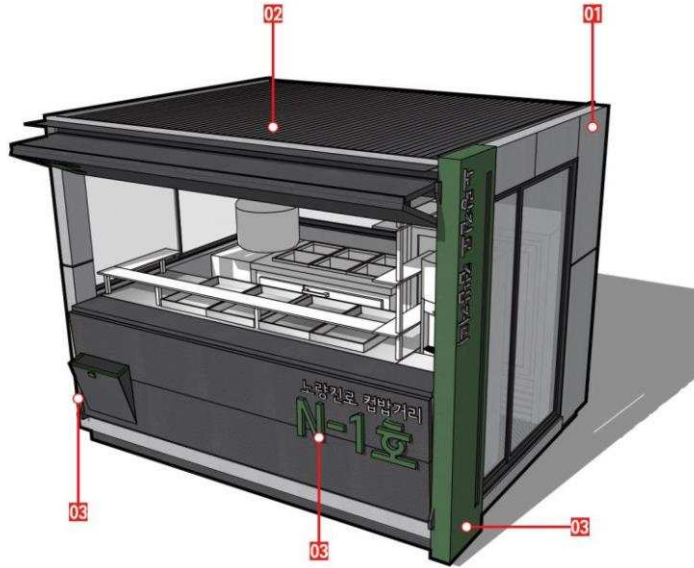
형태별 장·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의 거리가게운영방식 ✓ 좁은 보행로 활용이 용이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시이용자 조리효율 증대 ✓ 측면공간 - 시설 연계가능 ✓ 모듈조합 활용이 가능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시이용자가 최대 ✓ 측면공간 - 시설 연계가능 ✓ 모듈조합 활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시이용자가 적다. ✓ 단순 모듈조합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면 공간 사용으로 보행 공간 점유량 상대적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면 공간 사용으로 보행 공간 점유량 많음 ✓ 보행로 노출면을 전체 활용함에 따라 업주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다.

거리가게 형태와 디자인 고려사항							
동시이용자확보	심터와 연계	소형화	인지성	모서리활용 가능	보행로 점유 최소화	특이성	디자인용이성

업주에게 있어 동시이용자는 생업과 관련된 중요한 지표이며, 보행환경에 대해서는 거리가게 이용자가 얼마나 보행로를 점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보행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동시이용자의 적정 수는 거리가게와 보행환경의 상황에 맞춰 조절되어야 한다. 과업구간의 경우 거리가게의 크기가 타 지역에 비해 크고, 보행환경의 개선을 우선사항으로 1면 개방형식을 통한 거리환경 개선방식을 택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노량진역에서 먼 블록은 2면 개방형식을 활용하여 동시이용자수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합리함에 대응하였다.

(1면 개방형 20개소 / 2면 개방형 10개소)







(3) 제작 재질 및 컬러 선정



[재질 및 컬러 선정]

01. 외부구조색1	02. 외부구조색2	03. 강조색	특수무늬 도료(제안)
외부구조색의 경우 주변 색상과 어우러질 수 있는 색상으로 선정	오염가능성이 높은 곳에 대해 질은 색상선정 오염 노출 최소화	무채색의 구조색과 대비하여 강조될 수 있는 고-중채도의 색상을 사용	광택이 심한 재료보다는 재질감이 있는 재료를 통해 고급화

동작구 노량진 컵밥 거리 지정색상 - 강조색

					
에폭시 폴리에스터 일반용 EX8816 -RD0002-H	에폭시 폴리에스터 일반용 EX8816(S) -RL6011	에폭시 폴리에스터 일반용 EX8816-4PB4 10(HDPM)	에폭시 폴리에스터일반용 EX8816-RD0002-H	특수무늬 TEXTURE EX4505(S)-TX -GY303	특수무늬 Texture EX4505(S)-TX -GY304

[외부벽체]	[내부벽체]	[바닥]	[지붕]
외부벽체는 EGI 1.2T로 제작하며 지정색으로 도장 - 구조색은 특수무늬분체도료 사용	설치 내부마감은 컬러 철판 사용 - 단열재는 불연재 소재인 미네랄울 사용	방수합판1.2T위 3.2T철판 사용 - 조리 시 미끄러움을 방지 - 위생 고려	EGI 1.2T로 제작하며 지정 색으로 도장 - 연결부위에 물이 새지 않게 용접하여야 하며 방수재료 방수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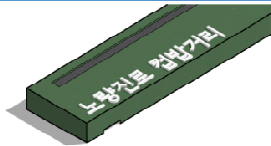
(4) 외부표현방식 및 매대 배면 활용방안



[외부표현방식 및 배면활용]

전체적인 외관의 표현은 실용적인 디자인을 위해 장식요소를 배제하고, 텍스트의 배치와 크기 색상들을 통해 디자인
 *디자인 텍스트에 대한 절대규격은 없으나, 색상과 비례 제안(서울 남산체 사용)

01. 강조기둥 (TEXT LED)



EGI강판 1.6T를 통해 두께감있는 기둥형태로 디자인
 '노랑진로 컵밥 거리(예시)'
 거리가게 부스 명을 측면에 표기하여 보행자가 동일한 형태의 거
 리가게 속에서도 목표로 하는 거리가게를 찾아가기 쉽게 한다.

02.메뉴간판 (TEXT L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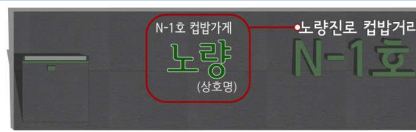
*메뉴패널은 각 거리가게에 맞게 제작
 2단 접이식 셔터를 접어 올렸을 때,
 사용자가 인식하기 쉬운 셔터에 메뉴표기

03. 강조패널 (좌측면)



거리가게의 구간별 컬러Zone표현

04. 부스명 리번호



텍스트(예시)의 비례/색상을 통해 매대 전면부 디자인

05. 거리가게 배면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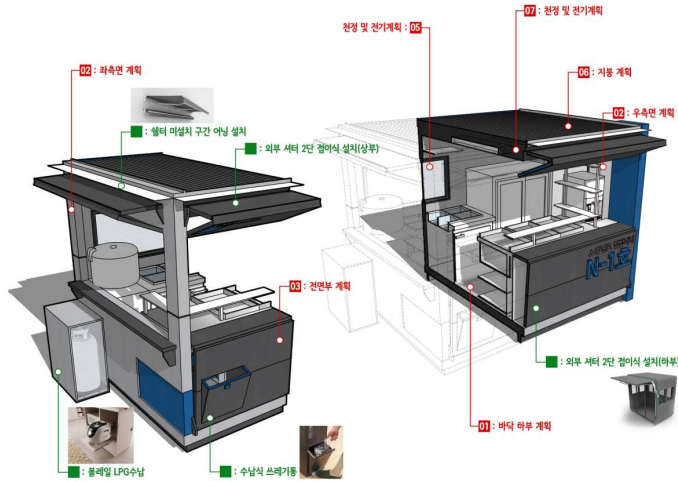


- 디자인 방향

거리가게 전체 30개소의 일렬배치에 따라 각 거리가게의 모듈을 이용하여 패턴디자인
 Rectangle Dot의 상승 그래데이션을 통한 리듬감을 부여하고 거리경관에 이미지 부여

(5) 매대 디자인 및 내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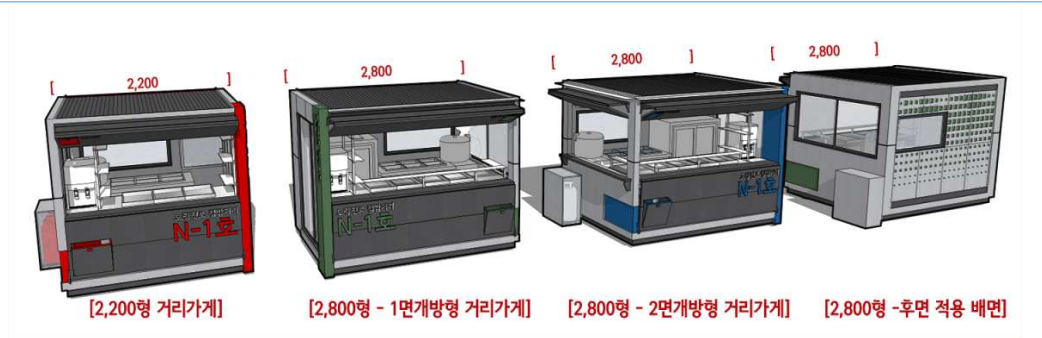
기본설계 거리가게 디자인 제작 계획



[매대 요소별 디자인]

- : 거리가게 적용 아이템
- : 노출면 계획 고려사항

과업구간 내 배치되는 거리가게



[거리가게 배치 계획부스]

(6) 매대 프레임 및 구조 설계 계획

매대 프레임 및 구조 설계 계획

01. 바닥 및 하부 제작 고려사항

- ✓ 프레임은 75x45x2.3T 파이프 3.0T철판 제작/보강철 50x50x2.3T파이프사용
- ✓ 발통(바위 및 조철좌)은 판매대를 지탱 할 수 있게 제작하되 80mm가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 도장은 분체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 ✓ 바닥재는 방수합판1.2T위에 3.2T체크 판으로 한다
- ✓ 연결부위는 그라인딩하고 지정색으로 도장한다.
- ✓ 기타 조립 시 흠 등은 도면에 지정한 위치에 정확히 가공한다.

03. 전면부 제작 고려사항

- ✓ 쇼바 문은 작동이 용이하도록 제작하며 경첩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잠금차와 손잡이를 적용한다.
- ✓ 외부벽체는 EG 1.2T로 제작하며 지정색으로 도장한다.
- ✓ 외부 셔터는 2단 접이식 철판으로 제작(경첩 및 가스 쇼바 적용)
- ✓ 모든 연결부위의 방수처리는 완벽하게 한다.
- ✓ 외부 셔터는 시간장치 각 1EA 설치
- ✓ 외부 상부간판(상부셔터)는 아크릴 ED로 한다.

05. 배면부 제작 고려사항

- 외부벽체는 EG 1.2T로 제작하며 지정색으로 도장한다.
- 내부벽체는 EG 1.2T를 사용하여 제작하며 지정색으로 도장한다.
- 모든 연결부위의 방수처리를 완벽하게 할 것
- 단열재는 불연재 소재인 미네랄울로 설치 내부마감은 컬러 철판을 사용한다. *화재 고려

07. 천정 및 전기 계획 고려사항

- ✓ 형광등 원형 6인치 LED 매입등을 내부 천정에 설치한다.
- ✓ 콘센트 및 스위치는 누전이 되지 않도록 전선관(절연튜브)는 필히 사용한다.
- ✓ (2구 접지콘센트 기본 3EA설치, 스위치 2구1로 스위치설치)
- ✓ 분전함은 천정에 매입하며 10KW 5회로로 시공한다.
- ✓ (누전차단기 30A, 전원차단기 50A)
- ✓ 환풍기(음식열기 및 냄새제거고려)는 벽걸이형태로 설치한다.

02. 좌측면 제작 고려사항

- ✓ 쇼바 문은 작동이 용이하도록 제작하며 경첩이 보이지 않도록 하고 잠금장치와 손잡이를 적용한다. *측면부 활용 거라기계하당
- ✓ 외부벽체는 EG 1.2T로 제작하며 지정색으로 도장한다.
- ✓ 외부 셔터는 2단 접이식 철판으로 제작(경첩 및 가스쇼바 적용)한다.
- ✓ 모든 연결부위의 방수처리는 완벽하게 한다.
- ✓ 외부 셔터는 시간 장치 각 1EA 설치한다.
- ✓ 1면 개방형의 경우 환기량은 115mm 알루미늄 사시(미닫이)로 하고 지정색으로 도장한다. *폴리카보네이트 5T
- ✓ LPG보관함은 외부에서 인입하며, 시간장치 1EA 설치한다.
- ✓ 외부 계량기함을 설치한다.

04. 우측면 제작 고려사항

- ✓ 출입문은 미닫이문으로 제작하고 잠금장치와 손잡이를 적용한다.
- ✓ 외부벽체는 EG 1.2T로 제작하며 지정색으로 도장한다.
- ✓ 모든 연결부위의 방수처리는 완벽하게 한다.
- ✓ 분할 소화기 또는 벽걸이용 간이소화기걸이를 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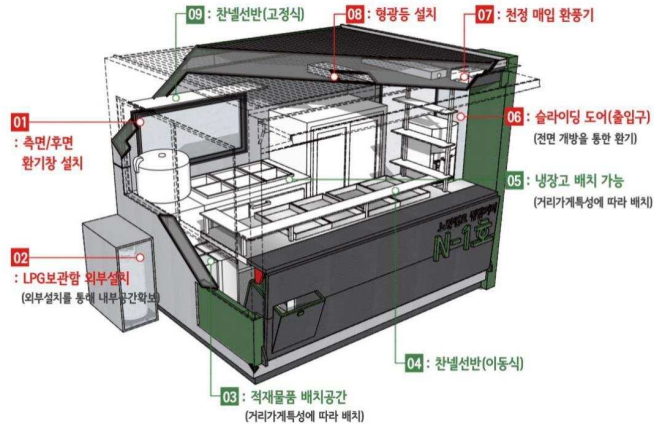
06. 지붕 제작 고려사항

- 기둥은 EG 1.6T로 제작하며 지정색으로 도장한다.
- 기둥고정용 조절용 볼트는 M24-200으로 한다.

08. 잠금시 고려사항

- ✓ 접이식 셔터방식에 대한 Detail(누수, 사용)고려한다.
- ✓ 과도한 어닝의 돌출, 천막 기림막 사용은 제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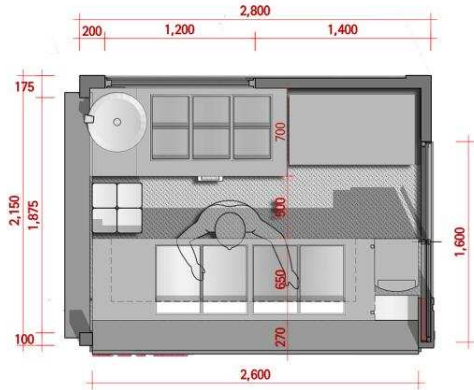
(7) 거리가게 내부계획



- 인터뷰 및 현장조사를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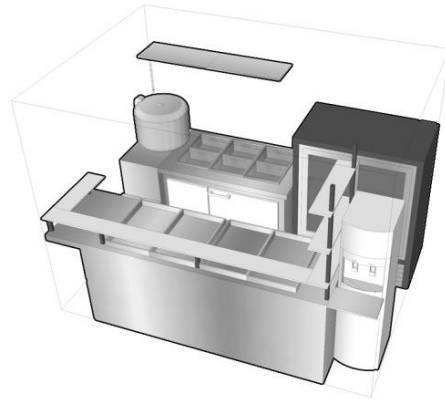
- : 공간개선 항목
- : 환경개선 항목

2,800형 거리가게(기본형)



- 1면 개방안 적용을 위해 전면은 매대로 구성하고 측면을 통한 출입으로 계획
- 단순동선계획으로 효율적인 조리 동선을 유도하며 보관공간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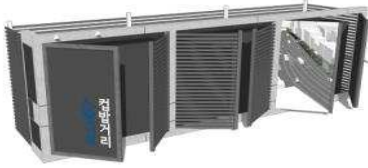
2,800형 거리가게(비품배치)



- 개구부를 제외한 벽체를 이용하여 선반 및 비품보관
- 전면 화덕하부 비품선반 확보
- 진열장을 화덕 위로 위치하여 식대 공간 확보

(8) 거리활성화 및 경관 개선 시설물(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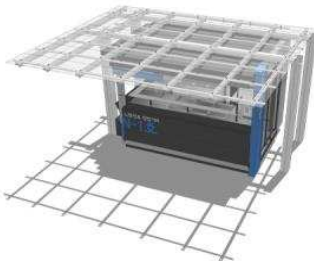
*주조색1,2 색상 거리가게 참고



[분전함 커버 사인보드]

- 규격 : -
- 디자인 방향 : 무게감 있는 색상과 형태비율을 통한 거리상징물 제작
- 제작방식 : 구조용 각관 +EGI 강판(특수무늬 분체도장)

색상	주조색1	주조색2	강조색	보조색
			-	-



[쉼터(캐노피)]

- 규격 : ver x 3.65m x 2.45m(단일모듈)
- 디자인 방향 : 얇은 부재의 결합방식을 통한 디자인
- 제작방식 : 철판조(특수무늬 분체도장) + 강화유리

색상	주조색1	주조색2	강조색	보조색
		-	-	-



[거리쉼터]

- 규격 : 4.50m x 2.70m x 2.45m(단일크기)
- 디자인 방향 : 개방형 파빌리온
- 제작방식 : 구조용 각관 +EGI 강판(특수무늬 분체도장), 조경블록

색상	주조색1	주조색2	강조색	보조색
			-	-



[가이드박스]

- 규격 : 2.80m x 3.65m x 2.45m(단일모듈)
- 디자인 방향 : 심플 박스형태 / 내부(싱크대 및 수전, 메인계량기)
- 제작방식 : 구조용 각관 +EGI 강판(특수무늬 분체도장)

색상	주조색1	주조색2	강조색	보조색

(9) 경관 개선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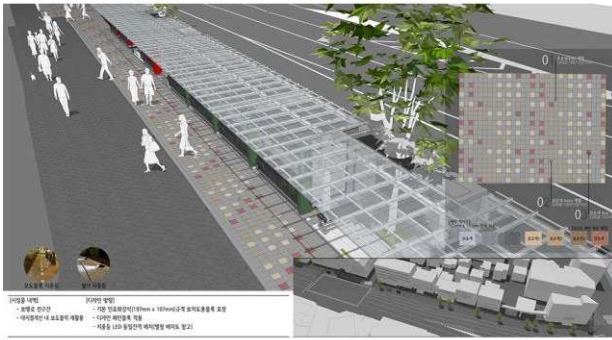
경관 조명 및 셸터(캐노피) 조명계획



- 외도광 조명**
- 보도주변 조명 LED 조명 계획
 - 가로등 조명 LED 조명 계획
 - 건물 조명 LED 조명 계획

- 내도광 조명**
- 건물 조명 LED 조명 계획
 - 가로등 조명 LED 조명 계획
 - 건물 조명 LED 조명 계획

보도블럭 패턴 계획



- 외도광 조명**
- 보도주변 조명
 - 가로등 조명
 - 건물 조명

- 내도광 조명**
- 건물 조명
 - 가로등 조명
 - 건물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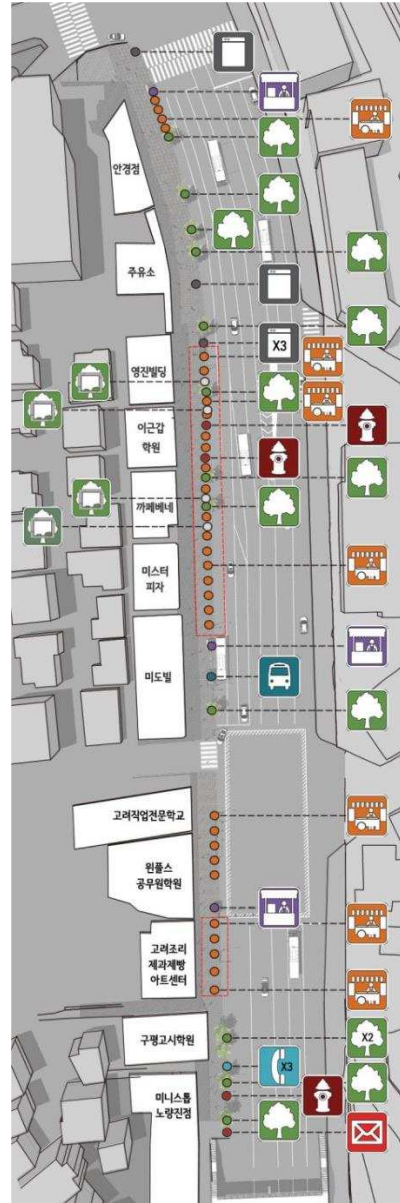
전기, 수도 계획



- 외도광 조명**
- 보도주변 조명
 - 가로등 조명
 - 건물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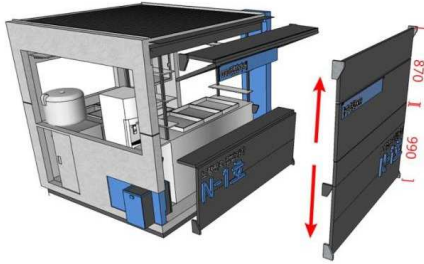
- 내도광 조명**
- 건물 조명
 - 가로등 조명
 - 건물 조명

컵밥거리 시설계획



(10) 매대 전면 설계제안

매대 전면 설계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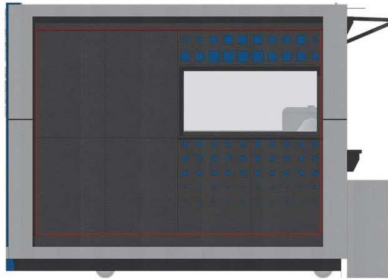
[셔터활용]

2단 접이식 셔터를 상하부 설치하여 상부 셔터는 어닝을 겸하고 하부는 식대 역할을 겸하도록 이중기능을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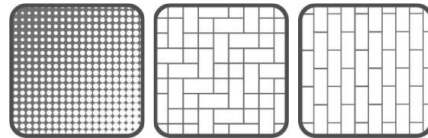
[그림59-61] 전면캐노피방식

거리가게의 전면은 가게의 홍보와 판매물품의 거래 및 취식이 이루어지는 활성화된 공간으로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제한적인 크기에 거리가게를 구성하는 기능은 다양성을 갖춰야 한다.



[배면 디자인]

리듬감 있는 패턴 및 색상을 통해 배면 디자인 제안



[그림62-64] 배면 패턴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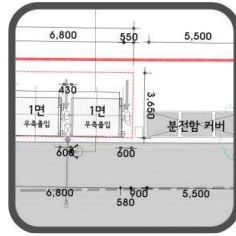
거리가게의 반복적인 배치와 모듈화된 거리가게에 맞춰 각 배면의 패턴디자인 혹은 광고 패널을 통해 거리가게 배면의 인지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노량진 컵밥 거리의 경우 기본패턴에 색채변화를 통해 리듬감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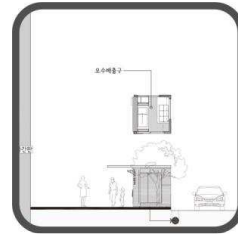
(10) 거리가게 설치 방식



[조절과 적용]



[거리가게 이격]



[오수관로 연결]

바닥으로부터 80mm이격을 통해 거리가게 내부로 우수나, 기타 이물질이 내부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거리가게를 이동할 때 지게차 활용에 용이하도록 한다.

거리가게 사이를 600mm이상 이격하여 배치하여 측면 출입과 동시에 측면으로의 환기가 용이하게 한다. 또한, 거리가게 업주의 서비스 공간으로의 활용도 가능케 한다.

각 거리가게 별로 F.D를 설치하여 기존오수관로와 연결을 통해 거리가게 내부의 이물질을 배출한다.

거리가게 하부 오수관로 연결 계획



[사입을 내면]
- 중심구간 내 1개소 (2.40m x 1.8m x 2.3m)

[내면 내면]
- 공공시설에 제한하여 거리가게 개발사용 권역 관리
- 공공시설대를 통한 수도 연결
- 거리가게 개별 F.D 설치

거리가게 하부에 오수관로를 연결하여 우수 처리 / 분전함 설치 후 가이드박스 내 계량기를 통해 전력 관리

(11) 재질 선정

거리가게 디자인 및 보조시설 참고

“다양한 형태의 가공성과 유지관리가 우수 재료 선정”



EGI강판 위 분체도장

CR제품(냉연강판)을 소재로 전기 도금법을 이용해 표면에 얇고 미려한 도금층을 만들어 내식성을 높인 재질로서, 균일하고 치밀하게 도금된 상태이므로 도장 및 도장 후 내식성이 우수하다. 또한, 도금층이 상온에 가까워 원판의 재질 특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생산 제품의 재질 선택의 폭이 넓고 가공성이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게 제작에 적합한 재료라 할 수 있다. 분체도료를 통한 다양한 색상적용이 가능하며, 관리가 용이하다.

거리가게 재질 선정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지관리의 용이성 - 도심의 먼지나, 음식물로 인한 청결과 보수의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상 가공의 용이성 - 지역정체성을 잘 나타내는 디자인의 자유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성 - 타 재료 대비 자재비가 경제적인 재료의 선정
--	--	---

거리가게 규격 선정

“주변환경과 거리가게 내부환경의 절충적 규모의 선정”

가로규격 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장 물에 의한 최대너비활용 가능 조사 ✓ 매대의 최적 활용 공간의 조사 ✓ 거리가게 배치 수량과 환경의 절충 규격 선정
세로규격 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로 너비 조사 - 보행환경과 매대의 절충 규격선정 ✓ 매대의 최적 활용 공간 조사(조리대-조리 공간-보관공간)
높이규격 조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간판높이를 제한적 기준으로 선정(상권침해) ✓ 보조시설(셀터(캐노피)) 계획 시 절충 규격 선정

(12) 외부표현방식 및 매대 배면 활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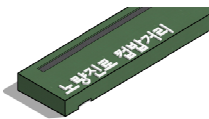
강조 기둥 텍스트 규격



[외부표현방식 및 배면활용]

전체적인 외관의 표현은 실용적인 디자인을 위해 장식요소를 배제하고, 텍스트의 배치와 크기 색상들을 통해 디자인
 *디자인텍스트에 대한 절대규격은 없으나, 색상과 비례 제한(서울남산체 사용)

01. 강조 기둥 텍스트 규격



'노량진로 컵밥 거리(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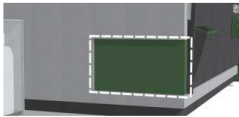
[대체 텍스트]
000컵밥가게

02.메뉴간판 (TEXT L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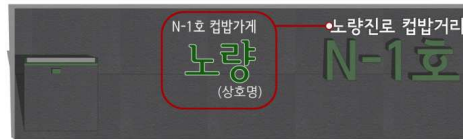
*메뉴패널은 각 거리가게에 맞게 제작

03. 강조패널 (좌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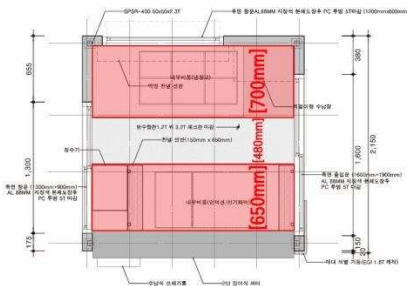
거리가게의 구간별 컬러Zone표현

04. 부스명 관리번호



텍스트(예시)의 비례/색상을 통해 매대 전면부 디자인

05. 내부 비품 배치 규격



[650mm] 너비 전면 비품 :
전열기 비품 (전기화덕, 어묵조리기, 정수기, 등)

[700mm] 너비 후면 비품 :
업소용 밥솥, 업소용 냉장고, 전열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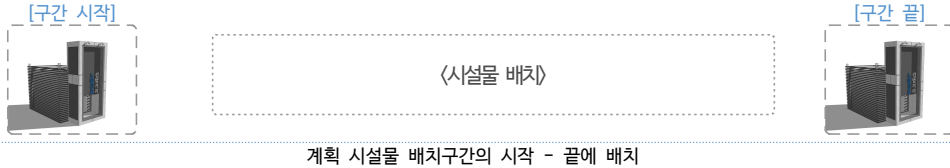
[480mm] 조리공간

(13) 시설별 확장 개념도



거리가게배치 특성 상 형태의 반복에 의한 모듈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적용시설물의 점(點)적 배치를 통한 확장시작점의 기준으로의 배치를 하거나, 거리가게처럼 밀집된 배치를 통해 면(面)적 배치를 통해 시각적인 확장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 거리가게의 확장을전략화 한다.

사인보드를 통한 구간 설정



모듈반복 배치를 통한 확장



배치 시설물을 기준으로 한 구간 연계



모듈반복 배치를 통한 확장



해외 사례 (조례 및 가이드라인)

01 후쿠오카 조례 및 시행규칙

후쿠오카시 포장마차 기본조례

목차

제1장 총칙(제1조-제6조)

제2장 공공공간에 있어서의 포장마차영업

제1절 포장마차영업에 관련되는 허가(제7조)

제2절 시 도로 등에 있어서의 포장마차영업(제8조-제15조)

제3절 공원에 있어서의 포장마차영업(제16조)

제3장 시정 조치 등

제1절 지도 및 공표(제17조·제18조)

제2절 시 도로 등에 있어서의 포장마차에 대한 조치(제19조-제23조)

제3절 공원에 있어서의 포장마차에 대한 조치(제24조)

제4장 포장마차영업 후보자의 공모, 결정 등(제25조-제28조)

제5장 포장마차영업에 관한 기타의 사항(제29조-제32조)

제6장 잡칙(제33조-제36조)

부칙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조례는 포장마차가 후쿠오카의 거리에 변화함이나 사람들의 교류의 장소를 창출하고, 관광 자원으로서의 효용을 활용하는 것을 근거, 포장마차의 효용 활용 및 포장마차영업의 적정화에 관해 기본이념을 정하고 시, 포장마차 영업자 등 및 이용자의 책무를 밝히는 동시에 공공 공간에 있어서의 포장마차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포장마차의 효용을 높이고 활용하는 동시에, 그 전제가 되는 적절한 포장마차영업을 확보하는 것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 공간 및 양호한 공중위생의 확보를 꾀하고, 따라서 포장마차가 시민, 지역 주민 및 관광객에게 친숙하고, 후쿠오카 도시와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2조 포장마차의 효용 활용 및 포장마차영업의 적정화는 시 및 포장마차영업자 등(포장마차영업자 및 포장마차영업 종사자를 말한다.

(이하 동일)이 서로 제휴하면서 각각의 책무와 역할을 다하는 것에 의해, 포장마차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1) 시민, 지역 주민 및 관광객에게 이해되어지고 사랑받는 포장마차

(2) 관광 자원으로서 후쿠오카시를 홍보할 수 있는 포장마차

(3) 도시에 변화함이나 사람들의 교류 장소를 창출하는 도시의 장치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포장마차

(정의)

제3조 이 조례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내거는 용어의 의미는, 각각 해당 각호에 정하는 것에 따른다.

(1) 포장마차

도로운송 차량법 (1951년 법률 제185호) 제2조 제4항에 규정하는 경 차량에 음식점영업(식품 위생법 시행령 (1953년 정령 제229호) 제35조 제1호에 규정하는 음식점영업을 말한다. 다음호에 있어서 같다.)을 위한 설비를 비치한 것으로 한다.

(2) 포장마차영업

포장마차를 일정한 시간,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하는 음식점영업을 말한다.

(3) 포장마차영업자

포장마차영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포장마차영업 종사자

포장마차 영업자이외의 자로 포장마차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한다.

(5) 시 도로 등

도로법 (1952년 법률 제180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도로이며 시가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공원

도시공원법(1956년 법률 제79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도시공원이며 시가 관리하는 것이다.

(7) 시 도로 등 점용 허가

포장마차영업을 하기 위한 도로법 제32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 도로 등의 점용 허가를 말한다.

(8) 도로사용 허가

포장마차영업을 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1961년 법률 제105호)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사용 허가를 말한다.

(9) 공원점용 등 허가

포장마차영업을 하기 위한 도시공원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허가 및 후쿠오카시 공원조례 제4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에 있어서의 행위의 허가를 말한다.

(10) 음식점영업허가

포장마차영업을 하기 위한 식품 위생법 (1947년 법률 제233호)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를 말한다.

제4조 시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포장마차의 효용을 높이고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 외, 포장마차영업에 관한 법령, 조례 및 규칙 (이하 「관계 법령 등」이라고 말한다.)이 준수되도록 포장마차영업자 등의 지도 감독, 포장마차의 적절한 이용 촉진, 수도, 하수도 등의 환경 정비 기타 포장마차영업의 적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포장마차영업자 등의 책무)

제5조 포장마차영업자 등은 포장마차영업을 하는 것에 있어 규칙으로 정하는 포장마차영업을 하는 것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비롯해 관계 법령 등을 준수.

2 포장마차영업자 등은 포장마차영업을 하는 것에 있어 포장마차를 이용하는 사람 (이하 「이용자」라고 말한다.)에 대해 안전한 음식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포장마차의 매력을 높이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포장마차영업자 등은 포장마차영업을 하는 것에 있어 포장마차영업을 하는 장소의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배려하는 동시에, 지역의 청소 활동에 참가하는 등 지역에서의 공헌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용자의 책무)

제6조 이용자는 포장마차영업이 행해지는 장소의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배려하여 포장마차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이용자는 포장마차영업의 적정화에 협력,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장 공공공간에 있어서의 포장마차영업

제1절 포장마차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허가

제7조 시 도로 등 및 공원에 있어서 포장마차영업을 경영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내세우는 장소의 구분에 따르고 해당 각호에 정하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1) 시 도로 등

시 도로 등 점용 허가, 도로사용 허가 및 음식점영업허가

(2) 공원

공원 점용 등 허가 및 음식점영업허가

제2절 시 도로 등에 있어서의 포장마차영업
(시 도로 등 점용 허가의 신청)

제8조

시 도로 등 점용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다음 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 있어서 「신청자」라고 말한다.)은 도로 법 제3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신청서의 이의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 도로 등 점용 허가의 기준 등)

제9조 시장은 신청자 (다음 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갱신 신청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동일에 있어서 같다.) 의 신청 내용이 도로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할 경우에 해당할 경우이며, 그 다음에 내거는 기준의 어느 것에도 적합할 때에 한하여, 시도로 등 점용 허가를 주는 것으로 한다.

(1) 신청자가 다음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

가) 후쿠오카시 폭력단 배제 조례 (2010년 후쿠오카시조례 제30호)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 단원

나) 후쿠오카시 폭력단 배제 조례 제6조에 규정하는 폭력단 또는 폭력 단원과 가까운 관계를 소유하는 사람

(2) 신청자가 다음 어느 것에 해당할 경우.

가) 이 조례의 시행 날에 있어 시도로 등 점용 허가를 받고 있는 포장마차영업자 (이하 「현영업자」라고 말한다.)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가운데 같은 날 및 신청 날 (현영업자가 사망하고 있을 경우, 현영업자가 사망한 날. 다음호 다)[가])에 있어서 같다.)에 있어, 주로 현영업자가 경영하는 포장마차영업에 의한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포장마차영업 종사자 (그 사람이 2명이상일 경우는, 그 속의 1명에게 한한다.)

나) 제25조 제1항에 규정하는 포장마차영업 후보자

(3) 시도로 등 점용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장소가 다음 어느 것에 적합할것.

가) 포장마차를 설치한 후의 보도 유효폭이 2미터이상 확보되는 것.

나) 시각장애인유도용 블록이 설치되고 있는 보도에 있어서는 설치한 후 포장마차가 해당 블록으로부터 0.6미터이상 떨어지는 것.

다) 다음 내용의 구분에 따르고, 각각 정하는 장소인 것.

(가) 전호 가)에 해당하는 사람
현영업자가 신청의 날에 실제로 시도로 등 점용 허가를 받고 있는 장소

(나) 전호 나)에게 해당하는 사람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장소

(4) 신청자(제2호 가)에 해당하는 사람(현영업자가 사망하고 있을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동일인에게 해당하는 사람에게 한한다.)의 신청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행해지고 있는 것.

2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시도로 등 점용 허가를 주려고 할 때는 미리 해당 시도로 등 점용 허가에 관계되는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라고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시 도로 등 점용 허가의 갱신 기준 등)

제10조 시장은 신청자 가운데 현재 받고 있는 시 도로 등 점용 허가의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되고 해당 시 도로 등 점용 허가를 받은 장소에 있어서 시 도로 등 점용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하 항에 있어서 「갱신 신청자」라고 말한다.)의 신청 내용이 도로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할 경우에 해당할 경우이며, 그 다음에 내거는 기준의 어느 것에도 적합할 때에 한하여, 시 도로 등 점용 허가를 주는 것으로 한다.

(1) 갱신 신청자가 다음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

가) 전 조 제1항 제1호 또는 나)에 해당되는 사람

나) 현재 받고 있는 시 도로 등 점용 허가의 기간 내에 관계 법령 등의 규정 또는 이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에 위반한 것에 의해, 2회 이상 제17조 제2항의 경고서에 의해 지도를 받고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시 도로 등 점용 허가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是正)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2) 갱신 신청자가 제15조 제2호 규정에 의해 영업중지 신고를 한 포장마차영업자일 경우에도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일 것

(3) 계속적으로 시 도로 등 점용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장소가 전조 제1항 제3호 나) 및 이의 어느 것에 적합할 것

2 전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시 도로 등 점용 허가에 대해 준용한다.

(시 도로 등 점용 허가의 조건)

제11조 시장은 시 도로 등 점용 허가를 줄 때는 도로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곳에 의해 포장마차의 규격, 점용 시간 기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위험을 방지 또는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附 하는 것으로 한다.

2 시 도로 등 점용 허가의 기간은 1년 이내로 시장이 정한다.

(도로점용 허가서 등)

제12조

시장은 시 도로 등 점용 허가를 줄 때는 신청자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곳에 의해 도로점용 허가서 및 도로점용 허가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한다.

2 시 도로 등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 (이하 「시도등 허가 점용자」라고 말한다.) 는 포장마차영업을 하는 것에 있어 전항의 도로점용 허가서를 휴대하고 전 항의 도로점용 허가증을 포장마차에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시도로 등 허가 점용자에 의한 포장마차영업 등)

제13조 시도로 등에 있어서의 포장마차영업은 시도로 등 허가 점용자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시도로 등 허가 점용자는 시 도로 등 점용 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점용료의 납입)

제14조 시도로 등 허가 점용자는 후쿠오카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규정을 따라 점용료를 납입해야 하다.

(변경 또는 폐지 등의 신고)

제15조 시도로 등 허가 점용자는 다음의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것에 의해 신속하게 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 (1) 제8조에 규정하는 신청서 또는 서류의 내용으로 변경이 있을 때
- (2) 포장마차영업을 1개월 이상 기간에 걸쳐 중지할 때.
- (3) 포장마차영업을 폐지할 때.

제3절 공원에 있어서의 포장마차영업

제16조 전절 (제9조 제1항 제3호 가) 및 나) , 제2항 및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공원에 있어서의 포장마차영업에 대해서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 제8조,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 제2항중 「시도로 등 점용 허가」라는 것은 「공원점용 등 허가」와 동일 항목의「1년」이라는 것을「6개월」,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및 제13조 제2항 중 「시도로 등 점용 허가」라고 있는 것은 「공원점용 등 허가」라고 다른 음으로 읽는 것으로 하는 것 이외의 필요한 기술적인 것은 규칙으로 결정짓는다.

제3장 시정조치 등

제1절 지도 및 공표

(지도)

제17조 시장은 포장마차영업자 등이 관계 법령 등의 규정 또는 이 규정에 의한 허가에 附 한 조건에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포장마차영업자 등에 대하여 위반 행위의 태도, 위반의 정도, 과거의 지도 상황 등에 따라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해 지도를 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도로 등 점용 허가 또는 공원점용 등 허가에 관계되는 지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에 의해 구두, 주의서 또는 경고서에 의해 하는 것으로 한다.

(공표)

제18조 시장은 포장마차영업자 등에 관계되는 관계 법령 등의 규정 및 이 규정에 의한 허가에 附 한 조건 및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항의 준수 상황에 대해 규칙으로 정함에 의해 포장마차영업자마다 공표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를 하려고 할 때는 포장마차영업자에 대하여 미리 그 취지를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를 하는 것으로 한다. 단, 해당 포장마차영업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고 의견의 청취에 응하지 않을 때 또는 해당 포장마차영업자의 소재가 불분명해서 통지할 수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절 시 도로 등에 있어서의 포장마차에 대한 조치

(시 도로 등 점용 허가의 효력 정지)

제19조 시장은 시 도로 등 허가 점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할 경우는 도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해당 시도로 등 허가 점용자에게 관계되는 시도로 등 점용 허가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으로 한다.

- (1) 제17조 제2항의 경고서에 의한 지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동일 항목의 경고서에 의한 지도를 받았을 경우
- (2) 도로사용 허가의 효력이 정지되었을 경우

(시도로 등 점용 허가의 취소)

제20조 시장은 다음 각호 어느 것인가에 해당할 경우는 도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시도로 등 허가 점용자에게 관련하는 시도로 등 점용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한다.

- (1) 시도로 등 허가 점용자가 다음 어느 것인가에 해당했을 경우
 - 가) 전조의 규정에 의해 시도로 등 점용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동일 각조 각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했을 때.
 - 나) 제9조 제1항 제1호 가) 및 나) 어느 것인가에 해당했을 때.
 - 다) 제1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
 - 라) 도로사용 허가 또는 음식점영업허가를 취소되었을 때.
- (2) 시도로 등 점용 허가를 받은 장소가 제9조 제1항 제3호 (다)를 제외함.) 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경찰서장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제21조 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시 도로 등 점용 허가의 효력을 정지하고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해 시도로 등 점용 허가를 취소하려고 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도로 등 허가 점용자에게 관계되는 도로사용 허가를 한 경찰서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한다.

(시 도로 등에 관한 공사 등에 의한 포장마차의 이전 등)

제22조 시장은 포장마차가 시 도로 등에 관한 공사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는 도로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시도로 등 허가 점용자에 대하여 해당포장마차의 이전을 명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장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전항 (제24조에 있어서 준용할 경우를 포함한다.) 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해 포장마차를 이전하기 위해서 시도로 등 점용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또는 동일 항의 공사 종료 후에 이전전의 장소에 있어서 시 도로 등 점용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신청 내용이 도로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할 경우에 해당할 경우이며 제9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제3호 (다)를 제외한다.) 의 기준에 적합할 때는 시도로 등 점용 허가를 줄 수 있다.

3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로 등 점용 허가에 대해 준용한다.

4 포장마차영업자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해 포장마차 이전에 관해서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 및 손실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

(제거명령)

- 제23조 시장은 포장마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할 경우는 도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포장마차의 제거를 명하는 것으로 한다.
- (1) 시도로 등 점용 허가를 받은 일이 없고 포장마차영업을 하기 위해 시도로 등을 점용하고 있을 때.
 - (2)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제3절 공원에 있어서의 포장마차에 대한 조치

제24조 전절 (제19조 제2호, 제20조 제2호, 제21조, 제22조 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공원에 있어서의 포장마차에 대한 조치에 대해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항 내지 제23조 제1호 중 「시도로 등 점용 허가」라고 있는 것은 「공원점용 등 허가」라고 다른 음으로 읽는 것으로 하는 것 이외에, 필요한 기술적 음독은 규칙으로 결정짓는다.

제4장 포장마차영업 후보자의 공모, 결정 등

(포장마차영업 후보자의 공모)

- 제25조 시장은 시도로 등 또는 공원에 있어서의 포장마차영업이 도시에 성형이나 사람들의 교류 장소를 창출하고 관광 자원으로서의 효용을 발휘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는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에 있어서 시도로 등 점용 허가 또는 공원점용 등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법안을 제외한다. 이하 「포장마차영업 후보자」라고 말한다.)의 공모를 할 수 있다.
- 2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하려고 하는 장소가 시도로 등일 때는 미리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과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 3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소의 지정에 있어 후쿠오카시 포장마차선정 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 4 전 3항에 정하는 것 이외에 포장마차영업 후보자 공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결정짓는다.

(포장마차영업 후보자의 결정 등)

- 제26조 후쿠오카시 포장마차선정 위원회는 시장이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모를 했을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근거하고 해당 공모에 응모한 사람 가운데에서 포장마차영업 후보자로서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선정을 하는 것으로 한다.
- 2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사람 가운데에서 포장마차영업 후보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 3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했을 경우 그 취지를 해당 포장마차영업 후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모 포장마차영업자에게 관계되는 시도로 등 점용 허가 등의 통산 기간 등)

- 제27조 포장마차영업 후보자로서 시도로 등 점용 허가 또는 공원점용 등 허가를 받은 사람 (이하 「공모 포장마차영업자」라고 말한다.)가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16조에 있어서 준용할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2조 제2항 (제24조에 있어서 준용할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시도로 등 점용 허가 또는 공원점용 등 허가의 기간을 통산한 기간 (이하 「통산 기간」이라고 말한다.)은 3년을 한도로 한다. 단, 시장은 2회에 한하여 통산 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다.
- 2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산 기간의 연장 (이하 「통산 기간의 연장」이라고 말한다.)을 받으려고 하는 공모 포장마차영업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것에 의해, 할 때마다 시장에게 통산 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 3 시장은 통산기간 연장을 신청한 공모 포장마차영업자에 대해서 영업상황이 양호하고 포장마차의 효용을 충분히 발휘, 시의 매력을 높이고 있는 사람이며 통산기간의 연장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후쿠오카시 포장마차선정 위원회가 인정했을 때에 한하여 통산기간의 연장을 하는 것으로 한다.
 - 4 통산기간의 연장은 1회째는 2년 이내, 2회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후쿠오카시 포장마차선정 위원회)

- 제28조 시장의 부속 기관으로 후쿠오카시 포장마차선정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말한다.
- 2 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해진 사무의 이외, 시장이 필요라고 인정하는 사무를 한다.
 - 3 위원회의 위원은 그 다음에 내거는 사람 가운데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1) 시장
 - (2) 전문가
 - (3) 시의회의원
 - (4) 차 조 제1항에 규정하는 포장마차영업자 단체의 대표자
 - 4 위원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 직장을 물러난 후에도 같음으로 한다.
 - 5 전2항 이외,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포장마차영업에 관한 기타 사항

(포장마차영업자 단체)

- 제29조 포장마차영업자에 의해 구성된 단체(시장이 지정하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포장마차영업자 단체」라고 말한다.)는 해당 포장마차영업자 단체에 가입하는 포장마차영업자 상호의 협력에 의해 포장마차영업자 등이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고 적절한 포장마차영업을 하고 시의 정책에 협력해 포장마차의 효용을 높이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 2 시장은 포장마차영업자 단체가 포장마차의 효용을 높이는 활동, 지역의 공헌 활동 기타 공익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했을 경우는 해당 활동에 대해서 해당 포장마차영업자 단체에 가입하는 포장마차영업자가 진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포장마차영업자 단체에 대한 지원)

- 제30조 시장은 포장마차영업자 단체가 하는 포장마차의 효용을 높이는 활동, 지역의 공헌 활동 기타 공익에 이바지하는 활동에 대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강습회)
- 제31조 시장은 포장마차영업자 등에 대하여 포장마차영업에 관한 필요한 지식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강습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 2 시장은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포장마차영업 후보자를 결정했을 때는 해당 포장마차영업 후보자에 대하여 강습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 3 포장마차영업자 등 및 포장마차영업 후보자는 제1항 또는 전항의 강습회를 수강해야 한다.
 - 4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강습회를 수강한 사람에 대하여 강습회를 수강한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5 전 각항에 이외, 강습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결정짓는다.

(환경정비)

제32조 시는 포장마차의 효용을 높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공간 및 양호한 공공위생 확보를 꾀하기 위해서 포장마차영업자의 책임 하에 수 도, 하수도 기타 필요로 인정하는 포장마차영업을 위한 환경 정비를 하는 것으로 한다.

제6장 잡칙

(영업 상황의 보고)

제33조 공모 포장마차영업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곳에 의해 시장에게 매년 포장마차 영업 상황을 보고 해야 한다.

(출입조사)

제34조 시장은 이 조례에 정하는 시책 및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직원에게 포장마차에 출입하고, 영업 상황, 설비 등을 조사시켜 관계인에게 질문시키는 등 필요한 지도를 시킬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출입조사를 하는 직원은 해당출입조사에 종사하는 직원인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청구가 있었을 때는 이것을 제시해야 한다.

(나라와의 제휴)

제35조 시장은 도로법 제3조 제2호에 규정하는 일반국도 가운데 국토교통 각료가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의 포장마차영업에 대해서 제1조의 목적에 부합된 지도 감독 및 조치가 행해지도록 나라와의 제휴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위임)

제36조 이 조례 이외,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결정짓는다.

부칙

(시행 기일)

이 조례는, 2013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 제1항 제2호 나), 제3호 다) 및 제4호 (제2호 나)에게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계되는 부분에 한한다.) 제4장, 제31조 제2항 및 제3항, 제4항 (포장마차영업 후보자에게 관련하는 부분에 한한다.) 및 제33조 및 부칙 제9항의 규정은, 규칙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재배치 대상 포장마차영업자에게 관련하는 경과조치 등)

2 시장은 이 조례 시행 날 (이하 「시행일」이라고 한다.)에 있어 현 영업자 가운데 제9조 제1항 제3호(다)를 제외한다.)에 내거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장소에 있어서 포장마차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 (이하 「재배치 대상포장마차영업자」라고 말한다.)이 있을 경우는 해당 재배치 대상포장마차영업자에 대하여 해당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포장마차의 이전을 명하는 조치 기타 해당기준에 적합 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 (이하 「재배치 조치」라고 말한다.)을 하는 것으로 한다.

3 시장은 재배치 조치를 하는 것에 있어, 포장마차를 이전하는 장소 또는 실제로 포장마차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의 지역 주민, 재배치 조치를 하려고 하는 재배치 대상 포장마차영업자, 포장마차영업자 단체기타의 관계자의 합의 형성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4 시장은 재배치 조치를 하려고 할 때는 미리 포장마차를 이전하는 장소 (시도로 등에 한정한다.) 또는 실제로 포장마차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과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5 시장은 재배치 대상 포장마차영업자에 대하여 포장마차의 이전을 명할 경우는 포장마차의 이전 기한 및 해당 이전을 위해 필요한 수속 등을 해당기한 1개월 전까지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6 시장은 제9조 제1항 (제16조에 있어서 준용할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관계없이, 재배치 조치에 의해 포장마차를 이전하는 장소에 있어서 시도로 등 점용 허가 또는 공원점용 등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신청 내용이 도로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할 경우 또는 도시공원법 제7조, 후쿠오카시 공원조례 제4조 제4항에 규정할 경우에 해당할 경우이며, 제9조 제1항 제1호, 제3호(다) 를 제외한다.)에 이거한 기준(공원점용 등 허가의 경우, 동일 항목 제1호에 내세우는 기준)에 적합할 때는 시도로 등 점용 허가 또는 공원점용 등 허가를 줄 수 있다.

7 시장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재배치 조치까지 재배치 대상 포장마차영업자가 포장마차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에 영향을 미치는 시도로 등 점용 허가의 신청을 했을 때는 그 신청의 내용이 도로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할 경우에 해당할 경우이며, 제10조 제1항 제1호 미처 제2호에 내거는 기준에 적합하고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시도로 등 점용 허가를 줄 수 있다.

(1) 해당 재배치 대상포장마차영업자가 재배치 조치에 동의했을 때.

(2) 기타 시장이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8 시장은 제5항의 기한까지 포장마차를 이전하지 않는 재배치 대상 포장마차영업자에 대해도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시도로 등 점용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한다.

9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는 재배치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부칙 제2항에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장소에 있어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시행일 전에 있어서의 공원의 점용 허가)

10 시장은, 이 조례의 공포 히(日)이후에 있어서, 시행 히쿠마에 있어서도, 포장마차영업을 하기 위한 후쿠오카시(福岡市) 공원조례 제4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에 있어서의 행위의 허가를 받고 있는 포장마차영업자가, 포장마차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에 영향을 미치는 포장마차영업을 하기 위한 도시공원법 제6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허가 신청을 했을 때는, 그 신청의 내용이 동(同)법 제7조에 규정할 경우에 해당할 경우이며, 제9조 제1항 제1호에 내세우는 기준에 적합할 때는, 이 조례의 규정 예에 의해 시행 히(日)이후의 해당점용의 허가 (후쿠오카시(福岡市) 공원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 (2013년 후쿠오카시(福岡市) 조례 제49호)에 의한 개정후의 후쿠오카시(福岡市) 공원조례 제17조의 2에 규정하는 포장마차에 관계되는 것에 한한다.) 를 줄 수 있다.

(검토)

11 시는 이 조례의 시행 후 5년을 경과했을 경우에 있어서 이 조례의 시행 상황을 감안하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이 조례의 규정에

대해서 검토를 더하고, 그 결과에 근거할 필요한 조치를 강의하는 것으로 한다.

후쿠오카시(福岡市) 포장마차기본조례시행 규칙
2013년 8월29일 규칙 제109호

- 1장 총칙(제1조~제3조)
- 제2장 시도등에 있어서의 포장마차영업(제4조~제9조)
- 제3장 공원에 있어서의 포장마차영업(제10조)
- 제4장 시정조치등(제11조~제15조)
- 제5장 포장마차영업에 관한 기타의 사항(제16조)
- 제6장 잡칙(제17조)
- 부칙

제1장 총칙

(취지)

제1조 이 규칙은, 후쿠오카시(福岡市) 포장마차기본조례 (2013년 후쿠오카시(福岡市) 조례 제43호. 이하 「조례」라고 말한다.) 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규칙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조례의 예에 따른다.

(포장마차영업자 등의 준수 사항)

제3조 조례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포장마차영업자 등(포장마차영업자 및 포장마차영업 종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포장마차영업을 하는 데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은 그 다음과 같다.

- (1) 포장마차의 설비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수도 및 하수도의 설비를 정비하도록 노력한다.
 - 나) 전기, 수도 및 하수도의 설비를 적정하게 유지관리 하고, 사용에 있어 보행자등이 안전한 통행 및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정한 공원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 다) 포장마차를 이용하는 사람 (이하 「이용자」라고 말한다.)등이 이용하는 화장실의 확보에 스스로 노력하는 동시에 포장마차 주변에 있어서의 공중 화장실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협력한다.
- (2) 포장마차의 외관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 (3) 요금 표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명시한다.
 - 나) 당일 원재료 가격에 의해 요금을 변경하는 품목에 있어서는 당일의 요금을, 복수의 요금제계가 있는 품목에 있어서는 각각의 요금을 명시한다.
- (4) 포장마차를 적절한 장소에서 보관한다.
- (5) 포장마차영업에 관련되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사업 활동에 따라 생기는 폐기물로서 적정하게 처리하고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로서 처리하지 않는다.

제2장 시도 등에 있어서의 포장마차영업

(시도 등 점용 허가의 신청서류)

제4조 조례 제8조에 규정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포장마차영업 신고서(양식 제1호)
 - (2) 포장마차영업에 관한 법령, 조례 및 규칙 (이하 「관계 법령등」이라고 말한다.)을 준수하는 취지의 서약서
 - (3) 제1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강습회 수강증의 복사
 - (4) 시도등 점용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장소의 배후지 소유자 승낙서 (배후지를 포장마차의 설치 장소로서 이용할 경우 또는 포장마차를 이전할 경우이며, 시장이 필요로 인정할 때에 한정한다.)
 - (5) 시도등 점용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다음호 및 다음 항에 있어서 「신청자」라고 말한다.)의 주민표 복사
 - (6) 신청자의 주민기본대장 카드, 여권, 운전 면허증기타 관공서가 발행한 면허증, 허가증, 자격증명서 등이며 신청자 본인의 사진이 첨부된 복사본
 - (7) 기타 시장이 필요로 인정하는 서류
- 2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은 신청자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 신청자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여쩔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는 신청자는 대리인(신청자이외에 포장마차영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는 그 사람에게 한한다.)을 정하고, 그 사람에게 해당제출을 행하게 할 수 있다.
- 3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동일 항목의 제1호로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6호에 내거는 서류 가운데 일부의 서류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시도 등 점용 허가의 신청 기간)

제5조 조례 제9조 제1항 제2호 가)에 해당하는 사람(동일 항목 가)에 규정하는 현영업자(이하 단지 「현영업자」라고 말한다.)가 사망하고 있을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계되는 동일 항목 제4호에 규정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은 현영업자가 사망한 날의 다음날부터 셈을 시작해서 2개월 이내로 한다.

(증지의 신고서를 했을 경우의 시도 등 점용 허가의 갱신 기준)

제6조 조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은, 동일 항목 제1항에 규정하는 갱신 신청자의 신청이 증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셈을 시작해서 1년6개월 이내에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시도 등 점용 허가의 조건)

제7조 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附하는 시도 등 점용 허가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포장마차의 규격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 가) 포장마차의 규격에 대해서는 객석, 조리장 및 자체 두는 곳 및 울타리를 포함시키고, 폭 (보도에 있어서 중 방향으로 한다. 이하 같다.) 3미터이내, 안쪽 길이(보도에 있어서는, 횡 방향으로 한다. 이하 같다.) 2.5미터이내로 한다.
 - 나) 포장마차의 구조에 대해서는 용이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 (2) 시도 등 점용 허가를 받은 장소(이하 「점용 장소」라고 말한다.) 노점용 시간에 대해서는 포장마차 및 자체 반입 및 반출을 포함시키고 오후5시부터 다음날의 오전4시까지 한다.
- (3) 포장마차영업에 필요한 자체 가운데 포장마차의 규격 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물건(객석 및 울타리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포장마차 규격을 포함하는 폭 5미터, 안쪽 길이 3미터 범위 내에서 보행자 등이 안전한 통행의 방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설치한다.
- (4)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하지 않는다.
 - 가) 포장마차 규격 외에 책상(이용자가 이용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혹은 객석을 설치, 또는 포장마차의 규격 외 이용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
 - 나) 점용 장소 및 그 주변의 공공장소(이하 「점용 장소 등」이라고 한다.)에 차량(포장마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방치하는 것.
 - 다) 점용 시간 이외의 시간에 점용 장소 등에 포장마차, 자체 및 차량을 방치하는 것.
 - 라) 점용 장소 등의 청소를 하지 않고 오손시키는 것.
 - 마) 점용 장소 등에 포장마차영업에 관련되는 오수를 폐기하는 것.

(도로점용 허가서 등)

제8조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서 및 도로점용 허가증의 교부는 도로점용 허가서의 후쿠오카시(福岡市) 도로점용 규칙 제3조에 규정하는 도로점용(허가/회답/)서에 의해 도로점용 허가증에 있어서는 (/도로점용/공원점용 등/)허가증(양식 제2호)에 의해 각각 하는 것으로 한다.

(변경 또는 폐지 등의 신고서)

제9조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포장마차영업(변경/중지/폐지/)신고서(양식 제3호)을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제4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에 대해서 준용한다.

제3장 공원에 있어서의 포장마차영업

제10조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조례 제2장 제2절중의 규정을 준용할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표의 좌란에 내세우는 규정 중 같은 표란에 내세우는 문구를 바꾸는 것으로 한다. 각각 동일 표 우란에 내세우는 문구에 다른 음으로 읽는 것으로 한다.

→ 도로를 공원으로 바꿔서 보는 것

제4장 시정조치 등(지도)

제11조 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서에 의한 지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의서(양식 제4호)에 의해 하는 것으로 한다.

- (1) 포장마차의 규격 외에 책상 또는 객석을 준비하고 있을 때.
 - (2) 점용 시간 이외의 시간에 점용 장소 등에 자체를 반입 또는 방치하고 있을 때.
 - (3) 포장마차영업에 의해 점용 장소 등이 오손되고 있을 때.
 - (4) 복수로 구두에 의한 지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 (5) 앞 각호에 내세울 경우의 이외 이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시장이 필요로 인정할 때.
- 2 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서에 의한 지도는 다음의 경고서(양식 제5호)에 의해 하는 것으로 한다.
- (1) 점용 시간 이외의 시간에 점용 장소 등에 포장마차를 반입 또는 포장마차영업 준비, 혹은 포장마차영업을 하고 있을 때.
 - (2) 포장마차의 규격이 제7조 제1호 가) (제10조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할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규격을 넘고 있을 때.
 - (3) 포장마차 규격 외에 탁자 또는 객석을 설치 또는 포장마차의 규격 외에 이용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을 때.
 - (4) 제7조 제3호 (제10조 제2항에 있어서 준용할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범위 외에 자체를 설치하고 있을 때.
 - (5) 포장마차 또는 자체를 설치한 뒤의 보도 유효 폭이 2미터이상 확보되지 않고 있을 때(공원에 있어서의 포장마차영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 (6) 시각장애인유도용 블록이 설치되고 있는 보도에 있어서는 설치한 뒤 포장마차 또는 자체해당 블록에서 0.6미터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을 때(공원에 있어서의 포장마차영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 (7) 포장마차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점용 장소 등에 차량을 방치하고 있을 때.
 - (8) 점용 시간 이외의 시간에 점용 장소 등에 포장마차 또는 차량을 방치하고 있을 때.
 - (9) 점용 장소 등에 유지분 또는 고형물을 포함하는 오수를 폐기하고 있을 때.
 - (10) 복수의 주의서에 의한 지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을 때.
 - (11) 앞 각호의 내용 이외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시장이 필요로 인정할 때.

(공표의 내용 및 방법)

제12조 조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포장마차 명칭, 소재지 및 포장마차영업자의 성명 이외 포장마차영업자 등에 관련되는 관계 법령 등의 규정 및 이 규정에 의한 허가에附한 조건, 제3조에 규정하는 사항의 준수 상황 등 필요한 것을 후쿠오카시(福岡市)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2 전항에 정하는 것 외 시장은 포장마차영업자 등에 대한 지도 상황, 지도를 받은 포장마차영업자 등이 한 시정을 위한 조치 상황, 시도등 점용 허가 또는 공원점용 등 허가의 효력 정지 및 취소의 상황에 대해서 전항의 규정 예에 의해 공표하는 것으로 한다.

(시도 등 점용 허가의 효력 정지 기간)

제13조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시도 등 점용 허가의 효력을 정지하는 기간은 30일이내로 시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도 등에 관한 공사 등에 의한 포장마차의 이전 등)

제14조 시도 등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조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포장마차의 이전을 명령받았을 때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 록

시도 등 점용 허가의 신청 기타 필요한 수속을 하고 이전하는 장소에 영향을 미치는 시도 등 점용 허가를 받은 뒤 포장마차를 이전해야 한다.

- 2 시도 등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다른 시도 등의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하는 시도 등에 있어서의 공사 등 시행자에게서 포장마차의 이전 등의 협의를 요구되었을 때는 이것에 성실하게 따르는 동시에 해당공사 등의 시행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원에 있어서의 포장마차에 대한 조치에 관계되는 준용 등)

제15조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조례 제3장 제2절중의 규정을 준용할 경우에 있어서는 다음 표의 좌란에 내세우는 규정 중 같은 표 란에 내세우는 문구를 바꾸는 것으로 한다. 각각 동일 표 우란에 내세우는 문구에 다른 음으로 읽는 것으로 한다. →도로를 공원으로 바꿔서 보는 것

제5장 포장마차영업에 관한 기타의 사항

제16조 조례 제31조 제1항의 강습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2 조례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은 강습회 수강증(양식 제6호)에 의해 하는 것으로 한다.

제6장 잡칙

제17조 조례 제3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명서는 포장마차 출입조사 종사 직원증(양식 제7호)에 의한 것으로 한다.

부칙

(시행 기일)

1개의 규칙은, 2013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 부칙 제3항의 규정은, 공포의 날부터 시행한다.

(재배치 대상포장마차영업자에게 관련하는 경과 조치)

2 조례부칙 제2항에 규정하는 재배치 대상 포장마차영업자가 조례부칙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등 점용 허가를 받아서 하는 포장마차영업에 대해서는 제11조 제2항 제5호, 제6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일 전에 있어서의 공원의 점용 허가)

3 조례부칙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 시행일 전에 있어서 같은 날 이후의 공원 점용 허가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규정 예에 따른다.

각 양식1호~7호

1호: 포장마차 영업 신청서

2호: 도로점용 및 공원점용 허가증 (본인사진 부착)

3호: 포장마차 (변경, 휴업, 폐업)신청서

4호: 주의서

5호: 경고서

6호: 강습회 수강증

7호: 포장마차 출입검사 종사자 직원증 (앞/뒤)

부 록

02 Street Vendors Act 2014

- 거리가게 인도조례 주요 내용

본 조례는 2014년 3월 4일자로 효력을 가진다.

-범무처-

1. the street vendor(거리 상행위를 하는 사람=거리가게 상인=노점상)와 street vending(거리 상행위=자동판매기)에 관한 보호와 규율
 - 본 법률은 도시내 거리가게의 권리 보호와 거리상행위에 대한 제약사항에 대한 내용이다. 인도 정부와 인도 의회에 의해 제정됨.

chapter 1 용어 정의

(l) street vendor

스트리트 벤더란 보행로, 차도, 공원, 공공 공간 등에 위치한 임시구조물 혹은 이동 가능한 형태의 공간에서신문잡지, 공산품, 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chapter 2 *자동판매기(=거리 상행위)에 대한 규정

4.(1) 자동판매기(=거리 상행위) 증명서의 발급

조사에 의해 확인된 14세 이상 혹은 정부의 규정에 따른 모든 거리가게 상인들은 거리상행위에 대한 특별한 제약사항이 포함된 조건에 따라 거리가게 상인회(TVC)가 발급하는 증명서를 받아야한다.

상인회가 발급하는 증명서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의 경우에 라이선스가 있거나 다른 형태의 허가(stationary vendor, mobile vendor 등 다른 카테고리)를 받은 사람은 거리상행위에 대한 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4.(2) 두 조사 사이의 기간에 거리상행위를 원하는 사람은 거리상인 위원회가 거리 상행위를 위한 제도,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자동판매기(=거리 상행위) 증명서 발급의 조건

5.(1) 모든 거리가게 상인들은 거리상행위의 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 아래의 항목을 거리가게 상인회에게 약속해야한다.

- a. 거리가게 상인은 본인 혹은 본인의 가족을 통해 거리상행위 사업을 유지해야한다.
- b. 거리상행위 외의 다른 생계수단이 없어야한다.
- c. 증명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5.(2) 거리 상행위 증명서를 가진 거리가게 상인은 본인이 죽거나, 불치의 병이나 장애가 생길 경우에 자신의 직계 가족 중 한 명, 원래 상행위를 하던 위치에 한하여 기존 증명서의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인증서를 인계 받을 수 있는 사람

- a. 배우자, b. 직계가족

* 거리상행위 인증서의 분류와 증명카드의 발급

6.(1) 거리상행위(자동판매기) 인증서는 다음의 분류에 따라 발급된다.

- c. 그 외에 계획에 의해 지정된 카테고리

* 인증서 발급의 기준

7. 인증서 발급의 기준은 TVC의 인증서 발급 내용에 따르며, 카스트 제도의 선호, 여성, 소수민족 등과 같은 사항은 기준에서 제외된다.

*요금

8. 인증서를 가진 모든 자동판매기(거리가게상인)은 지정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유효기간 및 자동판매기(=거리가게 상인) 인증서의 갱신

9.(1) 모든 인증서는 계획에 따라 지정된 기간만큼 유효하다.

*인증서의 취소, 혹은 정지

10. 인증서를 발급한 기관 혹은 업체가 만든 조건, 자동 판매기를 조절 하기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규칙이나 제도를 위반한 경우, 자동 판매기의 인증서가 허위 진술 또는 사기에 의해 발급된 경우 자동 판매기의 인증서를 취소하거나 인증서를 정지 할 수 있다.

인증서 정지/취소는 자동판매기(거리가게 상인)에게 청문회의 기회 없이 실행되면 안된다.

chapter 3 : 자동판매기(거리가게 상인)의 권리와 의무

*자동판매기(거리가게 상인)의 권리

12.(1) 모든 거리가게 상인은 인증서에 언급된 조건에 따라 거리 상행위를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12.(2) 경우에 따라 자동판매기를 배치할 수 없는 지역 혹은 공간에서는 인증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리상행위를 영위할 수 없다.

chapter 6 : 거리상행위를 위한 계획

*거리상행위를 위한 계획

21.(1) 모든 지역 자치 단체들은 계획 권한과 TVC의 권고에 의해 5년에 한번씩 노점상을 홍보하는 계획을 준비해야한다.

21.(2) 지역 자치단체에 의해 준비된 거리 상행위를 위한 계획의 승인을 위해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계획 전에 노점상에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을 정해야 한다.

chapter 8 : 노점상 괴롭힘의 예방

*경찰 혹은 다른 단체에 의한 괴롭힘의 예방

27. 어떠한 사람이나 경찰도 인증서의 조건에 따라 활동하는 노점상의 권리행사를 막을 수 없다.

chapter 9 : 처벌

*위반에 대한 처벌

28. 만약 노점상이 인증서 없이 판매행위를 하거나 인증서의 내용에 위반되거나 해당 규율이나 조건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2000루피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별표 : 거리상행위에 대한 계획

1. 거리상행위에 대한 계획은

- 조사에서 확인된 기존의 모든 노점상이 관련 지역, 마을이나 도시 인구의 2.5%에 부합(해당)하도록 보장한다.
- 도로를 사용하는 보행자가 어떠한 방해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 자동판매기(거리가게)를 위한 공간 또는 영역을 규정하는 조항이 기존 시장과의 관계에서 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자동판매기의 영역으로 정해진 공간의 적절한 이용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한 시설을 고려해야한다.
- 편리하고 효율적인 상품의 비용과 효과적인 유통 및 서비스 제공을 증진시켜야 한다.

2. 거리상행위에 대한 계획은 다음사항을 모두 포함해야한다.

- 공간 계획 기준의 결정
- 자동판매기(거리가게) 구역을 위한 공간이나 지역의 책정
- 자동판매기에 대한 제한 없는 구역과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구역의 결정
- 도시와 마을에 노점상의 일반적인 개수와 미래 성장의 위한 공간 계획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결정
- 기존의 자동판매기 영역에서 노점상을 수용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 개발 계획, 배치 계획 등의 변경



VENDOR POWER!

ভেভরের ক্ষমতা! 街販力量! قوّة البّيعّاعين! ¡Sí Se Puede!

A GUIDE TO STREET VENDING IN NEW YORK CITY

There are more than 10,000 street vendors in New York City, and they play an iconic role in urban life. What could be more New York than a hot dog in Times Square or DVDs on Canal Street? Selling things from a table or cart might seem simple, but in New York it's hard — long hours for low pay in a confusing system of regulations. This is a guide to the complicated, and sometimes unfair, rules that govern street vending in New York City.

MAKING
POLICY
PUBLIC

참고 문헌

- 권계희, “가로구조물을 고려한 신촌 가로환경 개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 김수현, “노점상 관리방안 중 장기 대책모색”,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2001
- 김준희, “노점상운동의 역사와 주요 쟁점” 도시와 빈곤 2012
- 김준희, “도시공간과 노점상의 권리에 관한 연구”, 공간과사회 제21권2호, 2011
- 김건식, “노점상 정책의 비판적 검토” 도시와 빈곤, 2000
- 김희석,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노점관리 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박대영, “노점상의 입지패턴 분석: 수도권 신도시 역세권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 홍인옥, “노점상문제 현황 및 갈등구조 분석”, 한국도시연구소, 도시연구 제5호, 1999.11
- 김한수, “도시생활에 있어서 노점상의 형태특성에 관한 연구(1)”, 한국주거학회지 제8권제2호, 1997
- “노점상의 실태와 대응방안: 서울시를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3
- “노점상 관리방안 중 장기 대책 모색”,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2001.06
- 서울시, “서울시 가로경관 디자인 가이드라인”, 2013
- 서울시, “서울시 공공공간 디자인 가이드라인”, 2013
- 국토해양부, “보행자우선도로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연구”, 2012
- 국토교통부,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2014
- “2014년 거리가게 실태조사 결과 보고”, 서울시 도시안전실, 2014
- Residential environment index system and evaluation model established by subjective and objective methods, GE Jian, HOKAO Kazunori, Zhejiang University, 2004
- 국가정보법령센터, <http://www.law.go.kr> (2015. 6. 20)
-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 (2015. 7. 30)
- 서울 정보소통광장, <https://opengov.seoul.go.kr> (2015. 9. 1)
- CUP (Center for Urban Pedagogy), <http://welcometocup.org/> (2015. 9. 20)
- Wikipedia - Street Vendors Act, 2014, https://en.wikipedia.org/wiki/Street_Vendors_Act,_2014 (2015. 9. 1)
- 후쿠오카시, www.city.fukuoka.lg.jp (2015. 7. 15)
- Christchurch 시의회, <http://www.ccc.govt.nz> (2015. 9. 01)
- 도쿄 사회복지·공중보건국, www.fukushihoken.metro.tokyo.jp (2015. 8. 20)
- 일본 이동판매차 홈페이지, <http://www.zecc.co.jp> (2015. 9. 30)
- 2015. 5. 22, 노량진 ‘컵밥거리’ 9월까지 사육신공원 맞은편 이전,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052208185174599>
- 2015. 8. 30, The Neglected Street Vendors of India, INTER PRESS SERVICE, <http://www.ipsnews.net/2015/06/the-neglected-street-vendors-of-india/>

<표 목차>

〈표 1〉 연도별 거리가게 변화 추이	13
〈표 2〉 연구 흐름도	17
〈표 3〉 연구추진경과	18
〈표 4〉 조례에서 거리가게 정의	33
〈표 5〉 노점관련 정책변화	34
〈표 6〉 거리가게 시행 개요	35
〈표 7〉 지자체 조례의 목적	37
〈표 8〉 푸드트럭 판매 품목	42
〈표 9〉 동경의 경우 허가 시 필요한 탱크용량	43
〈표 10〉 국내 정책적 사례 비교 분석	49
〈표 11〉 국내외 정책적 사례 비교 분석	50
〈표 12〉 연세로 거리가게 디자인 세부	55
〈표 13〉 후쿠오카 포장마차에 관한 조례 전 후의 모습	56
〈표 14〉 후쿠오카 포장마차 설치 예	57
〈표 15〉 이동판매차 제작 사례	60
〈표 16〉 국내 디자인 사례 종합 분석	63
〈표 17〉 국외 디자인 사례 종합 분석	64
〈표 18〉 2012년, 2013년, 2014년 거리가게 실태조사 결과보고 - 유형별 현황	67
〈표 19〉 2013년 거리가게 실태조사 결과보고 - 품목별 현황	67
〈표 20〉 거리가게 현황분석 내용	68
〈표 21〉 직접조사 대상지	69
〈표 22〉 보도 경사도 현황	70
〈표 23〉 보도 마모도 현황	71
〈표 24〉 한가한 시간대 유효보도폭 현황	72
〈표 25〉 복잡한 시간대 유효보도폭 현황	73
〈표 26〉 주변과의 관계에서의 유효보도폭 현황	73
〈표 27〉 교통시설물 및 도시기반시설물과의 관계 현황	74
〈표 28〉 가각부 현황	75
〈표 29〉 서울시 가판대 규격과 상생협업체 협의된 규격	76
〈표 30〉 품목에 따른 평균 규격	77
〈표 31〉 거리가게의 규모 및 형태	77
〈표 32〉 거리가게 배치 현황	78
〈표 33〉 거리가게 색채 현황	79
〈표 34〉 거리가게 색채 현황	79
〈표 35〉 재질 현황	80
〈표 36〉 정보 및 진열 현황	81
〈표 37〉 거리가게 개 폐점 현황	82
〈표 38〉 현황분석 종합	83
〈표 39〉 서울시 거리가게 유형	86
〈표 40〉 운영시간에 따른 유형	88
〈표 41〉 설치위치 및 장소에 따른 유형	90
〈표 42〉 판매품목에 따른 유형	92
〈표 43〉 서울 거리가게 특성	93
〈표 44〉 거리가게 조례분석에 따른 서울거리가게 특성 도출	94
〈표 45〉 환경조건에 따른 서울거리가게 특성	96
〈표 46〉 규격 및 배치 상 서울거리가게 특성	98
〈표 47〉 운영시스템에 따른 서울거리가게 특성	100
〈표 48〉 환경적 조건에 따른 상위법 내용	101
〈표 49〉 규격 및 배치에 따른 상위법 내용	102
〈표 50〉 운영에 관한 상위법 내용	103
〈표 51〉 서울 거리가게 디자인 기본계획	105
〈표 52〉 보도경사도 및 마모도 현황 및 법령 사례	116
〈표 53〉 보도경사도 및 마모도에 관한 가이드라인	117

<표 54> 유효보도폭 현황	118
<표 55> 유효보도폭 산출기준 및 가이드라인	119
<표 56> 이격거리 현황	120
<표 57>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121
<표 58> 이격거리 가이드라인	122
<표 59> 규격 및 형태 현황 법령 사례	123
<표 60> 규격 및 형태 산출근거	124
<표 61> 규격 및 형태 산출근거 및 가이드라인	125
<표 62> 거리가게 규격 가이드라인-1	126
<표 63> 거리가게 규격 가이드라인-3	127
<표 64> 거리가게 규격 가이드라인-3	128
<표 65> 보도상 배치 현황 및 법령 사례	129
<표 66> 보도상 배치 가이드라인	130
<표 67> 색상 및 재질 현황 및 법령 가이드라인	131
<표 68> 색채 가이드라인	132
<표 69> 색채 및 소재 가이드라인	133
<표 70> 정보 및 진열 현황 및 법령 사례	134
<표 71> 정보 및 진열 가이드라인	135
<표 72> 운영관리 현황 및 법령사례	136
<표 73> 운영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137
<표 74> 가이드라인 기준 목표	138
<표 75> 세부평가 기준에 대한 근거 및 내용	139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의 목표	14
<그림 2> 현장조사 및 이해관계자 인터뷰	19
<그림 3> 10차 상생정책자문단 회의	20
<그림 4> 현장조사 및 이해관계자 회의	21
<그림 5> 현장조사 및 이해관계자 회의	22
<그림 6> 착수보고회의	23
<그림 7> 11차 상생정책자문단 회의	24
<그림 8> 서울시 및 자치구 관계자 회의	25
<그림 9> 12차 상생정책자문단 회의	27
<그림 10> 최종보고회의	28
<그림 11> 최종보고회의	29
<그림 12> 프렌차이즈 식품을 이용한 푸드트럭 예	41
<그림 13> 식품위생 책임자 사례	43
<그림 14> 인도의 거리가게(좌)와 인증서(우)	46
<그림 15> 이태원 특화거리 거리가게 디자인	51
<그림 16> 서울시 디자인가판대 디자인	52
<그림 17> 강동구 디자인노점 거리가게	53
<그림 18> 명동 '뿌까' 거리가게	54
<그림 19> 연세로 거리가게 디자인	55
<그림 20> 식당영업자동차 (조리영업) 트럭 내 구조의 예	59
<그림 21> 식품 이동자동차 트럭 내 구조의 예	59
<그림 22> Vendor Power에서 노점디자인에 관한 규정	61
<그림 23> 노천시장의 풍경	62
<그림 24> 현장 실측 및 인터뷰 조사	68
<그림 25> 조사 대상지 위치	70
<그림 26> 가로 시설물 관계도	74
<그림 27> 거리가게와 각각부와의 관계도	75
<그림 28> 거리가게 대상 영역	115

거리가게 디자인개선 가이드라인연구

발행일

2015년 12월 31일

발행인

이근

발행처

(재)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자인연구소

110-126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83.

서울디자인지원센터 7층

www.seouldesign.or.kr

*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 및 재편집, 출판, 상업적 활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활용 시 재단과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ISBN 978-89-98664-62-6